



2022.10.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안 분석

#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I

## Comprehensive Analysis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

예산안분석시리즈 I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I

총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중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안태훈 예산분석관

임길환 예산분석관

지원 | 이채원 행정실무원

양희열 행정실무원

김창민 자료분석지원요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 02) 6788-3777 | eie@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

#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I

2022. 10.

---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2. 10. 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 발간사

정부는 지난 9월 2일 총수입 625.9조원, 총지출 639.0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코로나로 인해 확장된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4.4%에서 -2.6%로, 국가채무비율은 50%에서 49.8%로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고용지표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재정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예산안 심의기관인 국회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등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으로 예산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3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3권, 「성인지 예산서 분석」 1권 등 기존 4개 분석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1권 및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 1권 등 2개 분석을 추가하여 총 21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면서,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 지원 사업, 국방 분야 부문별 예산안 분석,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 등 주요 정책 사업과 상임위 결산시정요구사항 및 정부성과 평가와 예산안의 연계, 임대형민자사업(BTL)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 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금융공공기관 정책금융 예산안 분석 등 주요내용과 금융·환경분야 등의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서의 적합성과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았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대상사업들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에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회 심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 V. 정부성과평가와 예산안 연계 분석

① 총괄 분석 .....	1
1. 개요 .....	1
2. 분석의견 .....	6
② 성과평가(자체평가) 유형별 분석 .....	12
1.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예산안 연계 .....	12
2. R&D평가와 예산안 연계 .....	32
3. 재난안전사업평가와 예산안 연계 .....	40
4. 균형발전사업평가와 예산안 연계 .....	50
③ 성과평가(개별평가) 유형별 분석 .....	58
1. 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예산안 연계 .....	58
2. 심층평가와 예산안 연계 .....	71
3. 핵심사업평가와 예산안 연계 .....	75
4. 기금 평가와 예산안 연계 .....	83
5. 복권기금사업평가와 예산안 연계 .....	101
6. 일자리사업 평가와 예산안 연계 .....	105
7.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와 예산안 연계 .....	110



④ 부처별 성과평가 결과 분석 .....	115
1. 기획재정부 .....	115
2. 관세청 .....	120
3. 국세청 .....	123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8
5. 농림축산식품부 .....	134
6. 해양수산부 .....	142
7. 중소벤처기업부 .....	149
8. 국토교통부 .....	155
9. 교육부 .....	162
10. 문화체육관광부 .....	169
11. 문화재청 .....	178
12. 기상청 .....	183
13. 고용노동부 .....	187
14. 여성가족부 .....	194
15. 국방부 .....	197
16. 행정안전부 .....	203
17. 경찰청 .....	209

## 1. 개요

### 가. 성과평가 도입

정부는 2004년부터 4대 재정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5년 단위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 성과관리 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선진 재정운용시스템을 구비하였다.

특히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 부처의 자율권을 확대하게 되므로, 재정사업의 성과평가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국가재정법」의 제정으로 그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sup>1)</sup>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sup>2)</sup>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성과관리의 실익이 있는 전 부처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① 성과목표관리와 ②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

성과목표관리는 2003년부터 부처 단위의 재정성과를 측정하여, 예산편성시 ‘성과계획서’, 결산시 ‘성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제도이다. 반면, 사업성과평가는 성과에 기반한 사업 예산편성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에서 11개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태훈 예산분석관(matins10@assembly.go.kr, 6788-4747)

임길환 예산분석관(ghlim@assembly.go.kr, 6788-3734)

1) 「국가재정법」은 「(구)예산회계법」 및 「(구)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한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으로, 2006년 10월 4일 제정되어 2007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2)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담당 부처	평가 종류
기획재정부	자율평가, 심층평가, 핵심사업평가, 기금평가, 보조사업평가, 복권기금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사업 평가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평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 평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2022, p.1.

성과관리제도 연혁을 보면, 동 제도는 2003년 22개 부처에서 우선 추진함으로써 시작되었고, 2006년부터는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되었다. 2007년에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성과관리제도가 법제화 되었고, 2009년부터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sup>3)</sup>으로 5년 단위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연간 ‘추진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목표관리를 통해 부처별 대표지표 위주의 성과공개를 강화하여 국민관심 및 부처단위 성과제고를 유도하고, 세부사업 단위의 성과평가<sup>4)</sup>를 통해 성과 미흡사업 중심의 지출 구조조정, 제도개선 추진 등 성과평가 결과활용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3) 「국가재정법」

제85조의4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측면이 있다. 기본적으로 성과관리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집행-점검-보고 절차이며, 성과평가는 성과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사업평가는 사업의 성과개선을 위한 연구이다. 성과관리는 프로그램 단위로 수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성과관리 측면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하위프로그램인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성과관리 기본계획에서 성과관리와 성과평가를 구분함에 따라, 성과(목표)관리 단위를 프로그램으로 설정하고 성과평가 관점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단위를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였다.

## 나. 성과평가 체계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업무평가 체계에 따르면, 재정사업성과평가는 자체평가와 개별 평가로 구분된다.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는 아래 [표]와 같이 일반재정사업, R&D, 재난안전, 균형발전으로 구분된다. 일반재정사업은 재정사업자율평가 제도로 평가되는데, 복권기금사업은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고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평가된다.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 체계]

평가유형	평가부문	근거법률	평가주관	
특정평가 (45개)	주요정책	정부업무평가법	국무조정실 등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자체평가 (46개)	주요정책	정부업무평가법	국무조정실	
	재정사업	일반재정사업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R&D	연구성과평가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	재난안전법	행정안전부
		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관리 역량	조직	정부업무평가법	행정안전부
		인사		인사혁신처
		정보화		행정안전부
	개별평가		개별근거법률	주관부처

주: ( )는 평가대상 기관수. 국무조정실은 특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자료: 정부업무평가포털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25](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25)>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 체계에 포함되는 개별평가는 16개 부처에서 수행하는 27개 평가로 구성된다. 개별평가 중에서 재정사업 성과와 관련되는 평가는 3개이며, 아래 [표]와 같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서 법률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 개별평가]

주관부처	평가명	근거법령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연장평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재정사업 심층평가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핵심사업평가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평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조의2 제1항

자료: 1. 정부업무평가포털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134](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134)>  
2. 국가법령정보센터  
3. 기획재정부, 「2022년~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2022, p.1.

기금평가, 복권기금사업평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 체계 상 개별평가로 분류되고 있지 않으나, 「2022년~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포함된다.

[그 외 재정사업 관련 성과평가]

주관부처	평가명	근거법령
기획재정부	기금평가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복권기금사업평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복권기금의 운용·관리 및 평가)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3

자료: 1. 정부업무평가포털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134](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134)>  
2. 국가법령정보센터  
3. 기획재정부, 「2022년~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2022, p.1.

평가제도별 결과 공개 및 국회 제출여부를 보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부담금 운용평가 및 기금운용·존치평가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반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고,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평가결과가 비공개되고 있다.

[평가결과 공개 및 국회 제출여부]

평가제도		평가결과 공개 및 국회 제출여부	
		평가결과 공개 여부	국회 제출 여부
자체 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결과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	×
	R&D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공개	○
	재난안전	관보로 공개. 해당 기관에 통보	×
	균형발전	보도자료로 공개	×
개별 평가	보조사업 연장평가	평가결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	○
	부담금 운용평가	평가결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	○
	재정사업 심층평가	×	×
	핵심사업평가	×	×
	기금운용·존치평가	평가결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	○
	복권기금사업평가	복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	×
	재난관리평가*	관보로 공개. 해당 기관에 통보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평가	평가결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	×
	중소기업 지원사업평가	평가결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	×

자료: 기획재정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 분석의견

### 가.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관련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①재정준칙 등을 통한 거시적 총량관리 뿐 아니라, ② 재정사업에 대한 미시적 성과관리도 중요하므로, 성과에 기반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의 고도화 추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sup>5)</sup>으로 5년 단위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연간 ‘추진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다. 정부는 「‘22-’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기반한 「‘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성과관리 기본계획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을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편성 환류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차년도 예산 삭감 등 지출 구조조정 원칙을 수립하여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성과 미흡에도 불구하고 예산삭감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을 의무화하고, 연례적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도 높은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연례적 부진사업인 2년 연속 ‘미흡’ 사업은 사업 재설계(부처) 및 컨설팅(재정당국) 실시, 3년 연속 ‘미흡’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성과관리 제도운영의 측면에서는 정부의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의 성과평가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권을 규정하였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성과평가 추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그 이외에 성과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성과관리 결과의 국무회의 보고 및 재정운용 반영, 성과관리에 따른 표창 등을 정하고 있다.

---

#### 5) 「국가재정법」

제85조의4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효율적인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 기본계획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는 성과목표관리를 통해 부처별 대표지표 위주의 성과공개를 강화하여 국민관심 및 부처단위 성과제고를 유도할 계획이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연계 및 성과목표 미흡 부처에 대한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성과목표관리제도를 통해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목표를 관리하고, 부처별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2~5개의 결과지표 위주로 선정하여 성과달성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은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편성 환류를 제도화하는 것이므로, 국민관심 및 부처단위의 성과제고를 유도하는 것만으로 재정사업의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평가대상 사업 예산은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한 의무지출, 사실상 의무지출,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 등의 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대상 예산 범위를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성과관리 기본계획은 6개 부처 11개 평가제도에 대해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대상 예산의 일정비율(예: 최소 1%) 구조조정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2021년부터 평가대상 예산의 1%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한 의무지출, 사실상 의무지출, 총사업비 등의 예산비중이 높은 부처는 지출구조조정에 어려움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예산비중이 큰 국토교통부는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의 예산을 감액이 아닌 증액하였다. 국토교통부의 구조조정 대상 사업의 예산은 44조 66.55억원으로, 지출구조조정 감액 목표액은 △4,400.67억원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지출구조조정 규모를 893억원으로 증액하였다.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출구조조정 결과(국토교통부)]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예산	지출구조조정 감액 규모
구조조정 대상 합계	44,006,655	(목표액)△440,067
지출구조조정사업 합계	4,816,586	89,263

자료: 국토교통부, 「2021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022, pp.103~106.를 바탕으로 재작성

평가대상 사업 예산은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한 의무지출, 사실상 의무지출, 총사업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대상 예산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나. 성과평가체계 관련

**첫째, R&D평가의 경우 사업 성격의 특수성으로 인해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예외로 인정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균형발전 R&D사업의 경우 균형발전사업 평가와 중복적으로 운영되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일환으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추진되는 자체평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기획재정부), R&D평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사업평가(행정안전부), 균형발전사업평가(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다. 즉, R&D사업, 재난안전사업, 균형발전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예외로 인정되어 각 주관부처에 의해 별도의 평가를 시행한다.

특히 R&D평가의 경우 일반재정사업과 달리 R&D활동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R&D성과평가를 위한 법률<sup>6)</sup>에 의해 평가를 추진하며, 「국가재정법」에서도 시행령을 통해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sup>7)</sup>

6)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를 다양한 유형으로 시행하고 있다.

7) 「국가재정법시행령」 제39조의2(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는 재난안전사업으로 분류되는 R&D사업을 해당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sup>8)</sup>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는 균형발전 관련 R&D사업을 평가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동일한 사업에 대해 R&D평가와 중복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평가 중 소관부처 자체평가에 해당하는 중간평가의 경우 성과창출 기간으로 고려하여 신규사업은 3년(기초연구 4년) 경과 후 최초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주기도 3년으로, 매년 실시하는 타 사업평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사업평가에서도 재난안전사업평가와 같이 R&D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9)</sup>

**둘째, 재난안전사업평가는 일부 내역(내내역)사업이 재난안전사업인 세부사업도 재난안전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재난안전과 무관한 내역(내내역)사업 예산이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재난안전사업평가 대상 사업들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내역(내내역)사업이 재난안전사업인 세부사업도 재난안전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재난안전과 무관한 내역(내내역)사업의 예산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역(내내역)사업이 일반재정사업과 재난안전사업들로 구성된 세부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은 성과평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난안전 관련 내역(내내역)사업은 다른 재난안전사업으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행정안전부가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에서 정보화사업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올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 8)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사업평가는 매년 사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타 평가와 중복되는 사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9)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균형발전사업 평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의2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개별법상 평가로, R&D 사업 평가와 다른 목적의 평가 체계이므로 중복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개별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R&D, 재난안전, 균형발전, 복권기금 관련 사업들을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화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전자정부법」 제68조<sup>10)</sup>는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1)</sup>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통해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PLAN), 사업추진(DO), 운영관리 및 환류(SEE)까지 정보화사업 전(全) 단계에 걸친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서 피평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1사업-1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sup>12)</sup> 따라서 정보화사업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총사업비관리를 받고 있으므로,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은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을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한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을 지출구조조정 계획의 부적정 의심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은 「국

---

10) 「전자정부법」

제68조(성과 분석 및 진단)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여러 행정기관등과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추진실적 및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46조제2항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실태와 그 추진성과를 분석·진단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성과 분석 및 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기획재정부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대상 사업은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으로 한정되는 반면, 자율평가의 경우 재정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일체의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의 경우 성과관리 단위가 예산사업과 무관(상기 지침 상 ‘발주하는 사업’ 기준)한 반면 자율평가는 세부사업 단위로(23년 평가 기준) 예산 환류와 직접 연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자정부법」 제68조에서 규정한 성과관리 대상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 등’은 일체의 정보화사업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12) 기획재정부, 「2022년~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2022, p.3.

가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총사업비관리지침」으로 관리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다.

따라서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은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실효성이 낮은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을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13)</sup>

**다섯째, 기금운용평가(사업운영부문)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의 주체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재정사업자율평가로 대체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 중복 문제는 평가 간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현행 기금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기금운용평가 사업운영부문의 경우 별도의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결과로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운용평가는 근거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재정사업자율평가는 근거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가 평가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두 평가의 수행주체는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금운용평가에서는 사업운영부문에 대한 평가를 재정사업자율평가로 대체하지 않고 별도의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별도의 평가를 수행함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대한 평가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보조사업연장평가의 경우 평가 중복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자율평가와 별개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금운용평가와 기금준치평가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기금 평가 체계를 법령 개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차별화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14)</sup>

13)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사전평가에 해당하고 총사업비관리도 사업비용 측면에서만 관리하고 있으므로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통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성과와 예산 연계를 위해 시행되는 것인데, 예비타당성조사 및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의 성과는 사업 완성 이후에 발생한다.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인 도로, 철도 등의 주요 성과는 완공 이후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완성 이전에 이루어지는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효용성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4) 기금운용평가와 재정사업자율평가의 평가주체 및 평가 중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 'III. 성과평가(개별평가) 유형별 분석'의 '4. 기금평가와 예산안 연계' 부분 참고

## 1.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예산안 연계

### 가. 현 황

#### (1) 재정사업자율평가 개요

재정사업자율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8조의8제1항1) 및 동 법 시행령 제39조의 12)에 따라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운 용에 활용하는 평가제도이다.

2017년까지는 부처 자체평가와 기획재정부 등이 평가절차와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메타평가로 이루어진 통합재정사업평가로 운영되었으나, 지침에 따라 일률적인 평가기준이 적용되고 평가결과가 예산과 기계적으로 연계되어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8년부터 ① 기재부 메타평가를 폐지하고, ② 미흡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 정 계획 수립을 폐지하는 대신 부처별로 자율적인 환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③ 평가기준·절차 및 평가결과는 원칙적으로 모두 대외 공개하도록 개편하고, ④ 2020년 부터는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에 가점 부여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안태훈 예산분석관(matins10@assembly.go.kr, 6788-4747)

#### 1)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2)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2(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관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 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 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 할 수 있다.

[2018년(2017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편사항]

	개편 전	개편 후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li> <li>- 평가중복 최소화를 위해 R&amp;D, 재난 안전, 균형발전사업, 복권기금사업은 소관평가기관의 지침에 따라 선정된 평가대상 사업 제외</li> </ul>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사업</li> </ul>
평가지표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규모·사업수 기준 상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20%이하, 보통 65%내외, 미흡 15%이상 준수</li> </ul> </li> <li>◆ 관리, 결과 단계 기준 지표화</li> <li>◆ 메타평가협의회를 통해 분야별, 부처별 메타(상위)평가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사업 수 10개 이상 부처 '사업 수 기준' 상대평가</li> <li>- 예산규모도 상대평가 준수 권고</li> <li>◆ 평가지표는 사업부처 자율 설정</li> <li>- '사회적 가치구현 사업에 대해 가점 부여 의무화</li> </ul>
평가 결과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대상사업 예산의 1% 수준</li> </ul> </li> <li>◆ 부처별 자율 세출구조조정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미흡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규모를 부처가 자율적 결정</li> </ul> </li> <li>◆ 기관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별 자율적 환류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출구조조정 계획 미수립 시 성과관리개선계획 수립 필수</li> </ul> </li> </ul>

자료: 2018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기획재정부)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2017~2019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한 결과, 각 부처에서 수립한 미흡사업 환류계획의 내용이 지출구조조정보다 성과관리개선 대책에 편중되고 소액사업 위주로 미흡사업을 선정하며 자연감소분을 지출구조조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환류계획이 충실하게 작성되지 못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와 예산안 편성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1년에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지출구조조정 의무화 폐지 후 성과관리개선 대책 위주로 수립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부처별 전체 평가대상사업 예산총액의 1% 수준으로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소액사업 위주로 미흡사업을 선정하는 경향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수’만을 기준으로 상대평가하던 방식에서 ‘사업수 및 예산규모’ 기준으로 상대평가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부처 자체평가 및 환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하는 절차를 신설하였다.

[2021년(202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편사항]

	2020년	2021년
자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수 기준’ 상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단계(우수/보통/미흡)로 등급화</li> <li>-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 계획 수립 또는 성과관리개선 대책 마련</li> </ul> </li> <li>◆ 평가지표는 사업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설정</li> <li>◆ R&amp;D, 재난, 균형발전 등 분야는 소관 평가기관(과기정통부, 행안부, 군발위) 지침에 따라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수 및 예산규모 기준’ 상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단계(우수/보통/미흡)로 등급화</li> <li>-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 의무화(구조조정이 불가할 경우 ‘보통’ 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 계획 수립 가능)</li> </ul> </li> <li>◆ 사업 내용적정성(10), 집행률(30), 성과목표달성도(40), 성과우수성(10), 환류(10) 가감(항목별 5)</li> <li>◆ R&amp;D, 재난, 균형발전 등 분야는 소관 평가기관(과기정통부, 행안부, 군발위) 지침에 따라 평가</li> </ul>
확인 ·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미흡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적정성 점검</li> </ul>
평가 결과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단위 자율적 환류계획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중심으로 평가결과 환류계획 마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단위의 종합적인 지출구조조정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평가대상의 1% 수준으로 개별 저성과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규모를 부처가 자율적 결정</li> </ul> </li> </ul>

자료: 202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기획재정부)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202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변경내용은 평가의 관대화 경향 및 전략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수' 기준을 적용하여 상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비율은 우수 20%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이상 준수이며, 미흡사업은 예산 규모 기준(5% 이상)도 준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①'미흡' 등급 사업 내 '성과가 부진한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되, ②총지출구조조정 규모는 '평가대상사업 총예산의 1%'를 삭감토록 하였다. 다만, '미흡' 사업만으로 지출구조조정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다른 평가대상 사업을 포함하여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202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변경내용]

	2021년	2022년
평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li> <li>◆ 단위사업 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li>◆ (좌동) ※ '23년 이후 세부사업</li> </ul>
부처 자체 평가 (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처 '자체평가위원회'가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지표) 사업내용 적정성(10), 집행률(30), 성과목표달성도(40), 성과우수성(10), 환류(10), 가감점(5)</li> </ul> </li> <li>◆ 3단계(우수 20%, 보통 70%, 미흡 10%) 상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보통) 사업수 기준</li> <li>- (미흡) 예산규모 기준</li> <li>- 다만, 사업수가 적고 사업간 규모 차이가 큰 부처는 사업수로만 평가 가능</li> </ul> </li> <li>◆ (지출구조조정 규모) n-1년 평가 대상 총예산의 △1%</li> <li>◆ 신설</li> <li>◆ 성과개선 대책 마련(제도개선)</li> <li>◆ 자율평가보고서 작성(열린재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li>◆ 3단계(우수 20%, 보통 65%, 미흡 15%) 상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보통, 미흡) 사업수 기준</li> <li>- 다만, 미흡사업은 예산규모 기준 (5% 이상)도 준수</li> </ul> </li> <li>◆ (좌동)</li> <li>◆ '미흡' 사업 내 성과가 부진한 주요 세부사업 △10% 이상 삭감</li> <li>◆ (좌동)</li> <li>◆ (좌동)</li> </ul>

	2021년	2022년
확인· 점검 (4~5월)	◆ 보통·미흡사업 적정성 점검 - 상대평가 비율, △1% 규모, 전략적 평가왜곡(의무지출 등)	◆ 우수·보통·미흡사업 적정성 점검 ⇒ 점검 후 예산실에 의견 통보
환류 (5월말)	◆ 지출구조조정(△1%) 예산요구, 제도개선 계획 마련	◆ (좌동) - 미흡사업 內 성과가 부진한 주요 세부사업 △10% 이상 예산삭감요구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 2022, p.2.

한편, 기획재정부의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따르면, 평가대상은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이나, 평가중복 최소화를 위해 R&D, 재난 안전, 균형발전 및 복권기금 사업으로 소관 평가기관의 지침에 따라 선정된 평가대상 사업은 제외되고 있다.<sup>3)</sup>

## (2)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2021회계연도 사업평가) 결과

2021년도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총 51개<sup>4)</sup> 부처의 1,197개 사업 중 233개 사업이 '우수', 768개 사업이 '보통', 196개 사업이 '미흡'으로 평가되었다.<sup>5)</sup>

[부처별 202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단위: 개, 억원)

부처명	평가등급별 사업수				평가등급별 예산규모			
	계	우수	보통	미흡	계	우수	보통	미흡
전 체	1,197	233	768	196	1,806,757	494,630	1,066,669	245,458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1	0	1	0	45	0	45	0
가습기살균제사건과	-	-	-	-	-	-	-	-

3) R&D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권기금사업평가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평가지침을 시달한다.

4)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방청, 특허청은 부처 특성 등에 의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대통령경호처는 평가 대상사업이 1개이므로, 평가를 미시행하였다.

5)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수가 2개미만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부처의 사업은 제외됨.

(단위: 개, 억원)

부처명	평가등급별 사업수				평가등급별 예산규모			
	계	우수	보통	미흡	계	우수	보통	미흡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	-	-	-	-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0	1	0	195	0	195	0
경 찰 청	18	3	12	3	11,294	2,038	8,416	840
고용노동부	70	14	45	11	312,232	167,071	129,203	15,958
공정거래위원회	6	1	4	1	227	23	185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3	12	41	10	33,148	13,610	17,660	1,878
관세청	7	1	5	1	1,579	599	881	99
교육부	50	10	32	8	48,838	7,571	35,671	5,596
국가보훈처	17	3	11	3	3,145	196	2,473	476
국가인권위원회	6	1	4	1	104	15	74	15
국가정보원	-	-	-	-	-	-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	-	-	-	-	-	-
국민권익위원회	7	1	5	1	356	89	256	11
국방부	37	7	24	6	153,713	54,542	88,353	10,818
국세청	10	2	6	2	2,167	110	1,874	183
국토교통부	84	17	54	13	475,811	78,275	310,386	87,150
국회	16	3	10	3	2,282	358	1,675	249
금융위원회	8	2	5	1	36,315	28,893	3,929	3,493
기상청	6	1	4	1	778	140	606	32
기획재정부	16	3	10	3	15,486	931	13,408	1,147
농림축산식품부	73	14	48	11	91,097	10,607	67,616	12,874
농촌진흥청	6	1	4	1	1,298	480	651	167
대법원	5	0	1	4	1,908	0	465	1,443
대통령경호처	-	-	-	-	-	-	-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0	1	0	80	0	80	0
문화재청	20	3	14	3	7,899	970	6,282	647
문화체육관광부	62	12	40	10	60,321	12,108	35,922	12,29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1	0	0	238	238	0	0
방송통신위원회	8	2	5	1	2,095	160	1,837	98
방위사업청	3	1	1	1	1,194	968	209	17
법무부	23	4	15	4	8,861	1,145	6,865	851
법제처	4	1	2	1	146	71	58	18
병무청	5	1	3	1	457	183	245	29

(단위: 개, 억원)

부처명	평가등급별 사업수				평가등급별 예산규모			
	계	우수	보통	미흡	계	우수	보통	미흡
보건복지부	85	17	55	13	92,591	24,450	57,674	10,467
산 립 청	25	5	16	4	13,684	1,718	10,411	1,555
산업통상자원부	67	13	44	10	62,800	4,767	51,114	6,919
새만금개발청	2	2	0	0	2,710	2,710	0	0
소방청	-	-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9	2	5	2	673	175	318	180
여성가족부	16	3	10	3	4,270	885	3,090	295
외 교 부	34	6	23	5	13,628	1,552	8,385	3,691
원자력안전위원회	4	2	0	2	869	805	0	64
인사혁신처	13	3	8	2	22,105	9,551	7,521	5,033
조달청	9	2	5	2	1,271	51	1,170	50
중소벤처기업부	47	9	31	7	155,297	34,283	82,916	38,09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1	4	1	1,524	67	1,228	230
질병관리청	13	2	9	2	1,763	159	1,096	508
통 계 청	15	3	9	3	1,940	406	924	610
특허청	-	-	-	-	-	-	-	-
통 일 부	14	2	9	3	13,744	503	6,417	6,824
해 양 경 찰 청	5	1	3	1	2,973	165	2,621	187
해양수산부	79	15	52	12	44,764	7,897	32,939	3,928
행 정 안 전 부	55	11	35	9	24,937	13,967	10,224	74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7	1	5	1	4,116	1,594	1,909	613
헌법재판소	1	1	0	0	68	68	0	0
환 경 부	57	11	37	9	67,722	7,468	51,193	9,061

주: 평가등급 사업수는 단위사업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평가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하되, 전체 평가대상사업(의무지출사업 등 제외) 예산의 1% 수준에서 지출구조조정계획 수립하여야 하며, 미흡사업만으로 구조조정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보통 또는 우수 사업까지 포함할 수 있다.

## 나. 분석의견

### (1) 집행실적 제고 노력에 대한 평가 필요

집행률은 예산안 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리스크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성과평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따라 집행실적 외에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집행률은 예산안 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리스크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에서 집행률 관련 평가지표를 ‘집행률 제고 노력’으로 설정하고, 평가 기준을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 확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평가지표	평가기준
집행률 제고 노력(30)	<input type="checkbox"/>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 확인 *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 조직개편, 환율변동, 사업방식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실적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 * 지자체 자본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 집행률로 평가 <input type="checkbox"/> 가점 및 감점 ○ 연례적 이불용 사업인 경우 감점(△5) * 집행률이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3년간 평균 집행률이 70%미만인 경우 ※ 이외 분기별 집행계획 준수 등 가감점 항목은 부처별 자체 수립·활용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 2022, p.2.

이에 따라 **(기재부)경협증진자금지원**은 예산집행률 55.5%이지만 ‘집행률 제고 노력’ 점수 21.7점을 받았다. 반면, **(국방부)수송활동**은 3년 평균 집행률 94.3%(2021년도 91.9%)이지만, ‘집행률 제고 노력’ 점수 20점을 받았다. 위 사업들의 집행률은 큰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제고 노력’ 점수가 유사하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사유는 부처별 ‘집행률 제고 노력’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래 [표]와 같이 기획재정부는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를 준용하여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 확인’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였고, 국방부는 집행률에 따른 배점 기준을 적용하였다. 국세청은 타부처와 상이하게 ‘집행률 제고 노력’ 배점을 20점으로 축소하고, ‘집행률 정량평가’의 배점을 5점, ‘집행 노력도 정성평가’의 배점을 15점으로 책정하여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위주로 평가하고 있다.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는 평가지표별 내부 배점 기준은 부처 자율 수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sup>6)</sup> 각 부처는 소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행률 위주로 배점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집행점검이 아닌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이므로, 각 부처는 집행실적외에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도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처별 ‘집행률 제고 노력’ 평가 기준]

구분	평가 지표 및 기준
기획재정부 (배점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 조직개편, 환율변동, 사업방식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실적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li> <li>* 지자체 자본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 집행률로 평가</li> </ul> </li> <li>□ 가점 및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례적 이불용 사업인 경우 감점(△5)</li> <li>* 집행률이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3년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인 경우</li> <li>※ 이외 분기별 집행계획 준수 등 가감점 항목은 부처별 자체 수립·활용 가능</li> </ul> </li> </ul>

6) 기획재정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 2022, p.15.

구분	평가 지표 및 기준															
국방부 (배점 30)	<p>□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 확인</p> <table border="1" data-bbox="478 448 1244 600"> <thead> <tr> <th colspan="5" data-bbox="478 448 1244 492">〈배점 방법〉</th> </tr> <tr> <th data-bbox="478 492 574 537">기준</th> <th data-bbox="574 492 670 537">“예”</th> <th data-bbox="670 492 893 537">“상당한 정도”</th> <th data-bbox="893 492 1085 537">“어느 정도”</th> <th data-bbox="1085 492 1244 537">“아니요”</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78 537 574 582">배점</td> <td data-bbox="574 537 670 582">30</td> <td data-bbox="670 537 893 582">27~23</td> <td data-bbox="893 537 1085 582">22~18</td> <td data-bbox="1085 537 1244 582">17~13</td> </tr> </tbody> </table> <p>가. “예 (30점)”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3년간(’19, ’20, ’21년) 예산집행률이 100%인 경우 등  나. “상당한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 3년 평균 집행률이 95% 이상 ~ 100% 미만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  다.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 3년간 평균 집행률이 70~95%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라. “아니요”에 해당하는 경우 : 집행률 부진에 대한 개선 노력이 없거나, 전년 대비 집행률이 연속적으로 하락하여 ’21년 집행률이 70% 미만인 경우 등</p>	〈배점 방법〉					기준	“예”	“상당한 정도”	“어느 정도”	“아니요”	배점	30	27~23	22~18	17~13
〈배점 방법〉																
기준	“예”	“상당한 정도”	“어느 정도”	“아니요”												
배점	30	27~23	22~18	17~13												
고용노동부 (배점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li> </ul>															
국세청 (배점 20)	<p>3) 집행률 정량평가(5)</p> <table data-bbox="542 1086 1204 1131"> <tr> <td>95%이상 (5)</td> <td>95% ~ 80% (4)</td> <td>80% 미만 (3)</td> </tr> </table> <p>4) 집행 노력도 정성평가(15)  5) 집행률이 연속적으로 3년간 집행률 70% 미만(△5)</p>	95%이상 (5)	95% ~ 80% (4)	80% 미만 (3)												
95%이상 (5)	95% ~ 80% (4)	80% 미만 (3)														

자료: 각 부처 「2021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지출구조조정 모수 기준 조정 필요

기획재정부는 지출구조조정 모수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상의 의무지출 예산 및 2022년 완료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sup>7)</sup> 사실상 의무지출, 지출구조조정이 무의미한 사업 등<sup>8)</sup>도 지출구조조정 모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은 지출구조조정 목표액을 아래 [표]와 같이 ‘평가대상사업 총합계’에서 ‘구조조정 제외 총합계’를 제외한 ‘구조조정 대상 합계’의 1%로 설정하고 있다. ‘지출구조조정 제외 사업’은 디브레인 상의 의무지출 예산 및 2022년 완료사업으로 한정된다.

7) 기획재정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 2022, p.23.

디브레인 상의 의무지출 예산 및 '22년 완료사업
-----------------------------

8) 기획재정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 2022, p.6.

<p>사실상 의무지출, 지출구조조정이 무의미한 사업 등은 지출 구조조정에서 불인정·재조정 실시 <sup>※</sup> [참고 5]</p> <p>* 사실상 의무지출 : 법령 규정 및 국가간 계약 등에 따른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 의미가 없는 사업 : 단순이관, 자연종료 및 사업폐지 등 완료사업 등</p> <p>〈지출구조조정계획 마련시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출구조조정계획은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 및 사업별 구조조정규모 제시</li> <li>○ 사업비 삭감의 불이익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등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li> </ul>
---

[지출구조조정 총괄 작성 표]

연번	분야	평가 사업명	평가 결과	세부사업명	'22년 예산(A)	'23년 요구 계획(B)	지출구조조정계획	
							감액 (B-A)	예산 변동 내역(증액 및 감액)
		지출구조 조정 목표 <sup>1)</sup> (‘21년예산 기준)		〈평가대상 사업 총합계〉	1,580,000	-	-	
			〈구조조정 제외 총합계〉	300,000	-	-		<b>‘2. 지출구조조정 제외 사업 현황’ 표 참조</b>
			〈구조조정 대상 합계〉	1,280,000	-	(목표금액) △12,800		
		지출구조 조정 계획 <sup>2)</sup>		〈지출구조 조정사업 합계〉	27,300	14,850	△12,450	
1	일반 재정	□□□□□□	미흡	○○○사업	1,000	1,000	0	
				○○○사업	1,500	1,350	△150	·집행부진에 따른 감액(△200) ·지원단가 상승에 따른 증액(50)

주: 지출구조조정계획은 미흡 사유를 감안하여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세부사업 기준으로 감액인 경우만 지출구조조정에 해당)

- 1) 지출구조조정목표 : 평가대상(‘21년) 예산의 1% 목표치로 설정
    - 단, 디브레인코드상 의무지출 사업 및 ‘22년 완료 사업은 모수에서 제외(의무지출 사업 및 ‘22년 완료 사업은 사전에 제출된 자료 기준)
  - 2) 지출구조조정계획 : 지출구조조정목표 달성을 위한 차년도 예산삭감 계획(‘22년 대비 ‘23년 계획)
    - 감액(B-A) : 예산 변동 내역상 순감액 금액과 일치해야 함
    - 예산 변동 내역 : 순감액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내 변동내역(증액, 감액)을 모두 작성
- \* 증액 및 감액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 각각에 대한 금액 표기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 2022, p.22.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의무지출, 지출구조조정이 무의미한 사업<sup>9)</sup> 등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불인정·재조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sup>10)</sup> 사실상 의무지출, 지출구조조정이 무의미한 사업 등은 지출구조조정 대상이 아니지만 지출구조조정 목표액 산정에는 포함되는 것이다.

9) 기획재정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 2022, p.7..

■ 지출구조조정 부정적 해당 여부  
\* 의무지출, 국정과제,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연부액 계획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기획재정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 2022, p.6.

지출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사업들의 예산까지 ‘구조조정대상 합계’에 포함될 경우, 지출구조조정 목표액이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의무지출, 지출구조조정이 무의미한 사업 등도 지출구조조정 모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지출구조조정의 효용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첫째, 평가등급 ‘미흡’과 무관한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은 성과평가의 예산연계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찰청) **교통행정전산화(1332)**는 교통경찰 전산시스템을 개발 및 유지하는 사업이며,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성능관리 미흡에 따라 장애 발생시간 지연으로 성과목표치 69분을 초과한 95분의 장애 발생 등에 따라 평가등급 ‘미흡’을 받았다.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교통행정전산화)]

(단위: %)

성과지표	구분	2019	2020	2021	2022
교통전산시스템운영 안정도(분)(정보화) (하향지표)	목표	91	73	69	63
	실적	40	65	95	-
	달성도	156	111	62.3	-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반영률(%) (정보화)	목표	70	70	70	71
	실적	64.7	78.7	71.2	-
	달성도	92.4	112.41	101.7	-

자료: 경찰청,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2022.3, p.271.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교통전산시스템 고도화’ 및 ‘상용 SW 도입’ 예산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지출구조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시스템 장애 관련 내역사업에 대한 예산은 증가하고, 시스템 장애와 무관한 ‘교통전산시스템 고도화’ 및 ‘상용SW 도입’에 대한 예산이 구조조정되었다.

시스템 장애발생에 의해 평가등급이 낮아졌으나,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위해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을 감액한다면 시스템 장애발생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성과등급이 낮은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능별 예산안 내역(교통행정전산화)]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예산		2023안 (B)	증감	
		본예산(A)	추경		(B-A)	(B-A)/A
기능별 분류(합계)	743	1,564	1,564	1,258	△306	△19.6
· 전산시스템 고도화	-	352	352	96	△256	△72.7
· 전산시스템 보강	123	440	440	568	128	29.1
· 상용SW 도입	225	216	216	30	△186	△86.1
·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330	494	494	501	7	1.4
· 공공요금	26	27	27	27	0	0.0
· 기타운영비	40	35	35	36	1	2.9

자료: 경찰청

둘째, COVID19 진정으로 인한 일상화를 고려할 때, COVID19에 의한 예산집행부진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동향조사분석(1040)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신규패널 구축을 실시하였으나, 조사기간 내 COVID19 재확산으로 불가피하게 조사 연장을 하게 되어 용역계약 집행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평가등급 '미흡'을 받았다. 따라서 동 사업의 예산은 전년대비 △12.9% 감액되었다.

[기능별 예산안 내역(고용동향조사분석)]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예산		2023안 (B)	증감	
		본예산(A)	추경		(B-A)	(B-A)/A
기능별 분류(합계)	6,632 [5,495]	6,822	6,822	5,939	△883	△12.9
· 고용동향조사	3,107 [2,502]	3,682	3,682	2,963	△719	△19.5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1,081 [1,080]	958	958	959	1	0.1
· 고용동향분석	405 [403]	407	407	366	△41	△10.1
· 빅데이터센터 구축	1,739 [1,210]	1,395	1,395	1,001	△394	△28.2
· 고령자 고용정책 연구	300 [300]	380	380	650	270	71.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COVID19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조사성공률과 가구방문율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용동향조사는 고용동향 전반에 관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고용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COVID19 진정으로 인한 일상화를 고려할 때, COVID19에 의한 예산집행부진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4) 예산의 자연감소분을 지출구조조정 규모에서 제외할 필요**

**예산 축소가 예정된 사업에 평가등급 ‘미흡’을 주는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의 자연감소분은 지출구조조정 규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세제운영(3135)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청안내, 지급통지, 홍보 등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평가등급 ‘미흡’을 받아 지출구조조정을 받았다.

[예산안 총괄]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예산		2023안 (B)	증감	
		본예산(A)	추경		(B-A)	(B-A)/A
근로·자녀장려세제운영(3135)	12,240	10,975	10,723	9,402	△1,573	△14.3

자료: 국세청

그런데 국세청 「2021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고서에는 동 사업에 대한 평가근거가 누락되어 있으며, 동 사업의 평가등급은 평가결과 요약표에서 ‘미흡’으로 분류되었다.

[사업별 평가결과(국세청)]

연번	예산/기금	평가 사업명	예산(억원)		평가 점수	평가 등급
			2021	2022		
합계			2,167	2,359		
1	일반회계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18	17	83.6	우수
2	일반회계	취업후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92	33	82.0	우수
3	일반회계	국세행정전산화(정보화)	1,003	1,219	81.0	보통
4	일반회계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24	27	79.6	보통
5	일반회계	국세징수활동지원	699	727	79.3	보통
6	일반회계	범무심사지원	105	117	78.3	보통
7	일반회계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25	26	77.3	보통
8	일반회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18	15	72.0	보통
9	일반회계	채납정리지원	57	68	71.0	미흡
10	일반회계	근로자녀장려세제운영	126	110	68.0	미흡

자료: 국세청, 「2021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022, p.5.

평가등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집행률 및 성과목표 달성도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평가등급 ‘보통’을 받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은 집행률 66.1%, 성과목표달성도 34.0%이다. 반면, 평가등급 ‘미흡’을 받은 ‘근로자녀장려세제운영’은 집행률 97.2%, 성과목표달성도 99.8%이다.

[사업별 집행률 및 성과목표 달성도(국세청)]

(단위: %)

연번	예산/기금	평가 사업명	집행률	성과목표 달성도	
1	일반회계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170.7	126.1	
2	일반회계	취업후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96.2	100.3	
3	일반회계	국세행정전산화(정보화)	-	97.2	
4	일반회계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100	99.7	
5	일반회계	국세징수활동지원	조사활동지원	86.2	100.1
			부과·징수자료수집비	99.9	
			부과·징수지원	41.1	
6	일반회계	법무심사지원	소송수행비용	99.9	92.4
			확정채무 지급	139.9	
7	일반회계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99.9	104.6	
8	일반회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66.1	34.0	
9	일반회계	체납정리지원	징수위탁수수료	91.3	102.9
			압류재산공매	107.5	94.1
10	일반회계	근로자녀장려세제운영	97.2	99.8	

자료: 국세청,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2022.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세제운영에 대해 평가등급 ‘미흡’을 부여한 사유는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2년 2월 15일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sup>11)</sup>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결정통지서의 모바일 발송이 가능함에 따라, 근로·자녀장려세제운영 예산 중 ‘신청안내문·지급통지서 발송 우편요금’ 71.28억원은 대폭 감액될 수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2022년 ‘신청안내문·지급통지서 발송 우편요금’ 예산은 2021년 71.28억원 대비 14.74억원(△27.2%) 감액된 54.20억원이었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②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2. 11., 2022. 2. 15.>

1. 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
2. 신청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기능별 예산안 내역(근로 · 자녀장려세제 운영)]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예산		2023안 (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근로 · 자녀장려세제 운영	12,240	10,975	10,723	9,402	△1,573	△14.3
일용임금	1,396	1,679	1,679	1,746	67	4.0
인쇄비, 홍보비 등	2,327	2,522	2,270	2,234	△288	△11.4
안내문 발송요금 등	7,128	5,420	5,420	3,946	△1,474	△27.2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339	1,302	1,302	1,426	124	9.5
설문조사	28	30	30	30	0	0.0
간담회	14	14	14	12	△2	△14.3
보전금	8	8	8	8	0	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내문 발송요금 등의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우편봉투구입이 결정통지서의 모바일 발송에 따라 2022년 959만건에서 2023년 338만건으로 축소되었고, 결정통지서 등 제작 비용도 2022년 6.91억원에서 2023년 3.99억원으로 축소되었다.

평가등급 ‘미흡’을 받은 사업은 의무적으로 지출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부처는 예산 축소가 예정된 사업에 평가등급 ‘미흡’을 주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의 자연감소분은 지출구조조정 규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안내문 발송요금 등의 산출내역]

구분	2022	2023안
합계	1,304,755천원	794,000천원
우편봉투구입	959만건×20원=210,980천원	338만건×21원=71,000천원
결정통지서 등 제작	691,475천원	399,000천원
안내창구 개설	149개×3회×900천원=402,300천원	154개×3회×700천원=324,000천원

자료: 국세청

(5) 성과평가와 예산연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국토교통부는 지출구조조정 목표액이 △4,401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893억 원 증액하였으므로, 기획재정부는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따라 평가등급 ‘미흡’ 사업에 대하여 지출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에 따라 산출된 국토교통부의 지출구조조정 목표액은 △4,401억원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평가등급 ‘미흡’ 사업들의 예산을 893억원 증액하는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지출구조조정 총괄]

(단위: 백만원)

분야	평가 사업명	'22년 예산	지출구조조정계획	
			감액	예산 변동 내역 (증액 및 감액)
지출구조조정 목표		44,006,655	△440,067	목표금액
지출구조조정 계획		4,816,586	89,263	
일반 재정	도시경관및건축문화품격향상	8,231	6,519	
	광역철도건설지원(교특)	425,703	483,739	
	신공항건설(교특)	184,600	△40,086	
	일반공항건설	17,600	△8,100	
	제주구국도유지관리	31,903	△630	
	제주구국도건설	10,559	△1,055	
	도로병목지점 개선	151,542	△15,154	
	민자유치사업	833,439	2,998	
	철도정책지원	18,158	△1,816	
	도시기능증진지원	463,112	△6,780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제주)	0	0	타 사업으로 통합
주택 기금	통합공공임대지원용자	965,615	0	
	행복주택용자	1,618,814	△81,014	
	임대주택지원	6,879,404	△174,186	
	국민임대주택지원용자	751,719	△75,172	

자료: 국토교통부, 「2021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022, pp.103~106.을 바탕으로 재작성

국토교통부는 소관 사업들이 대부분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 등으로 지출구조조정

이 곤란한 사업들로 구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모든 부처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에 따라 성과평가와 예산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도 이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sup>12)</sup>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 상황이 특수하다면, 기획재정부는 부득이하게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2)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하는 순증감액 기준은 893억 증액이나, 단위사업내에 주요세부사업(22개)은 10%내외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총 4,625억 감액조정

## 2. R&D평가와 예산안 연계

### 가. 현황

#### (1) R&D 평가 개요

R&D평가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sup>1)</sup>에 따라 실시하는 국가R&D사업 성과평가를 의미하며,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 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하고 있다.<sup>2)</sup>

R&D평가는 크게 사업의 추진단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구분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재정사업자율평가를 대체하여 사업수행단계에서 추진되는 중간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임길환 예산분석관(ghlim@assembly.go.kr, 6788-3734)

####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중간 성과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매년 당해 연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가 제6조제1항의 사업 전략계획과 제2항의 자체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실시되었는지 여부 및 결과의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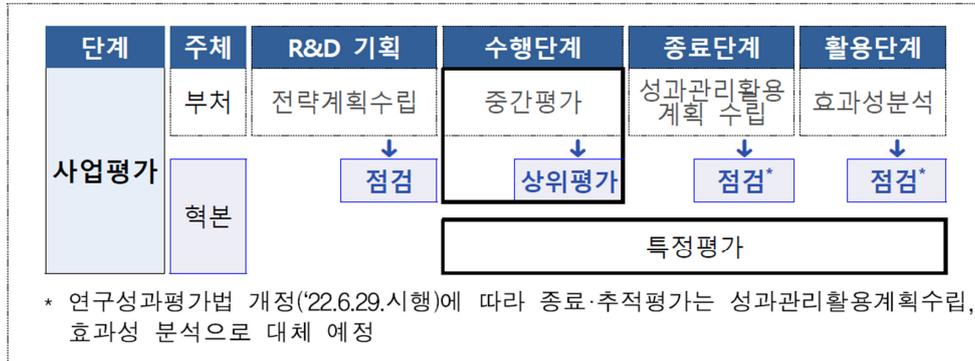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른 자체평가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2(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국가R&D사업 성과평가 유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중간평가의 절차를 살펴보면, 사업수행 부처가 R&D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상위평가(적절성 점검)하는 순서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수행부처의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처 자체평가 계획 수정·보완(전년 12월말) → 사업수행부처의 자체평가 실시(1~3월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상위평가 실시(4~5월경) → 평가결과 부처 통보(5월경)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평가 대상은 3년 평가주기가 도래하고 전략계획서 수립·점검이 완료된 국가R&D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예산 30억원 이하의 소액사업은 상위평가에서 제외되어 자체평가만 실시하지만, '우수' 등급인 경우 상위평가 실시가 가능하다.

자체평가는 사업수행 부처가 추진과정, 성과, 환류계획 등 3개 부문 7개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위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가 부처가 실시한 자체평가의 과정·근거·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점검하고 있다.

[2022년 R&D평가(중간평가) 항목 및 평가지표]

(단위: 점)

구분	평가 항목	배점범위	평가지표	배점
자체 평가	추진과정	20~40	① 투입	각 10
			② 과제관리	
			③ 위험요소 관리	
④ 수혜자				
⑤ 환류				
	성과	50~70	⑥ 성과의 우수성 및 핵심성	50~70
	환류계획	10	⑦ 성과분석환류계획의 구체성	10
구분	점검 항목	세부기준		
상위 평가	자체평가 과정	① (과정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② (과정2) 자체평가 형식요건 준수 여부 ③ (과정3) 사업별 종합적 성과분석을 통한 평가 객관성 확보		
	자체평가 근거	④ 근거자료의 충실성		
	자체평가 결과	⑤ 등급부여의 타당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평가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 3단계 등급을 부여하며, 미흡 등급의 수를 우수 등급 사업 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연동하여 배정함으로써 평가의 관대화 현상을 방지하고 있다.

[2022년 R&D평가(중간평가) 평가 결과 및 등급 구분]

등급	우수	보통	미흡
점수	85점 이상	85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 우수등급의 30% 이상

주: 사업 수 기준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버림(예: 3.74 → 3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자체평가 결과 ‘미흡’ 또는 상위평가 결과 ‘부적절’ 사업은 예산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우수적절’ 사업은 예산 증액요소로 고려된다. 최종 평가결과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성과평가 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 (2) 2022년 R&D 중간평가 결과

2022년도 국가R&D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상위평가) 대상은 19개 부처 133개 사업으로, 2021년 예산 6조 6,171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평가 결과 우수 24개, 보통 104개, 미흡 1개, 부적절 4개로 판정되었다.

[2022년 R&D평가(중간평가) 자체평가 및 재평가 결과 분포]

(단위: 개, 점, %)

구분	사업 수	평균점수 (등급)	평가등급			최종 '부적절'
			우수 (비율)	보통 (비율)	미흡 (비율)	
최초 자체평가	133	82.5 (보통)	33 (24.8)	100 (75.2)	-	-
재평가 반영		81.6 (보통)	24 (18.0)	104 (78.2)	1 (0.8)	4 (3.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R&D평가(중간평가) 부처별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 결과]

(단위: 개)

부처명	사업 수	최초 자체평가 결과			상위평가 결과			부적절
		우수	보통	미흡	적절			
					우수	보통	미흡	
과기정통부	31	5	26	0	5	26	0	0
교육부	4	3	1	0	2	1	0	1
국토부	9	4	5	0	3	6	0	0
기상청	1	1	0	0	1	0	0	0
농식품부	2	0	2	0	0	2	0	0
농진청	8	2	6	0	1	7	0	0
방사청	5	1	4	0	1	4	0	0
복지부	8	3	5	0	2	6	0	0
산림청	5	1	4	0	0	4	0	1
산업부	28	4	24	0	4	21	1	2
소방청	2	0	2	0	0	2	0	0
식약처	2	2	0	0	2	0	0	0
원안위	2	0	2	0	0	2	0	0

(단위: 개)

부처명	사업 수	최초 자체평가 결과			상위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	적절			부적절
					우수	보통	미흡	
중기부	3	0	3	0	0	3	0	0
질병청	2	2	0	0	1	1	0	0
해경청	3	1	2	0	1	2	0	0
해수부	10	2	8	0	0	10	0	0
행안부	2	1	1	0	1	1	0	0
환경부	6	1	5	0	0	6	0	0
합계(평균)	133	33	100	0	24	104	1	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 (1) 상위평가의 관대화 경향 개선 필요

R&D 평가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최종 미흡 판정 사업과 상위평가의 부적절 판정 사업 수가 줄어들고 있어 평가의 관대화 경향이 우려된다.

R&D 평가는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집행 부처의 자율성은 확대하면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1년도 평가부터는 집행부처가 자율적으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상위평가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을 경우 소관부처가 점수·등급을 스스로 조정하는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sup>3)</sup>

따라서 상위평가에서는 평가등급의 조정을 하지 않는 대신에 자체평가의 적절성 여부만을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등급도 기존 5단계(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에서 3단계(우수/보통/미흡)로 간소화하였다. 다만, 부처 자율성 강화에 따라 평가의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는 미흡 등급 사업의 수를 우수 등급 사업의 30% 이상이 되도록 자체평가지침을 강화한 바 있다.<sup>4)</sup>

최근 5년간 R&D 중간평가에서 미흡 등급 판정을 받은 사업의 수를 살펴보면, 상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2022. 6) 참조.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지침」(2022. 1) 참조.

위평가에서 평가 등급을 조정했던 2020년 이전에 비해 2021년부터 미흡 판정 사업의 수가 각각 0개, 1개로 나타나 상당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상위평가에서 평가등급 조정을 하지 않고 적절성 여부만을 판단하면서 2021년도부터 도입된 부적절 사업의 수도 2021년 9개에서 2022년 4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반면에 2022년 평가에서 보통 등급 판정 사업은 전체의 78%가 넘는 104개 사업으로 나타나 평가결과가 보통 등급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미흡 등급의 사업 수를 우수 등급 사업의 30% 이상이 되도록 평가지침을 개정하였으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2년 R&D평가(중간평가) 최종 평가 등급 현황]

(단위: 개, %)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부적절		합계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2018	27	27.3	69	59.7	3	3.0	-	-	99	100.0
2019	35	38.3	48	52.5	8	9.2	-	-	91	100.0
2020	27	38.0	38	53.5	6	8.5	-	-	71	100.0
2021	25	31.6	45	57.0	0	0.0	9	11.4	79	100.0
2022	24	18.0	104	78.2	1	0.8	4	3.0	133	100.0

주: 2018~2020년 미흡 등급은 매우미흡 등급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R&D평가는 집행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미흡·부적절 판정 사업의 수는 줄어드는 반면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미흡등급 사업의 연동 비율은 준수되지 않고 있어, 당초 제도 개선 취지와 달리 온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대부분의 재정사업 성과평가가 평가 등급의 상대 비율을 할당하여 평가의 관대화를 방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6)</sup>

5) 부적절 사업의 경우, 2021년 9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부처 재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이며, 2022년은 4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부처 재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가 등급을 미흡으로 하향해야 하는 대상 사업은 2021년 5개, 2022년 2개 사업에 불과하다.

6)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R&D성과평가가 성과 중심 질적 정성평가(절대평가)로 운영중이며, 상대평가는 우수한 성과를 낸 사업이 고정된 비율에 따라 제대로 된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 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 강화 필요

R&D평가 결과 차년도 예산안 감액 대상인 사업이 최종 예산안 편성에는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불일치가 이원화되어 있는 R&D예산 편성 단계의 비효율에 따른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R&D평가(중간평가)의 ‘미흡·부적절’ 이하 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 결과를 살펴본 결과, 2019년부터 총 7개의 사업 예산안이 증액 또는 전년동으로 편성되어 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2년 평가결과 미흡·부적절 사업 중 차년도 예산 미감액 편성 사업]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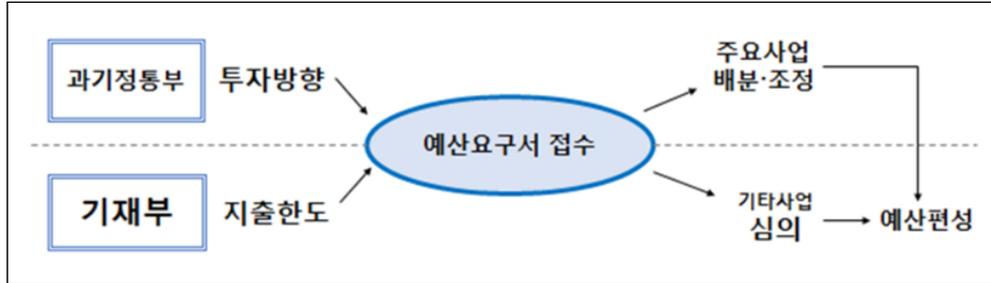
연도	부처명	사업명	평가연도 예산(A)	차년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
2019	과기정통부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	0	26,879	26,879	순증
	과기정통부	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	7,122	7,409	287	4.0
2020	해수부	수산생물방역체계구축	9,028	9,039	11	0.1
	교육부	학교기업지원	7,480	7,480	0	0.0
2021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	27,732	29,525	1,793	6.5
	해수부	수산전문인력양성	6,040	7,204	1,164	19.3
2022	교육부	대학혁신지원	376,500	376,500	0	0

주: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 사업의 경우, 건설허가 획득 지연에 따라 2019년 예산 미배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 R&D 예산안의 경우 일반 재정사업과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의 2단계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R&D평가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평가결과의 예산 환류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R&D예산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R&D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을 실시(예산액 또는 의견제시)하며, 기획재정부는 정부 재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과기정통부의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반영한 정부 R&D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R&D 예산 배분·조정 체계]



자료: 구미래창조과학부, 「정부R&D예산의 배분·조정 체계 및 절차」(2017)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차년도 R&D사업 예산안을 직접 감액할 수 있으나, 전술한 7개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감액 또는 감액 의견제시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평가대상인 ‘대학혁신지원’의 경우 주요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예산 배분·조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요사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사업의 경우에도 과기정통부는 예산 감액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R&D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R&D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간 업무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R&D 예산의 배분·조정과 편성의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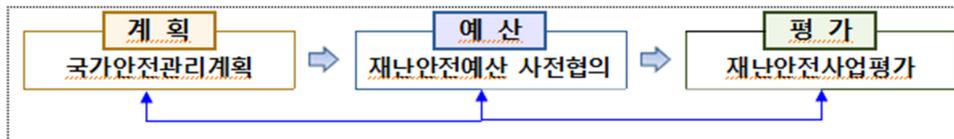
### 3. 재난안전사업평가와 예산안 연계

#### 가. 현황

##### (1) 재난안전사업평가 개요

재난안전사업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의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재정사업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목표 달성도 등 사업평가를 통해 재난·안전 계획과 예산, 평가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재난안전사업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동 평가의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sup>1)</sup>,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sup>2)</sup>이다.

[재난안전사업 평가 체계]



자료: 행정안전부, 「2022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21회계연도 사업 평가)」, 2022.4. p.1.

평가 절차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가 성과목표·지표 등 수립 지침 배포(전년 8 월경) → 성과목표·지표 등 확정(당해년 1월말경) → 재난안전사업평가 실시계획 배포(익년 1월경) → 평가결과 통보(익년 4월말경)(부처별) 성과목표·지표 등 수립(전년 9월말경) → 성과보고서 제출(익년 2월경) 순으로 이루어진다.

평가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재난안전사업이 평가대상이나, 평가가 중복되는 안태훈 예산분석관(matins10@assembly.go.kr, 6788-4747)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이하 “사업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소관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이하 “성과목표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8.>

R&D사업 및 평가실익이 적은 예비비·교부세 등은 제외된다.

평가 방법은 부처 자체평가(50점)와 행정안전부 평가(50점)를 합산하여 재난사고 유형별로 이루어지는 상대평가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를 개발·제시한다. 부처는 사업 관리의 적절성(예산집행률, 사업목표 연계성, 제도 개선 환류 등), 성과목표 달성 정도 및 성과의 우수성에 대해 자체평가를 시행하며, 행정안전부는 사업 계획의 적절성(정책적 중요도, 성과목표·지표 적절성), 사업 성과의 우수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인 효과(성과) 달성[가점]을 평가한다.

평가 등급은 자체평가 결과와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부처별 상대 평가로 사업별 우수, 보통, 미흡 3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상대평가 비율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의 등급 기준을 준용한다.

평가 결과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및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과 연계하며, 미흡사업 개선대책 수립, 인센티브 제공(재난관리평가 반영, 정부포상 추진), 안전정책조정회의 안건 상정, 언론보도 등 홍보결과 공개 및 활용 등에 활용한다. 평가 결과는 대상기관에 공문으로 발송하며, 정부업무평가포털 홈페이지<sup>3)</sup>에 공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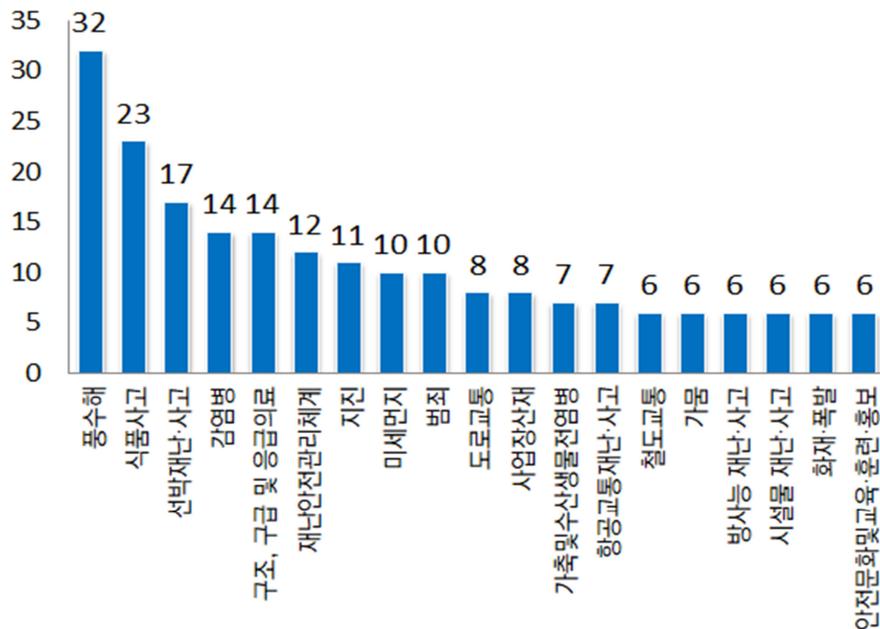
---

3)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132](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132)

## (2) 2022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전년도 사업성적을 평가한다. 2022년 사업평가는 27개 부처, 257개 사업<sup>4)</sup>(13.9조)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예산규모 기준으로 부처(사업수)는 국토부(26), 농식품부(20), 환경부(24) 순이며, 재난사고유형 사업수 기준으로 풍수해, 식품, 선박재난사고, 감염병 순이다.

[2022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대상사업 현황(재난사고유형)]



자료: 행정안전부, 「2022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21회계연도 사업 평가)」, 2022.4. p.1.

평가결과는 246개 사업<sup>5)</sup> 중 우수 44개(17.9%), 보통 177개(72.0%), 미흡 25개(10.1%)이다. 분야별 우수사업은 자연재난 8개, 사회·안전사고 28개, 공통 8개이며, 미흡사업은 자연재난 7개, 사회안전사고 13개, 공통 5개로 나타났다.

4) 성과관리 대상 354개 사업 중 △10억원 미만(56), △3년 연속 평가 우수(2), △국가안보보안(3), △예비비에 준하는 사업(6), △단순유지보수(1), △종료사업(1) 등 97개 사업 평가 제외

5) 평가대상 257개 사업 중 소관사업 2개 이하인 7개 부처 11개 사업은 평가 등급 미부여

[2022년 재난안전사업 분야별 평가 결과]

(단위: 개)

분야	재난사고 유형	평가 등급				미분류*
		사업수	우수	보통	미흡	
총계	38	246 (100%)	44 (17.9%)	177 (72.0%)	25 (10.1%)	11
자연재난	6	49 (100%)	8 (16.3%)	34 (69.4%)	7 (14.3%)	4
사회·안전사고	25	155 (100%)	28 (18.1%)	114 (73.5%)	13 (8.4%)	3
공통	7	42 (100%)	8 (19.1%)	29 (69.0%)	5 (11.9%)	4

자료: 행정안전부, 「2022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21회계연도 사업 평가)」, 2022.4, p.3.

부처별 소관사업의 우수 비율은 기상청(3개, 21.4%), 해경청(2개, 20.2%), 행안부(4개, 17.4%), 식약처(4개, 17.4%), 환경부(4개, 16.7%) 순이다. 소관사업 미흡 비율은 복지부(16.7%), 국토부(15.4%), 환경부(12.5%), 질병청(12.5%) 등이다.

## 나. 분석의견

### (1) 재난안전 관련 내역(내내역)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변경할 필요

**일부 재난안전사업은 내역(내내역)사업이므로, 재난안전 관련 내역(내내역)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재난안전사업평가 대상 사업들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재난안전사업은 내역사업 혹은 내내역사업이다. 재난안전 관련 내역사업 혹은 내내역사업을 포함하는 세부사업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난안전 관련 내역사업 혹은 내내역사업은 세부사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문체부)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4462-307)**는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내역사업 '유원시

6)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 보고서에는 세부사업명을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및 단체지원'으로 표기하고 있다.

설 안전 관리'을 포함하고 있어 재난안전사업평가를 받았으며, 평가등급 '미흡'을 판정 받았다. 그런데 내역사업 '유원시설 안전 관리'의 2023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동일하게 편성되었다.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예산		2023안 (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19,950	19,981	19,981	17,443	△2,538	△12.7
유원시설 안전 관리	9,823 (859)	1,358	1,358	1,358	0	0

주: ( )는 실적행액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 '유원시설 안전관리'는 유원시설 안전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점검 및 시설 관리자 및 공무원 대상 안전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 동 내역사업은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와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내역사업 '유원시설 안전관리' 예산안은 13.58억원이므로, 세부사업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예산안 174.43억원 대비 7.78% 수준이다.

예산 비중이 7.78% 수준인 내역사업으로 인해 세부사업이 재난안전사업으로 분류되어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내역사업 '유원시설 안전관리'는 세부사업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분리되어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기부)우체국보수(5143-417)**는 노후우체국 대수선, 내진성능 보강, 유해 석면 자재 해체, 임대 우체국사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재난 안전사업평가에서 평가등급 '미흡'을 받았다.

평가대상은 세부사업 '우체국보수' 전체가 아니라, 내내역사업 '내진보강'에 한정된다. 세부사업 '우체국보수' 2023년 예산안은 304.9억원이며, 내내역사업 '내진보강' 예산안은 24.67억원이다. 내내역사업 '내진보강' 예산안은 전년대비 10%가 감액되었다.

예산 비중이 8.09% 수준인 내내역사업으로 인해 세부사업이 재난안전사업으로 분류되어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내내역사업 ‘건물내진성능보강’는 세부사업 ‘우체국보수’ 분리되어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예산		2023안 (B)	증감	
		본예산(A)	추경		(B-A)	(B-A)/A
우체국보수	43,353	36,590	36,590	30,490	△6,100	△16.7
법적의무사항	3,097	3,248	3,248	3,248		
건물내진성능보강		2,742		2,46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인건비·운영비성 경비예산 사업은 지출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 필요**

균형발전사업평가제도에서는 인건비·운영비성 경비예산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균형발전사업평가는 법정경비, 인건비·운영비성 경비, 20억원 미만의 소액사업 등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재난안전사업평가는 일부 인건비·운영비성 경비 예산 사업도 재난안전사업 평가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sup>7)</sup>

**(행안부)중앙안전상황실운영(7037-300)**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 수행하는 사업이다.

2023년 중앙안전상황실운영 예산안은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평가등급 ‘미흡’을 받아 전년대비 6.1% 감액되었다. 예산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년 대비 13.3%(0.79억원),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14.3%(0.01억원) 감액되었다. 반면, 일반 수용비는 전년 대비 0.13억원(27.7%) 증액되었다.

7) 행정안전부는 예산과목 구성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격과 성과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안전상황실운영’은 재난정보 수집·전파, 재난상황 관리 및 지휘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이므로 사업 목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은 대규모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간 통합연계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므로 사업 계획이 적절한지, 사업 관리는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목별 예산안 내역(중앙안전상황실운영)]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예산액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수정		B-A	B-A/A
비목별 분류(합계)	2,245	2,245	2,108	△137	△6.1
일반수용비(210-01)	47	47	60	13	27.7
공공요금및제세(210-02)	1,448	1,448	1,388	△60	△4.1
특근매식비(210-05)	30	30	24	△6	△20.0
임차료(210-07)	0	0	6	6	순증
시설장비유지비(210-09)	593	593	514	△79	△13.3
관리용역비(210-15)	0	0	0	0	0.0
국내여비(220-01)	7	7	6	△1	△14.3
사업추진비(240-01)	11	11	10	△1	△9.1
공사비(420-03)	0	17	0	0	0.0
자산취득비(430-01)	92	92	100	8	8.7

자료: 행정안전부

**(행안부)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2733-303)**은 내역사업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및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보조)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은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훈련인 안전한국훈련, 수시훈련 및 정책사업인 어린이재난안전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보조)는 안전한국훈련 준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상보조금은 재난훈련과 관련된 자문비 등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비성 경비이다.

2023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예산안은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평가등급 ‘미흡’을 받아 전년대비 10% 감액되었다. 예산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전년대비 18.6%(2.43억원), 일반수용비는 전년대비 8.1%(6.9억원) 감액되었다. 반면, 포상금은 전년대비 0.7억원(85.4%) 증액되었다.

[비목별 예산안 내역(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예산액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수정		B-A	B-A/A
비목별 분류(합계)	2,426	2,370	2,183	△243	△10.0
일반수용비(210-01)	856	806	787	△69	△8.1
공공요금 및 제세(220-01)	1	1	1	0	0.0
특근매식비(210-05)	8	8	7	△1	△12.5
임차료(210-07)	19	19	19	0	0.0
국내여비(220-01)	100	95	99	△1	△1.0
사업추진비(240-01)	17	16	17	0	0.0
일반연구비(260-01)	40	40	40	0	0.0
포상금(310-03)	82	82	152	70	85.4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303	1,303	1,061	△242	△18.6

자료: 행정안전부

위 사업들이 평가등급 ‘미흡’은 받은 사유는 ‘사회적 혁신’ 및 ‘재해저감 효과’가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중앙안전상황실운영 및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등에서 ‘사회적 혁신’ 및 ‘재해저감 효과’ 성과를 높일 수도 있겠지만, 평가실효성 측면에서 인건비·운영비성 경비예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보다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성과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개선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미흡' 판정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실효성 강화 필요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들의 예산안은 평가등급 '미흡'을 받아도 모두 증가하고 있으므로, '미흡' 판정 사업의 예산 연계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들은 아래 [표]와 같다. 대부분의 사업들의 2023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감액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및 단체지원' 예산안은 전년대비 동일하다. 해양수산부 소관 '일반항' 예산안은 전년대비 증액되었으나, '항만시설유지보수(총액)' 예산안은 감액되었다.

[미흡 판정 사업의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기관명	세부사업	예산		
			2022	2023안	증감
1	경찰청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	6,624	6,137	△487
2	과기부	우체국보수	2,742	2,467	△275
3	국토부	주택성능보강	1,000	사업종료	-
4		철도교통관제시설운영위탁	41,380	42,114	734
5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	206,466	260,722	54,256
6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53,402	74,854	21,452
7	기상청	수치예보시스템 개선(정보화)	타 사업으로 통합		-
8	농식품부	재보험금	100,000	70,000	△30,000
9	문체부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및 단체지원	1,358	1,358	0
10	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5,476	25,367	△10,109
11		어린이집 기능보강	3,859	3,473	△386
12	산림청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13,320	11,963	△1,357
13	산업부	처분시설방사선안전관리	9,350	8,415	△935
14	식약처	식품관리 운영	1,570	1,410	△160
15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1,930	4,462	2,532
16	원안위	방재환경기반구축	10,645	9,777	△868
17	질병청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	1,819	1,621	△198
18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13,303	11,973	△1,330
19	해수부	항만시설유지보수(총액)	19,035	17,131	△1,904
20		일반항	87,981	103,505	15,524
21	행안부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2,426	2,183	△243
22		중앙안전상황실운영	2,245	2,108	△137
23	환경부	남강댐 치수능력증대	3,000	200	△2,800
24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내진보강)	1,000	사업종료	-
25		어린이통학차량LPG차 전환지원	21,000	9,000	△12,000

자료: 각 부처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은 4개 사업이 평가등급 ‘미흡’을 받았다. 그런데 ‘주택성능 보강’은 종료된 사업이며, 나머지 3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모두 전년대비 예산안이 증가하였다.

**(국토부)철도교통관제시설 운영위탁(2731-304)**은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관제업무 수행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2005년 이후 매년 철도교통관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동 사업은 평가등급 ‘미흡’을 받았으나,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7%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교통관제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이므로, 감액이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감액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2731-303)**은 고속철도 교량 내진보강 및 KTX 안전강화 대책<sup>8)</sup>에 따라 안전설비를 개량하여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철도 전용 무선통신망(LTE-R)을 구축하여 열차지연을 최소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 경로, 고장예측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평가등급 ‘미흡’을 받았으나, 예산안은 전년 대비 26.3% 증가하였다.

**(국토부)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3031-332)**은 개통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가 심각한 서울1~4호선 및 부산1호선의 시설물을 개량하여 열차 안전운행 및 철도이용객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평가등급 ‘미흡’을 받았으나,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2%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들의 예산안은 평가등급 ‘미흡’을 받아도 모두 증가하고 있으므로, ‘미흡’ 판정 사업의 예산 연계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8) 광명역 KTX 탈선('11.2) 재발방지

## 4. 균형발전사업평가와 예산안 연계

### 가. 현황

#### (1) 균형발전사업평가 개요

균형발전사업평가는 균형발전사업의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균형발전사업의 성과제고, 효율적 자원 배분 및 사업추진 효율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동 평가의 법적 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sup>1)</sup>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의2이다.

평가 절차를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성과계획) 수립지침 배포(전년 11월경) → (부처별/지방자치단체별) 자체평가계획 수립(당년 1월경) → 실적 작성(당년 1월경) → 자체평가(당년 1~2월경) → 자체평가결과 제출(당년 2월경) →(국가균형발전위원회)상위평가(당년 3~4월경) → 종합 결과보고서 작성(당년 5월경) 순으로 이루어진다.

평가 대상 사업은 부처의 균형발전사업 중 법정경비, 인건비·운영비성 경비, 20억원 미만의 소액사업 등을 제외한 세부사업이며, 평가 대상 기관은 평가중앙행정기관(교육부 등 13개 부처, 문화재청 등 3개 청),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이다.

평가 방법은 부처가 해당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부처 자체평가에 대해 적절성을 평가하고, 자체평가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직접 사업별 재평가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되 자체평가 과정·결과·환류 등을 점검하는 상위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지표는 개별사업의 '균형발전기여 등 사회적가치 창출'을 포함한 사업 기획·집행·성과 전주기 평가지표로 설정한다. 평가등급은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상대평가로 3단계로 등급화한다. 등급화는 예산규모 기준으로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안태훈 예산분석관(matins10@assembly.go.kr, 6788-4747)

####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시·도 시행계획,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추진 실적 및 제16조의2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상이다. 단, 사업수 10개 미만인 부처는 '사업수' 기준을 적용하고 3개 미만인 부처는 상대평가를 미 실시한다.

평가결과 종합보고서는 매년 5월 31일까지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되며, 평가결과는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등에 활용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또한 우수 사업 적극 발굴·홍보, 사업담당자 포상 추진에 활용한다.

평가 결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분공개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sup>2)</sup> 구축을 완료하여 공개범위 협의를 통해 평가 DB에 공개 준비 중이다.

## (2) 2022년 균형발전사업평가 결과

2022년 균형발전사업평가의 대상사업은 2021년 균특회계(지원·제주·세종계정)로 지원된 신규, 계속, 종료사업이며, 2021년 추진한 부처 균특회계 사업(7.6조원) 중 평가실익이 낮은 사업<sup>3)</sup>을 제외한 16개 부처의 90개 세부사업<sup>4)</sup>(7.5조원)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매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백서」를 발표하는데, 2023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된 내용을 수록한 2022년 평가백서는 내년 1월경에 발간될 예정이다. 평가백서 발간이 예산편성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만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에 제공하고 있다.

균형발전사업평가 결과가 예산안에 반영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에 비공개 자료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출한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sup>5)</sup>

---

2) <https://www.nabis.go.kr>

3) 성과관리 비대상, 소액사업, 행정·운영경비 지원 사업 등

4) SOC사업 및 규제자유특구제도는 단위사업

5)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균형발전사업 예산편성의견이 의사 결정 과정 중에 있는 자료로 공개 대상이 아니며, 정부재정 중 일부인 균특회계의 지자체별 지출한도가 공개될 경우 국가재정 전체의 지역별 배분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 지역간 불필요한 논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균특회계의 지자체 배분방식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배분모델\*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 나. 분석의견

### (1) 법률에 따라 균형발전 평가 대상 설정 필요

법령<sup>6)</sup>에 근거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시행계획에 대하여 평가하고, 기획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에 대해 재정사업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시도 시행계획,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추진 실적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시행령 제14조<sup>7)</sup>는 평가기준을 사업의 기획, 집행, 성과목표 등으로 설정하여 시행계획의 평가를 사업평가로 변경하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때문에 세부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설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부사업을 평가할 수 있으나, 평가의 대상은 법률에 따라 시행계획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5조는 아래 [표]에서 제시된 상위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시행계획을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세부사업만을 평가할 경우, 상위계획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할 수 있다.

---

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시도 시행계획,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추진 실적 및 제16조의2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2(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7)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4조(평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18.>

1. 사업 기획의 타당성
2. 사업 집행의 효율성
3.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성과
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규정한 평가대상 및 상위계획]

평가 대상	상위 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시·도 시행계획	시·도 계획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추진 실적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의 추진 실적	-

자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재작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은 아래 [표]의 전략 및 과제에 따라 달성될 '5년 후 미래상'을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의 전략 및 과제의 구성]

구분	핵심과제
균형발전지원체계	1.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2.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차등지원
	3. 생활밀착형 SOC사업 확대
	4.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협약) 본격 추진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6. 지역혁신체계 구축
3대 전략	
(사람)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1.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2.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 관광
	3.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 복지체계 구축
(공간)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4.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5.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6.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7. 혁신도시 시즌 2
	8. 지역산업 혁신
	9. 지역 유희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2019.1, p.5.

[국가균형발전의 미래상]

5

지역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일자리 비중 **50% 이상**

농어촌 순유입 인구 5년간 **90만 명 이상**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 질 높은 교육서비스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양성됩니다.
- 맞춤형 문화서비스 확대로 문화향유의 기회가 늘어납니다.
- 충족한 보건·복지체계로 의료·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듭니다.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 활력 있고 매력적인 농산어촌에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 도시재생으로 일하기 좋고 생기도는 공간이 생깁니다.
- 인구감소지역이 거주강소지역으로 거듭납니다.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 혁신도시에서 청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 지역주도 혁신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 지역의 유휴자원 활용으로 성장동력이 확충됩니다.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2019.1, p.71.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하부과제들로 구성되며, 하부과제는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핵심과제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를 살펴보면, 동 핵심과제는 하부과제 ‘지방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 ‘지역 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양성’, ‘지역인재 취업지원’로 구성된다.

하부과제 ‘지방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는 3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부문별 발전계획(2018~2022)」은 추진과제별로 아래 [표]와 같이 실천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데, 추진과제들은 세부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세부사업들만 평가하여 실천로드맵 추진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추진과제별 실천로드맵]

추진과제명	2018	2019	2020	2021	2022
대학 기본역량 진단(교육부)	대학기본역량 진단	후속조치실행	보완평가	차기진단	후속조치 실행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19년 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안마련	'19년 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수립 대학혁신 지원사업운영	대학혁신 지원사업 운영	대학혁신 지원사업 운영	-
국립대학 육성사업 (교육부)	계획수립사업 계획평가 컨설팅	계획수립 연차평가	계획수립 연차평가	계획수립 연차평가	계획수립 연차평가

자료: 20개 부처·청, 「부문별 발전계획(2018~2022)」, 2019. 1., p.6.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계획에 대하여 평가하여, 상위계획의 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균형발전 관련 세부사업들에 대한 평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2) 평가등급 산정 대상에서 종료사업 제외 필요

균형발전사업평가는 상대평가이며 평가대상에 종료사업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략적 평가등급 책정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등급 산정 대상에서 종료사업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

균형발전사업평가는 신규, 계속, 종료사업이며, 평가 등급은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상대평가로 3단계로 등급화한다. 등급화는 예산규모 기준으로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이다. 단, 사업수 10개 미만인 부처는 '사업수' 기준을 적용하고 3개 미만인 부처는 상대평가를 미실시한다.

그런데 2021년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2022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종료사업이나 지방이양사업들이 평가등급 '미흡'을 받는 사례가 확인된다.

(과기부)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투자지원은 2021년에 종료된 사업이다. (중기부)산학협력거점형플랫폼사업(R&D)는 2022년에 종료된 사업이므로, 2023년 예산안에 평가결과가 반영될 수 없다. 또한 (행안부)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세종)(제주)(지원)은 지방이전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평가결과가 예산 편성에 반영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종료사업은 등급화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2년 균형발전사업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예 산			비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 집적단지조성(R&D)	9,565	9,565	6,670	평가결과 미흡에 따란 예산 감축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투 자지원	-	-	-	21년 종료사업
	5G기반조선해양스마트통신플 랫폼맞춤서비스개발(R&D)	2,900	2,900	2,600	평가결과 미흡에 따란 예산 감축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실증 (R&D)	30,712	30,712	50,200	건설공사 본격 추진에 따라, 필요한 예산 반영
교육부	학교기업지원사업	6,672	6,672	6,672	증감없음
산업통상 자원부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58,322	58,322	0	22년 사업종료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	0	0	0	21년 사업종료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25,063	25,063	21,000	사회적경제혁신성장 (내역사업) 사업 종료
중소벤처 기업부	산학협력거점형플랫폼사업 (R&D)	5,625	2,620	-	사업종료
행안부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세종)(제주)(지원)	178,864	178,864	0	지방 이양

자료: 각 부처

## 1. 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예산안 연계

### 가. 현황

#### (1) 보조사업 연장평가 개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sup>1)</sup>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의 경우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이하, “보조사업 연장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령에 따라 존속기간 설정에서 제외되는 보조사업<sup>2)</sup>은 의무지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따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등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보조사업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된다.

임길환 예산분석관(ghlim@assembly.go.kr, 6788-3734)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4. 그 밖에 존속기간의 설정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금 존속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사후적인 평가로서,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평가위원을 추천받아 위촉구성된 보조사업 평가단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절차는 아래 표와 같이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1차 대면평가, 3단계 2차 대면평가 및 추가심사의 순서로 진행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절차]

구분	평가 내용
1단계 심사 (서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처가 작성한 제출자료를 근거로 서면심사 결과 도출</li> <li>평가단은 평가보고서 및 평가표를 작성하고 평가결과를 도출하여 부처에 통보</li> <li>부처는 평가보고서에 대한 '1차 소명의견서' 작성 및 제출</li> </ul>
2단계 심사 (1차 대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면평가 결과 및 '1차 소명의견서'를 바탕으로 평가대상별 1차 대면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단은 평가보고서 및 평가표를 작성하고 평가결과를 도출하여 부처에 통보</li> </ul> </li> <li>부처는 평가보고서에 대한 '2차 소명의견서' 작성 및 제출</li> </ul>
3단계 심사 (2차 대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 대면평가 결과 및 '2차 소명의견서'를 바탕으로 평가대상별 2차 대면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단은 평가보고서 및 평가표를 작성하고 평가결과를 도출하여 부처에 통보</li> </ul> </li> </ul>
추가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단계 심사결과에 심각한 이견이 있거나 평가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총괄반이 추가심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가심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단은 최종 이의제기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보고서(안)를 작성하여 총괄팀에 제출(1일 이내)</li> </ul> </li> </ul>
총괄팀 및 조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단계별 평가마다 평가위원이 독립의견으로 명확하게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어렵고 부처와의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총괄팀 및 조정위원회 의견 참고가 필요한 경우에 '조정위원회 검토 필요사업'을 작성하여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출된 필요사업의 자료는 총괄팀 및 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그에 따라 평가위원은 단계별 평가결과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li> </ul> </li> </ul>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아래 표와 같이 평가하되,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평가에서는 지원 규모별로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

(단위: 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3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소규모/중규모/대규모)	10
	1-5 사회적 가치 실현	△3~+3
2.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
	2-2 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3~+3
	2-5 평가결과 이행 여부	△3
	2-6 실집행 실적	△3

자료: 기획재정부

[규모에 따른 유형화 기준]

구분	분류 기준
소규모 사업	사업 규모 50억 이하 사업
중규모 사업	사업규모 50억 초과 200억 이하 사업
대규모 사업	사업규모 200억 초과 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보조사업의 최종 판정 유형은 크게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폐지의 경우 즉시 폐지와 일몰기한을 설정하는 단계적 폐지로 나누어진다. 정상 추진은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의 합이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판정 유형]

구분	내용
즉시 폐지	해당 보조사업의 차년도 폐지
단계적 폐지	즉시 폐지는 아니나,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일몰 기한을 설정하여 폐지
통폐합	유사 사업 및 관련 사업과 통합
감축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 적정 규모가 감소한 경우 감액
사업방식 변경	사업방식이나 보조율 변경 등
정상추진	적정 소요 지원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해당 중앙관서에 통보해야 하며, 각 중앙관서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보조금 예산 요구 시 반영하고 관련 조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변경 등으로 평가결과 반영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기타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sup>3)</sup>

## (2)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2022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는 2019년 보조사업 평가를 받은 사업 및 존속기한 3년 도래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타 기관에서 평가를 받는 사업 등을 제외하고 500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정상추진’ 32개 사업(6.4%), ‘즉시폐지’ 20개 사업(4.0%), ‘단계적 폐지’ 26개 사업(5.2%), 통폐합 2개 사업(0.4%), 감축 213개 사업(42.6%), 사업방식 변경 207개 사업(41.4%)로 나타났다. 보조사업 평가를 통한 지출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2021년 이후 감축대상 사업의 수와 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감축의 경우 해당 사업비의 10% 이상을 감축하는 높은 수준의 감축과 해당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감축하는 일정 수준의 감축으로 구분하고 있다.

3) 기획재정부,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 제20조 이하 참조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단위: 개, %)

구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	합계
2019년	사업수	4	8	1	105	176	155	449
	비율	0.9	1.8	0.2	23.4	39.2	34.5	100.0
2020년	사업수	2	12	5	68	130	24	241
	비율	0.8	5.0	2.1	28.2	53.9	10.0	100.0
2021년	사업수	5	13	1	180	194	68	461
	비율	1.1	2.8	0.2	39.0	42.1	14.8	100.0
2022년	사업수	20	26	2	213	207	32	500
	비율	4.0	5.2	0.4	42.6	41.4	6.4	100.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분석의견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감축' 판정을 받은 213개 세부사업 중 2023년 정부예산 안에 증액 또는 전년 동으로 편성된 사업은 40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감축' 사업 중 2023년도 예산안 증액 사업 현황]

(단위: 억원)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022년 예산(A)	2023년 예산안(B)	증감액 (B-A)
방통위	재난방송운영지원	28	28	0
행안부	기록관리정책 및 교육	13	19	6
문체부	개도국스포츠발전지원	74	74	0
문체부	문화도시조성(지역지원)	259	348	89
문체부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	1,329	1,391	62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운영	62	65	3
문체부	양성평등문화확산	3	3	0
문체부	영화제작지원	106	144	38
문체부	예술인력육성	223	258	35
문체부	전통생활문화진흥	61	117	56
문체부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280	322	42

(단위: 억원)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022년 예산(A)	2023년 예산안(B)	증감액 (B-A)
농식품부	가축개량지원	513	513	0
농식품부	기능성식품산업육성	63	66	3
농식품부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318	358	40
농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31	41	10
농식품부	스마트팜패키지수출활성화	18	26	8
농식품부	전통발효식품육성	119	170	51
산업부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150	157	7
산업부	전력효율향상	415	518	103
복지부	고령친화산업육성	27	28	1
복지부	뇌전증지원체계 구축	7	13	6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대국민인식개선	15	15	0
복지부	정신건강증진	1,083	1,117	34
복지부	한의약산업육성	58	69	11
환경부	물산업진흥및물기업육성	7	42	35
환경부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	18,225	23,655	5,430
고용부	중장년층취업지원	210	221	11
여가부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20	25	5
여가부	아이돌봄지원	2,773	3,532	759
국토부	광역버스공공성강화지원	378	581	203
해수부	내수면자원조성	72	81	9
해수부	수산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216	628	412
해수부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659	665	6
해수부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1,198	1,329	131
해수부	유통단계위생안전체계구축	22	95	73
중기부	여성기업육성	88	97	9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보조)	4,040	4,634	594
산림청	산림경영지도	238	240	2
산림청	산림복원	146	164	18
특허청	수요자중심의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47	55	8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2022)를 바탕으로 작성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경우, 세부사업 단위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 평가대상 보조사업이 세부사업 하위의 내역(내내역) 사업으로 편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감축 판정을 받은 내역사업의 예산을 감액한 경우에도 타 내역사업의 증액 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전체 세부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2022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감축 판정을 받은 213개 사업 중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증액 또는 전년 동으로 편성된 40개 세부사업 전부에 대하여 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전술한 40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각각의 사업 내역별로 증감액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평가 결과의 예산안 연계 강화 필요

**2022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감축’ 판정을 받은 사업 중 평가 결과를 예산안에 감액 반영하는 대신에 타 내역사업을 감액 규모 이상으로 증액하는 등 평가결과와 예산 환류를 우회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2021년부터 금년까지 2년에 걸쳐 관행적으로 지원되어 온 민간 보조사업의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지출 재구조화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다.<sup>4)</sup>

이에 따라 평가 결과 ‘감축’ 판정을 받은 사업의 차년도 예산안 반영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술한 바와 같이 2023년도 예산안에 증액(전년 동 포함) 편성된 45개 사업의 경우에도 평가 결과의 ‘감축’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평가 결과를 반영하되 대체 사업을 신규 편성하거나 타 내역 사업을 감액 규모 이상으로 과도하게 증액하여 실질적으로 감액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또는 감액 규모가 권고 수준에 비해 미흡한 경우 등의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05.30.) 참조

① 평가 결과를 반영하되 신규 또는 타 내역사업을 과도하게 증액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제작지원’**의 경우, 정부지원의 당위성이 낮아 2024년부터 폐지하도록 권고한 “장편 극영화 촬영 공간 지원” 예산(10억원)을 1년 앞당겨 전액 감액하였으나, 가장 비중이 큰 내역사업인 ‘독립영화예술 제작지원’을 약 37억원 증액 편성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의 경우, 종료 예정된 사업을 종료함으로써 해당 내역사업 축소 및 사업비를 감축하고, 기존 계속 사업 이외에 신규 사업은 제한적으로 추진하라고 권고 받은 반면, 2022년 종료된 “전통사찰 추가지원” 내역사업을 폐지하는 대신에 기존 내역사업(전통종교사찰 보존) 예산을 73억원 이상 증액 편성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의 경우, 일정수준(10% 이내)예산 감축을 권고 받은 “친환경생산자유통조직육성(16억원)”과 “비상품화농산물자원화센터지원(30억원)” 사업을 2023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대신에 타 내역사업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사업을 114억 9,400만원 증액하는 등 전체 세부사업 예산을 40억원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 사업의 당초 평가 결과에서는 감축대상 사업의 실행률이 저조하여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3년간 단계적 감축(10% 이내)을 제안하였으나, 농식품부는 해당 내역사업을 모두 종료시키는 대신에 감액 범위(46억원)보다 2배 이상 상회하는 예산을 타 내역사업에 편성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전통발효식품육성’**의 경우, 내내역 사업인 “전통발효식품육성플랫폼 구축” 사업(2022년 450백만원) 종료에 따른 예산 감축을 권고 받아 해당 내역을 감액하였으나, 유사한 형태의 내내역 사업인 “발효식품산업플랫폼 구축”(2023년도 1,450백만원)에 10억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타 내역사업인 ‘김치산업육성’ 사업을 45억 7,000만원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6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sup>5)</sup>

**해양수산부 ‘유통단계위생안전체계 구축’**의 경우, 내역사업인 “저온경매장 지원”(2022년 1,425백만원)이 비용대비 효과성이 제한적이고 집행률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일정 수준의 감축을 권고 받아, 해당 내역사업을 폐지하였으나 “저온친환경 위판장”(450백만원)을 내역사업으로 신규 편성하는 한편 “수산물 도매시장 냉동냉장 창

5)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증액된 내역의 대부분이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연차사업으로 연차별 소요분의 반영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고”(4,854백만원) 내역사업을 신규 편성하는 등 약 7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2022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감축’ 대상 사업 중 과도한 증액 사업 현황]

(단위: 억원)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예산		연장평가 결과
		2022	2023안	
문체부	영화제작지원	106	144	‘장편 극영화 촬영공간 지원’ 사업은 2024년부터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에 따라 기존 예산액만큼 예산액 감축 필요(일정수준 감축)
문체부	전통종교 문화유산보존	280	322	종료예정된 사업을 예정대로 종료함으로써 해당 내역사업 축소와 사업비 감축 필요(일정수준 감축)
농식품부	농산물산지 유통시설지원	318	358	‘친환경생산자유통조직육성’(16억원) 및 ‘비상품화농산물자원화센터지원’(30억원)은 2023년~2025년 동안 일정수준 감축 필요
농식품부	전통발효식품육성	119	170	2023년 이후 내내역 사업 중 ‘전통발효 식품육성플랫폼 구축’ 사업(2022년도 예산 450백만원)은 2023년 이후 폐지(일정수준 감축)
해수부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구축	22	95	실집행률 부진, 사업 효과성 미흡, 사업 대상자 협소 등의 사유로 향후 3년간 일정수준 감축 필요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2022)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감축’ 규모가 미흡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의 경우, 집행률 저조에 따라 높은 수준(10% 이상)의 예산 감축을 권고한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2022년 26,067백만원)에 대하여 권고 수준에서 미달하는 5.9%(1,550백만원)를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생활문화진흥’**의 경우, 내역사업 조정, 성과지표 개선, 실집행률 부진 등의 사유로 향후 3년간 높은 수준(10% 이상)의 감축을 권고 받았으나,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비용이 신규 편성(58억원)된 것을 제외하더라도 실제로는 전년 예산의 3% 수준(2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감축' 대상 사업 중 감액 규모 미흡 사업 현황]

(단위: 억원)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예산		연장평가 결과
		2022	2023안	
문체부	생활체육 프로그램지원	1,329	1,391	'스포츠클럽' 내역사업의 경우 3년간 실질행률이 저조하므로 예산 삭감이 불가피(높은 수준의 감축)
문체부	전통생활문화진흥	61	117	실집행률 부진 등의 사유로 내역사업 '전통문화인성교육'(4.1억원), '남북한전통문화교류'(0.3억원) 폐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7억원) 2025년 종료, '풍석학술진흥연구'(6억원), 2025년말까지 단계적 폐지, '전통놀이문화 조성·확산'(10.8억원), '세시풍속 맥잇기'(1.7억원)은 향후 3년간 높은 수준의 감축 필요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2022)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감축 대상인 사업에 대하여 내역사업간 예산 조정을 통해 실제 세부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통한 예산 감축 효과를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2) 평가 주기에 따른 이행 추적 관리 필요**

**3년 단위로 실시되는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특성 상 평가의 지적사항(감축, 사업방식 변경 등)을 3년 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사업의 존속기간(3년)에 맞추어 3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의 조치사항도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감축'이나 '사업방식 변경'의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차년도 예산안에 즉시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조치사항의 이행시기를 특정 하는 경우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sup>6)</sup> 따라서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예산안 연계는 차년도 예산안 심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3차 년도에 걸쳐 그 반영 여부를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감축' 판정을 받은 보조사업의

6) '감축'의 경우 내역사업의 종료 시기에 따라 예산안 감액 시기가 지정되기도 하며, '사업방식의 변경'의 경우에도 사업간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개선을 2차년도 또는 3차년도에 시행하도록 권고하기도 한다.

경우 1차년도 예산안에만 감액을 반영한 후 2차년도 예산안에서는 다시 증액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sup>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에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반드시 보조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관련 조치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sup>8)</sup> 이는 연장평가를 실시한 1차 년도에만 유효하며 각 부처는 2차 년도 보조사업 예산 요구 시부터 전년도 연장평가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특히 '사업방식 변경'의 경우, 예산안 감액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반영 여부의 판단이 곤란하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1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부터 과거 평가결과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평가점수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sup>10)</sup>

기획재정부가 2021년도 및 2022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통해 과거 평가 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감점 조치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도 평가에서 57개, 2022년도 평가에서 49개 사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사업방식 변경'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의 수는 74개로 가장 많았으며, '감축'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의 수는 29개로 나타났다.

'사업방식 변경'의 경우 '감축'과 달리 구체적인 사업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이행에 따른 감점사례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7)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II」(2022. 8)의 '5. 국고보조금 결산분석'(192~209쪽) 참조

8) 기획재정부,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 제23조(예산편성 및 기타 재정운용과의 연계) 참조.

9) 각 부처가 차년도 예산요구시 제출하는 사업설명자료에는 당해연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만을 제시하고 2차년도부터 이를 누락시키고 있다.

10) 2021년도부터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지표에는 총점 100점 중 '과거 평가결과의 이행 여부'를 감점 항목(최대 △3점)으로 운영하면서 예산반영 및 제도개선(사업방식 변경)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2021·2022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과거 평가결과 미이행(감점) 사업 현황]

(단위: 개)

구분	감축	사업방식 변경	기타	합계
2021	18	38	0	57
2022	11	36	2	49
합계	29	74	2	105

주: '기타'는 정상추진, 폐지, 통폐합 판정을 받은 사업 중 구체적인 평가 결과의 미이행 사례를 집계한 것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기획재정부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의 경우, 20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즉시 폐지' 판정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가 2022년 평가에서 미이행에 따른 감점(-2점)을 받았으며, 해당 평가에서 다시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축'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29개 사업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이 9개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통상자원부 5개, 국가보훈처 3개 순으로 나타났다.

[감축 판정 후 미이행 사업 현황]

(단위: 점)

소관부처	사업명	평가년도	감점내역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미술관진흥지원	2021	-1
	예술의관광자원화	2021	-1
	외래관광객유치마케팅활성화지원	2021	-1
	관광활성화기반구축	2022	-1
	동학농민혁명명정신선양	2022	-2
	예술인력육성	2022	-2
	예술창작지원	2022	-2
	전통생활문화진흥	2022	-2
	전통스토리계승및활용	2022	-2
산업통상자원부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2021	-3
	유통물류기반조성	2021	-3
	투자유치기반조성	2021	-2
	해외자원개발조사	2021	-1
	에너지바우처	2021	-1

(단위: 점)

소관부처	사업명	평가년도	감점내역
국가보훈처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지원	2021	-1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	2021	-2
	현충시설건립	2021	-2
환경부	분리배출취약지역배출환경개선사업	2021	-1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2021	-1
보건복지부	의료정보기반구축및융합지원	2021	-2
	사회복지협의회운영	202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전문방송제작지원	2021	-2
	저소득층디지털방송시청지원	2021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2021	-1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의식선진화	2021	-3
	접경권발전지원	2022	-1
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	2022	-2
	방위산업수출지원	2022	-1
대법원	사법서비스향상	2022	-2
해양수산부	수산물자조금지원	2022	-1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이와 같이 매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당해연도만이 아니라 다음번 연장평가 전까지 일관성 있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 심층평가와 예산안 연계

### 가. 현 황

#### (1) 심층평가 개요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동법 시행령 제39조2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운용성과를 점검하는 사후적인 성과평가이다. 심층평가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4조1)에 따라 평가의 목적, 평가 대상사업의 단위에 따라 개별사업 심층평가, 사업군 심층평가, 핵심사업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단, 재정운영과 관련된 절차, 법령 및 규정이 사업(군)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제도개선에 초점을 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심층평가는 학계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층평가단이 계량적, 비계량적 방법을 통하여 사업(군)의 정책효과를 분석한다.

재정사업자율평가가 리뷰방식에 근거한 부처 자체평가에 기초하고 있어 개별사업이나 사업군의 심층적인 평가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를 심층 분석평가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2005년 시험평가를 시작으로 2006년에 심층평가를 도입하였다. 2006년~2009년에는 개별사업에 대한 심층평가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부터 사업군<sup>2)</sup>에 대한 심층평가로 전환되었다.

---

안태훈 예산분석관(matins10@assembly.go.kr, 6788-4747)

#### 1)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4조(심층평가의 유형) 심층평가는 평가의 목적, 평가 대상사업의 단위에 따라 개별사업 심층평가, 사업군 심층평가, 핵심사업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단, 재정운영과 관련된 절차, 법령 및 규정이 사업(군)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제도개선에 초점을 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별사업 심층평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
2. 사업군 심층평가: 사업의 소관부처 및 회계구분, 단위사업·세부사업 등을 불문하고, 정책목적 등 성격이 유사한 다수의 사업들을 하나의 사업군으로 묶어 사업군 및 개별사업의 효과성·효율성,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합, 부처간 역할분담, 중기 재원배분 등 재정운용과 관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

#### 2) \*사업군 심층평가: 정책목적·대상 등이 유사한 다수의 사업을 사업군으로 묶어 정책적 타당성을 포함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재정운용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 도출

## (2) 2022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현황

2022년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어촌뉴딜300’ 등 6개 사업군에 대하여 시행되었으며, 심층평가를 위해 8.18억원이 소요되었다. 평가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이며, 한국정책학회, 경상대, 건국대, KAIST, 국토연구원이 심층평가를 수행하였다.

[2022년 심층평가 대상 사업군]

사업명(수행기관명)	관련부처	진행현황
어촌뉴딜300(한국정책학회)	해수부	완료 (‘21.11. ~’22.4.)
창업지원 사업군(경상대)	중기부 등	
직접일자리 사업군(건국대)	고용부, 복지부 등	
국가연구시설장비지원 사업군(KAIST)	산업부	
ICT기금 사업군(건국대)	과기부 등	
군 간부 주거지원 사업군(국토연)	국방부	

자료: 기획재정부

### 나. 분석의견: 심층평가 결과의 예산연계방안 마련 필요

기획재정부는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별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층평가에서도 평가등급을 책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85조의23)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성과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성과평가는 성과를 측정하고 성과에 따른 재정운용을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2022년에 완료된 6건의 심층평가 수행 목적을 살펴보면, 사업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성과와 연계한 재정운용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 3) 「국가재정법」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2021년 대상사업별 심층평가 목적]

구분	심층평가 목적
어촌뉴딜300	성과창출을 위한 사업계획서 개선 유도 재정지출 항목 및 사업추진체계 개선 유도 지속적 성과창출을 위한 사후 성과관리 방안 제시
창업지원 사업군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
직접일자리 사업군	사업 효과성을 점검하여 지출효율화 방안을 검토
국가연구시설장비지원 사업군	국가의 연구시설·장비 지원사업군의 성과분석 실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중장기 재정투자방향 등 정책제언 제시
ICT기금 사업군	저성과 사업 점검과 타 사업과의 유사성 높은 사업 검토를 통한 사업 구조 재설계 및 기금의 발전적 개선을 모색하고 기존 재정사업 평가 등 지적된 문제점 점검과 사업 구조 개선 및 성과 향상 방안 마련
군 간부 주거지원 사업군	지역별 배치 인력 규모, 군 주거 수요조사 등을 통해 소요 예산을 산정 적정 군 주거시설 건립 소요 산정 여부를 검증

자료: 각 사업의 심층평가 보고서

**창업지원·직접일자리·국가연구시설장비지원·ICT기금 사업군**은 사업군 별로 아래 [표]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심층평가보고서에서 각 사업군별로 제기한 문제점들은 사업군의 성과보다 사업구조와 관련된 문제점들이다.

따라서 심층평가 결과는 예산과 연계되기보다는 제도개선과 연관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심층평가 결과가 2023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심층평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수행되는 것이므로, 심층평가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제기한 2021년 대상사업별 문제점]

구분	심층평가 목적
창업지원 사업군	중기부 이외 다수 부처가 스타트업 육성에 참여함에 따라, 창업지원사업의 복잡성으로 인한 운영의 비효율성과 효과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
직접일자리 사업군	2012년 OECD 평균은 4.3%의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은 36.2%를 차지 (OECD, 2021). 2018년 한국의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 비중이 20%로 감소하긴 하였지만, 동기간 OECD 평균은 4.5%에 머물러 있는 등 국제비교 측면에서도 예산의 조정 및 균형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
국가연구시설장비지원 사업군	과기부의 과학분야 기반시설과 산업부의 산업기반시설 구축은 그 목적에는 차이가 있으나 시설의 구성 및 운영 형태가 유사하여, 연구시설장비의 무분별한 또는 편중된 구축, 활용도 저하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
ICT기금 사업군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성격이 유사한 양대 기금 간의 통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금 통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 개편 및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의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군 간부 주거지원 사업군	군 간부 주거지원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 군인복지기금 등 재정 투입이 연 1조 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현실에서 해당 사업의 적정 소요 산정과 평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

자료: 각 사업의 심층평가 보고서

### 3. 핵심사업평가와 예산안 연계

#### 가. 현황

##### (1) 핵심사업평가 개요

핵심사업평가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4조제3호1)에 따른 심층평가의 일환이며, 재정당국-사업부처 간 협업 통해 일자리·혁신성장 관련 주요사업의 성과관리가 필요하여 2018년에 도입되었다.

심층평가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4조2)에 따라 평가의 목적, 평가 대상사업의 단위에 따라 개별사업 심층평가, 사업군 심층평가, 핵심사업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담당부서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sup>3)</sup>이다.

핵심사업평가 결과는 관련규정·지침 개정 및 집행절차 등 제도 개선안 마련에 활용하고, 양적 지출구조조정을 포함하여 사업구조 개편 등 질적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된다.

##### (2) 2022년 핵심사업평가 현황

기획재정부는 2022년 9월 23일에 「22년 핵심사업평가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

---

안테훈 예산분석관(matins10@assembly.go.kr, 6788-4747)

###### 1)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4조(심층평가의 유형) 심층평가는 평가의 목적, 평가 대상사업의 단위에 따라 개별사업 심층평가, 사업군 심층평가, 핵심사업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단, 재정운영과 관련된 절차, 법령 및 규정이 사업(군)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제도개선에 초점을 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핵심사업평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중기 시계 하에 집행현황 점검·집행 애로사항 해소 등 주기적인 과정관리 및 사업성과·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제도보완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

###### 2)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4조(심층평가의 유형) 심층평가는 평가의 목적, 평가 대상사업의 단위에 따라 개별사업 심층평가, 사업군 심층평가, 핵심사업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단, 재정운영과 관련된 절차, 법령 및 규정이 사업(군)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제도개선에 초점을 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별사업 심층평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

2. 사업군 심층평가: 사업의 소관부처 및 회계구분, 단위사업·세부사업 등을 불문하고, 정책목적 등 성격이 유사한 다수의 사업들을 하나의 사업군으로 묶어 사업군 및 개별사업의 효과성·효율성,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합, 부처간 역할분담, 중기 재원배분 등 재정운용과 관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

###### 3) 심층평가 담당부서는 재정혁신국 지출혁신과이다.

고, 아래 [표]와 같이 2022년 핵심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관련 사업들의 예산안이 전년 대비 15.63억원 감액되었다고 밝혔다. 2022년 핵심사업평가는 탄소중립 이행, 디지털 전환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지원 중인 재정사업(군) 10개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2023년 예산안 반영현황 및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2년 핵심사업평가 대상 2023년 예산안 현황]

탄소중립 이행	디지털 전환	인구변화 대응
전기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2) 1.9 →(‘23) 2.4조원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22) 3,248 → (‘23) 4,163억원	지역사회통합 돌봄선도 (‘22) 159 →(‘23)
수소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2) 8,928 →(‘23) 8,383억원	SW융합인력양성 (‘22) 1,983 → (‘23) 2,053억원	도시재생 (‘22) 1.6 →(‘23) 1.5조원
탄소중립도시숲 조성 (‘22) 2,688 → (‘23) 2,066억원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22) 5,797 → (‘23) 2,805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 2,245 → (‘23) 1,911억원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22) 1,267억원 → (‘23)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핵심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안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2022 (A)	2023		주요증감
		정부안 (B)	전년대비 (B-A)	
합계	61,821	60,258	△1,563	
투자규모 재검토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과기부)	5,797	2,805	△2,992	◦ '23년 구축물량 축소 (310→150종)
도시재생(국토부)	16,154	14,669	△1,485	◦ 신규투자 축소 (100→30곳)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산업부)	1,267	-	△1,267	◦ '23년 예산 미반영 (부처 미요구)
유사중복 해소				
디지털실무인력양성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부)	3,248	4,163	915	◦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22.8월,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22~'26년 100만명 인 재양성 → 인력양성 투자 확대
SW 융합인력양성 (과기부)	1,983	2,053	70	
지원방식 개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환경부)	19,352	24,208	4,856	◦ 구매보조금(차량당 지원금액) 단가 축소(승용차 6→5백만원) ◦ (초)급속 충전기 확대 (1,200 →2,100기)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환경부)	8,928	8,383	△545	◦ 상용차 보조금 지원대수 확대 (350→920대) ◦ 상용차용 충전기 확대 (26→32기)
기타				
탄소중립도시숲 조성(산림청)	2,688	2,066	△622	◦ 도시바람길숲 균특으로 이관 (527억원) '23년 사업재구조화 등 용역 추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복지부)	159	-	△159	◦ '23년 예산 미반영('23년 폐 지 →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 계 구축 사업신설)
공공건축물그린 리모델링 사업(국토부)	2,245	1,911	△334	◦ 사업대상 축소 (800→715개)

자료: 기획재정부

## 나. 분석의견

### (1)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 필요

**핵심사업평가는 성과관리를 위해 시행되는 평가이므로, 주무부처의 정책방향보다는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핵심사업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8<sup>4)</sup>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평가’이며,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sup>5)</sup>에 근거한 심층평가이다. 심층평가 대상 사업 선정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에 규정하고 있으며, 핵심사업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sup>6)</sup>에 근거하여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2021년 핵심사업평가 종합보고서를 살펴보면, 평가대상 사업의 선정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 내용보다는 아래 [표]와 같이 해당 사업의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 위주로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

- 
-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5)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2(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 6) 「국가재정법」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

[2021년 핵심사업평가의 정책 관련 주요 평가 결과]

구분	정책 관련 주요 평가 결과
범정부 클라우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클라우드센터 구축 및 전환 정책을 폐기</li> <li>민간클라우드센터로 단계적 클라우드 전환 대상 결정 및 전환이 타당</li> </ul>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TS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존 사업방식에 따라 지점 교통정보 수집 및 활용 방향을 유지</li> <li>ITS 사업과 C-ITS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li> </ul>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분한 성과를 달성한 지자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원졸업제 도입</li> <li>지원대상을 위기산업으로 한정하고, 위기 우려지역의 고용유지, 실직자 지원, 인적 경쟁력 강화 등 고용정책적 지원에 집중</li> </ul>
고졸취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교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li> <li>세부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각 세부사업을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li> </ul>
산업단지 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및 노후거점산업단지 지정 최소기준을 준공 후 20년으로 변경</li> <li>지역자원의 하나로 농공단지 재정비 후 활성화하는 방안 등 검토 필요</li> </ul>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제조혁신의 장기비전 및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재정투입이 가장 필요한 전략적 영역을 식별</li> <li>전문가들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역량 강화와 생태계 및 시장 메커니즘 강화를 장기적인 방향으로 제시</li> </ul>
규제자유특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 우수 특구에 대해서는 재정지원(2년) 종료이후에도 과제수행에 필요한 소요를 맞춤형 추가 지원</li> <li>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을 통해 추가지원 규모, 내용, 기간 등 신설</li> </ul>
위기극복 정책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지원은 경제상황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점진적으로 축소</li> <li>경제가 회복단계에 접어들면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li> </ul>
지자체 자본보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기간 동안 균등 예산 배분을 지양하고, 사업집행을 위한 연도별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 편성</li> <li>연차별 지자체 집행가능액을 반영하여 차등배분</li> </ul>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점검·관리체계 마련</li> <li>지역소재 기업 참여 비중 확대 및 수도권기업 이전 촉진을</li> <li>통한 지역 파급효과 극대화 필요</li> </ul>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2021년 핵심사업평가 종합보고서」, 2021.12.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획재정부는 예산당국으로 예산편성을 위해 주무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과관리를 위해 수행하는 핵심사업평가를 통해 주무부처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재정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면,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핵심사업평가 보고서 발간시기 조정 필요

**핵심사업평가 종합보고서는 매년 12월에 발간되고 있는데,<sup>7)</sup> 기획재정부는 핵심사업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10월 이전에 발간할 필요가 있다.**

핵심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별 감액 규모를 살펴보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과기부)’ 29.92억원, ‘도시재생(국토부)’ 14.85억원, ‘가정용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산업부)’ 12.67억원, ‘탄소중립도시숲 조성(산림청)’ 6.22억원 순이다. 반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환경부), 디지털실무인력양성(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부) 및 SW융합인력양성(과기부) 예산안은 전년대비 각각 48.56억원, 9.15억원, 0.7억원이 증액되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핵심사업평가 종합보고서를 예산이 확정되는 매년 12월에 발간함에 따라, 핵심사업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부)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및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은 2023년 예산안 세부사업명으로 ‘무공해차보급사업’, ‘무공해차인프라보급사업’이다.<sup>8)</sup> 핵심사업평가 결과는 전기자동차(승용차)의 구매보조금 단가를 기존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그러나 핵심사업평가에서 제시하는 인하 적정성에 대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시장 안정화에 따라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축소하는 추세라고

7) 기획재정부는 2022년 9월 23일에 「'22년 핵심사업평가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만 요약하여 발표하였다.

8) 기존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1633-301)”과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1633-306)”에서 전기차수소차 보급 성격의 내역사업을 분리하여 “무공해차 보급사업(1633-311)” 신설

밝히고 있다. 예산편성 기준으로 전기자동차(승용차) 국고보조금은 2021년 700만원에서 2022년 6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2022년 국고보조금은 인하된 사유는 아래 [표]와 같이 전기차 보급대수가 2020년 46,713대에서 2021년 100,427대로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2년 전기차 보급대수가 2021년 대비 크게 증가한다면, 국고보조금 인하가 필요할 것이다.

[ '19~'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단위: 대, %)

성과지표	구분	2019	2020	2021	2022
전기차 보급대수	목표	33,000	39,570	60,000	70,000
	실적	35,080	46,713	100,427	-
	달성도	106.3	118.1	167.4	-

주: 2023년 성과지표는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초미세먼지(PM2.5) 추가 저감량(톤)로 변경  
자료: 환경부

그러나 핵심사업평가 보고서가 12월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므로, 2023년 국고보조금을 2022년 대비 인하한 사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 사업의 성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정된 예산 하에서 지원대수를 늘리기 위해 단가를 인하한 것이라면, 동 사업에 대한 핵심사업평가 수행의 적정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핵심사업평가 보고서 공개를 통해 이에 대한 타당성 근거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과기부)SW융합인력양성 및 (고용부)디지털실무인력양성**은 유사중복사업으로 핵심사업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SW 융합인력양성은 단위사업으로 세부사업 'ICT이노베이션 스쿼어 조성',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이노베이션아카데미'으로 구성되었다.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A)	2023안 (B)	증 감	
			B-A	%
2232 SW융합인력양성	198,286	166,637	△31,649	△16.0
ICT이노베이션 스퀘어조성 (2232-310)	38,708	38,708	0	0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2232-320)	120,002	132,189	12,187	10.2
이노베이션아카데미 (2232-420)	39,576	34,448	△5,128	△13.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실무인력양성은 고용노동부의 세부사업 '내일배움카드(일반)(1131-300)'의 내역사업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이다.

[기능별 예산안 내역(내일배움카드(일반))]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A)	2023안 (B)	증 감	
			B-A	%
내일배움카드(일반) (1131-300)	426,294	527,815	101,521	23.8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324,822	416,260	91,438	28.2

자료: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는 핵심사업평가를 통해 사업별로 양성 인력의 수준을 차등화하여 유사중복을 해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들의 유사중복이 어떠한지, 양성 인력 수준의 차등화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3개 세부사업들이 유사중복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사업간의 유사중복이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

동 사업들의 2023년 예산안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2022.8)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유사중복 해소 결과를 확인하여 예산안 증액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사업평가 보고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 4. 기금 평가와 예산안 연계

### 가. 현황

「국가재정법」 제82조<sup>1)</sup>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2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고,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기금운용평가와 기금존치평가로 구성된 기금 평가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 (1) 기금운용평가(사업운영부문) 현황

기금운용평가(사업운영부문)<sup>2)</sup>란 근거 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사업제도 개선 및 예산편성에 환류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평가방식은 평가지표를 사업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한 후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는데, 사업 수 기준<sup>3)</sup>에 따라 상대평가(우수, 보통, 미흡 등 3등급)를 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결과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 및 성과관리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예산 요구시 지출구조조정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요구하고, 이와 별도로 성과관리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미흡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

---

임길환 예산분석관(ghlim@assembly.go.kr, 6788-3734)

#### 1)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평가와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금운용평가의 경우 ①사업운영부문과 ②자산운용부문으로 나뉘어 수행되고 있다.

3) 대상 사업수가 10개 이상이면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이며, 대상사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 별도평가 기준(앞서 기술한 재정사업자율평가 지침과 동일)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 ①사업운영부문」(2022. 5)을 통해 2021회계연도 총 54개 기금, 289개 사업(98.5조원)에 대하여 기금운용평가 사업운영부문을 평가하였다.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사업운영부문) 대상기금: 54개]

기금명
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군인복지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기술보증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무역보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보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학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수산발전기금, 신용보증기금, 언론진흥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영화발전기금, 원자력기금, 응급의료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축산발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자료: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 ①사업운영부문」(2022. 5)

평가 결과, 44개 사업(15.2%)이 '우수', 189개 사업(65.4%)이 '보통', 56개 사업(20.2%)이 '미흡'으로 평가받았다.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사업운영부문) 평가 결과]

(단위: 개, %)

구분	계	우수	보통	미흡
사업 수	289	44	189	56
(비율)	(100.0)	(15.2)	(65.4)	(19.4)

자료: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 ①사업운영부문」(2022. 5)

미흡 판정을 받은 총 56개 사업 중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은 45개이며, 성과관리 개선 대상 사업은 11개로 나타났다.

## (2) 기금존치평가 현황

기금존치평가란 근거 법에 따라 매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목적 및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수행하는 사업 및 재원구조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기금 제도개선 및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여 재정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기금의 존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15조4)에 따라 해당기금은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2년에는 총 67개 기금 중 18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존치평가를 실시하였다.

[2021회계연도 기금존치평가 대상기금: 18개]

기금명
공무원연금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산발전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군인연금기금, 기술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자동차사고피해자지원기금, 주택도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자료: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기금존치평가보고서」(2022. 5)

기금존치평가에서는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등 3개 지표에 대하여 평가하게 되며,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 4개 기금은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실익이 없는 기금으로 분류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개별사업의 적정성 평가 결과 11개 기금의 31개 사업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재원구조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10개 기금의 부적정성이 지적되었다. 실질적

#### 4) 「국가재정법」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폐지)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1. 설치목적은 달성한 경우
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으로 두 지표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기금준치의 타당성 평가 결과 1개 기금 폐지, 1개 기금 조건부 존치, 2개 기금은 통합권고를 받았다.

개별사업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수행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9개 기금의 25개 사업에 대해 개선 권고를 내렸고,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거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3개 사업은 폐지 권고를 받았으며, 사업의 중복유사성이 지적된 5개 사업의 이관 및 통합을 권고하였다.

[2021회계연도 기금준치평가(개별사업의 적정성 평가) 결과]

기금명	사업명	평가결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용자)	개선
	소상공인창업지원	개선
	소상공인성장지원	개선
	소상공인지원인프라	개선
	시장경영혁신지원	개선
수산발전기금	해양폐기물 정화	개선
	비축사업	개선
	피해보전직불금	개선
	자유무역협정이행	개선
	우수수산물지원	개선
	수산물유통정보조사	개선
	수산물자조금지원	개선
	수산장비구입지원	개선
	해양생태계서식처기능개선복원	개선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개선
	광복회관	개선
신용보증기금	경영지도	개선
양성평등기금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개선
	가정폭력·성폭력재발방지	개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	개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개선
주택도시기금	행복주택	개선
	위협건축물이주자금지원	개선
	주택성능보강	폐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지원	개선 및 이관

기금명	사업명	평가결과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	개선 및 이관(일반회계)
	아동·청소년 성범죄예방교육 및 피해자치료재활	이관(타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저축장려금지급	폐지(일몰)
수산발전기금	노후소형유조선현대화	폐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구축	이관

자료: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기금준치평가보고서」(2022. 5)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 (1) 기금 평가와 타 재정성과평가 간 체계정합성 확보 필요

기금운용평가(사업운영부문)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체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재정사업자율평가로 대체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 중복 문제는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평가 간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재정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목적에 따라 평가대상 및 평가주체가 다르게 된다. 기금에 관한 평가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재정법」 제82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금운용평가의 경우 전체 기금의 3분의 1 이상 기금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체가 되어 수행되어야 하고, 기금준치평가의 경우 전체 기금이 3년에 한번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체 기금의 3분의 1 이상 기금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체가 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제1항<sup>5)</sup>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2<sup>6)</sup>에 근거하고 있으며,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경우 전체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가 주체가 되어 수행되어야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sup>7)</sup>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연장평가에서 수행되고 있다. 의무지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등의 일부 사업<sup>8)</sup>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여야 한다.

- 
- 5)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6)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2(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4. 그 밖에 존속기간의 설정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정부의 성과평가 체계]

구분	평가유형	평가대상	평가주체	법적근거
기금	기금운용평가	전체 기금의 3분의1 이상 기금	기획재정부장관 (기금운용평가단)	「국가재정법」 제82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2
	기금존치평가	전체 기금의 3분의1 이상 기금 (3년에 한번 평가)		
재정 사업	재정사업 자율평가	전체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각 중앙관서의 장, 기금관리주체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2
	재정사업 심층평가	① 개별사업심층평가: 예산 및 기 금운용계획의 단위사업 ② 사업군 심층평가: 사업군 ③ 핵심사업평가: 일자리 등 5개 분야 82개 단위사업	기획재정부장관	
보조 사업	보조사업 연장평가	존속기간(3년 이내)이 만료되는 보 조사업	기획재정부장관 (보조사업평가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중 기금운용평가 사업운영부문의 경우 기획재정부·기금운영평가단이 평가주체가 되어 별도의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가 평가한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결과로 대체하고 있다. 즉,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중 평가 대상 기금(전체 기금의 3분의 1)의 사업에 대한 결과를 기금운용평가 결과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이는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① 재정사업자율평가 근거법 상 평가주체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로 대체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② 재정사업자율평가와 별개의 기금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여러 주체가 서로 다른 평가결과를 보이게 되어 ‘평가중복에 따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③ 기금존치평가에서도 기금사업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별개의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금운용평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사업자율평가로 대체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우려하는 평가의 중복 문제는 기금 평가의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평가 간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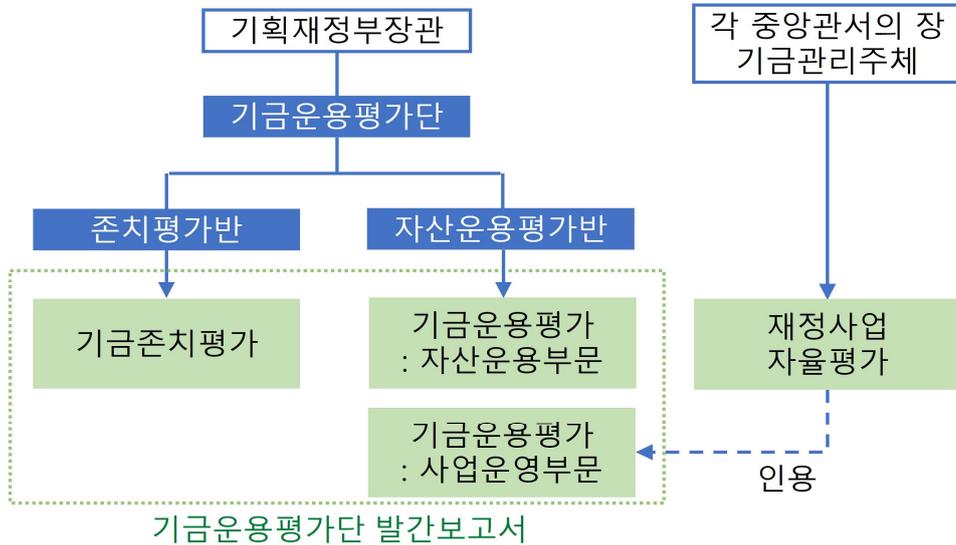
첫째, 평가주체와 관련하여 기금운용평가는 근거법 상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의 주체가 되며, 재정사업자율평가는 근거법 상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가 평가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두 평가의 수행주체는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자율평가 근거법 상 평가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로 대체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거법 상 기획재정부장관의 역할은 평가지침에 따라 사업을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sup>10)</sup>

둘째, 평가의 중복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별개의 기금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기금존치평가의 개별사업 적정성 평가와 평가가 중복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정사업자율평가와의 중복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수행하는 보조사업연장평가와 재정사업자율평가 또한 평가대상 측면에서 보조사업 부문이 일부 중복된다는 점에서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와 재정사업자율평가 간의 중복성도 문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두 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기금운용평가와 재정사업자율평가 간의 중복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금존치평가와의 중복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기금존치평가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8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해야하는 것은 ① 기금사업의 성과, ②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③ 기금의 존치여부로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82조 제2항은 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의한 평가보고서 체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금운용평가단은 매년 자산운용평가반과 존치평가반 등으로 나뉘어 각각 기금운용평가 자산운용부문과 기금존치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에서 평가하도록 규정한 ②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평가와 ③ 기금의 존치여부 평가는 동 평가단에서 수행되고 있는 반면, ① 기금사업의 성과 평가의 경우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로 대체하고 있다.

현행 기금 평가 체계에서는 각 연도 기금운용평가 사업운영부문 자산운용부문,

기금존치평가 간 평가대상 기금도 서로 상이하게 결정되는데, 이러한 경우 기금운용평가 각 부문의 결과가 기금존치평가에 환류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를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11)

기금평가 관련 근거법의 취지는 ① 기금사업의 성과, ②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③ 기금의 존치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으로 보이며, 반드시 「기금운용평가보고서: ①사업운영부문」, 「기금운용평가보고서: ②자산운용부문」, 「기금존치평가보고서」를 별개로 발간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평가와 기금존치평가를 통합하여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금존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환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하면, 기금운용평가와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근거법에서 정한 평가의 주체가상이 하다는 점,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의 경우에는 재정사업자율평가와 독립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 기금존치평가와의 중복성에 대한 우려는 기금평가 간의 통합을 통해 체계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평가를 직접 수행하여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고려하기 어려운 국가 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평가를 수행하는 한편, 기금평가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연례적 ‘미흡’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기금운용(사업운영부문) 평가 결과 3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는 등 평가 조치에 따른 개선 효과가 미미한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 사업에 대한 면밀한 환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금운용평가(사업운영부문) 결과 11개 사업은 2019회계연도부터 2021회계연도까지 3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미흡’ 평가 사업 현황]

기금명	사업명	2019	2020	2021
고용보험기금	고용장려금(용자)	지출구조조정	지출구조조정	지출구조조정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지출구조조정	성과관리개선	지출구조조정
	자영업자실업급여	성과관리개선	성과관리개선	성과관리개선
공공자금관리기금	장애인자립자금용자	지출구조조정	지출구조조정	지출구조조정
	민간보육시설지원	성과관리개선	지출구조조정	지출구조조정
군인복지기금	전세자금용자	성과관리개선	성과관리개선	지출구조조정
남북협력기금	이산가족교류지원	성과관리개선	지출구조조정	지출구조조정
대외경제협력기금	경험증진자금지원	성과관리개선	지출구조조정	지출구조조정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활동지원	성과관리개선	성과관리개선	지출구조조정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직접피해지원(FTA기금)	성과관리개선	지출구조조정 성과관리개선	지출구조조정
주책도시기금	도시기능증진지원	지출구조조정	지출구조조정	지출구조조정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0-2021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사업운영부문)」(각년도)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용보험기금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법령상 의무지출 사업으로 수급자 수 증가를 고려하여 매년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반면, 사업 운영 상의 제도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해마다 성과관리개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9년까지는 고용보험 가입 저조에 따른 연례적 집행 부진이 주로 지적되어 왔으나 다양한 보장성 강화방안을 통해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한 반면, 2020년 이후에는 자영업자 임의가입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12월)을 발표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임의가입 방식에 따른 저조한 가입률 및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장애인자립자금용자’**의 경우,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융자하여 생업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연례적인 실집행률 부진에 따라 해마다 ‘미흡’ 등급을 받아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해 왔으나, 크게 사업 성과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자립자금 용자 사업의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수정계획액	3,814	3,432	1,400
실집행액	1,060	839	479
실집행률	27.8	24.4	34.2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0-202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사업운영부문)」(각년도) 및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설명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차보전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2021.4월)하고, 수행기관 참여유도를 위해 무보증대출 손실보전율을 상향 조정

(2021. 1)하는 등의 개선 노력을 추진하였으나, 뚜렷한 개선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 (3) 자금운용평가 결과의 예산안 연계 미흡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의 지출구조조정 반영액이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평가의 실효성이 의심되거나, 수요 감소가 예정된 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계획이 수립되는 등 평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경우, 2021회계연도 평가에서 4개 사업이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기업인력애로센터 운영’, ‘온라인수출지원(정보화)’, ‘중소기업정보제공’, ‘해외산업협력지원’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4개 사업은 모두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되어 2023년도 예산안에 감액 반영되었으나, ‘온라인수출지원(정보화)’ 사업(6.4% 증)을 제외하고는 감액 규모가 1% 수준으로 지출구조조정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 ‘미흡’ 사업의 예산안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계획	2023 계획안	증감액	증감률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9,003	8,916	△87	△1.0
온라인수출지원(정보화)	3,684	3,449	△235	△6.4
중소기업정보제공사업	1,967	1,948	△19	△1.0
해외산업협력지원	1,864	1,845	△19	△1.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큰 ‘기업인력애로센터 운영’(2022년 9,003백만원) 사업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만 3억원 감액하고 그 밖에 내역은 증액 또는 전년 동으로 편성하여 8,700만원을 감액하는데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정보제공사업’의 경우, 지출구조조정 사유로 타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역할 분담, 성과지표 개선 등 전반적인 사업성과의 제고를 주문하고 있는 반면, 지출구조조정 계획에는 예산의 1% 삭감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산업협력지원’의 경우에도, 2021년 결산 국회 지적사항으로 감점을 받았으

며, 이에 대한 환류조치가 소극적이라는 평가에 따라 제도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예산 18억 6,400만원 중 1,900만원을 감액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체 예산의 1%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 과연 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를 통한 제도 개선의 실익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반면에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지원’의 경우,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아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2년 예산액 대비 16.5%에 해당하는 1조 1,358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주택지원’과 같이 ‘미흡’ 등급을 받은 유사 사업인 ‘통합공공임대주택(용자)’의 경우, 성과관리개선 대상으로 분류되어 2022년도 계획액 보다 23.4%(2,244억 2,300만원) 증액된 1조 1,900억 3,800만원이 2023년도 계획안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지원'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용자)' 사업의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명	2022년 계획	2023년 계획안	증감액	증감률
임대주택 지원	6,879,404	5,743,572	△1,135,832	△16.5
통합공공임대주택(용자)	965,615	1,190,038	224,423	23.4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양 사업 모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하여 ‘미흡’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한 사업은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어 16.5% 예산을 감액한 반면, 다른 사업은 성과관리 개선으로 분류하고 예산을 23.4% 증액한 것이다.

예산을 증액한 ‘통합공공임대주택(용자)’의 경우 2021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32.7%로 ‘임대주택지원’(84.5%)보다 훨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지출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성과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소관부처가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 개선 계획을 편의적으로 분류하고 예산안의 증감액을 임의로 편성하는 경우 동 평가 제도 운영의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예산을 대폭 감액한 '임대주택지원'의 경우 세부사업별 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다가구매입임대출자', '국민임대출자', '영구임대출자', '행복주택출자' 등의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수요물량 증가 또는 국정과제 채택에 따라 증액이 불가피한 예산은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시기금 '임대주택지원' 사업의 세부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22 계획	2023 계획안	증감액	증감률
임대주택 지원	다가구매입임대출자	3,346,700	2,839,300	△507,400	△15.1
	전세매입임대경상보조출자	117,215	123,700	6,485	5.5
	국민임대출자	340,161	219,221	△120,940	△35.6
	영구임대출자	306,426	179,683	△126,743	△41.4
	행복주택출자	1,095,258	684,607	△410,651	△37.5
	임대주택리츠출자	335,610	422,110	86,500	25.8
	통합공공임대출자	857,477	1,070,374	212,897	24.8
	노후공공임대주택그린리모델링	480,557	204,577	△275,980	△57.4
	합계	6,879,404	5,743,572	△1,135,832	△16.5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다가구매입임대출자'의 경우, 기존 정부대책<sup>9)</sup>에 따른 공급물량 및 지원 단가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15.1%를 감액한 것이며, '국민임대출자', '영구임대출자' 및 '행복주택출자'의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각각 35.6%, 41.4% 및 37.5%를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임대주택리츠출자' 및 '통합공공임대출자'의 경우 공공지원출자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각각 25.8% 및 24.8% 증액 편성되었다.

9) 주거복지로드맵2.0(2020. 3), 전세대책(2020.11), 주택공급 대책(2021.2),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2022.8)

이와 같이 ‘임대주택지원’ 사업의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은 평가 결과(‘미흡’ 등급)를 반영한 지출구조조정이라기 보다는 소관부처의 자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의 경우, 집행부진 및 성과 부족에 따라 ‘미흡’ 등급을 받았다. 동 사업은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되어 2022년 계획액 10%(34억 3,500만원)를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실제 2023년도 계획안에는 53.5%(184억 1,3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sup>10)</sup>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사업의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22 계획	2023 계획안	증감액	증감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	34,354	52,767	18,413	53.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이와 같이 평가 결과와 차년도 예산 환류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거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식적인 사례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평가의 실효성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금운용평가의 사업운영부문에 대한 평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재정사업 자율평가로 대체하고 있으며,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소관부처가 평가대상 사업 총예산의 1% 이상을 지출구조조정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관부처는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소관 사업의 재원을 배분하고 있을 뿐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를 예산에 환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평가(사업운영부문) 및 이를 대체하고 있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0)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동 사업의 경우 당초 2023년도 부처안에는 10% 감액 반영하였으나, 월성 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사업의 인허가 취득이 확정되어 본공사에 착수하게 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증액 반영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동 사업이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으로 건설 인허가 취득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4) 기금준치평가 결과의 후속조치 이행 미흡**

기금준치평가(개별사업 적정성) 결과 사업이관통합 등을 권고 받았으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평가 후속조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금준치평가(개별사업의 적정성) 결과 일반회계로의 사업이관을 권고 받은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 수련시설운영지원’** 및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구축’**의 경우 2023년도 계획안에도 여전히 기금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위생점검을 수행하여 시설에 대한 규제 및 행정업무에 수반되는 지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권고 받았다.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구축’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통합 이관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권고 받았다.

기금준치평가(개별사업의 적정성) 결과 타 기금사업으로의 이관을 권고 받은 **청소년육성기금 ‘아동·청소년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및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지원’**의 경우 2023년도 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자립 지원이라는 면에서 양성평등기금 ‘성매매 피해자 지원’과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므로 해당 부분의 이관을 권고 받았다. ‘지역신문발전지원’은 언론진흥기금 사업과 목표, 대상, 정책 수단 등 유사중복성이 높으므로 해당 기금사업으로 이관을 권고 받았다.

[사업이관 미이행 사업 현황]

구분	기금명	사업명	평가결과
일반회계로 이관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사업 및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사업은 해당 시설에 대한 규제 및 행정업무에 수반되는 지출로, 기금사업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함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구축	사법분야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의 일환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위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에 이관

구분	기금명	사업명	평가결과
타 기금 사업으로 이관	청소년 육성 기금	아동·청소년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성매매 피해아동·통합지원 사업은 청소년육성기금보다 양성평등기금에 가깝다고 판단되며, 수혜대상이 양성평등기금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등 유사성이 존재하므로 이관
	지역신문 발전 기금	지역신문 발전지원	언론진흥기금 사업과의 중복·유사성과 관련된 문제(정책대상, 정책목표, 정책수단 등)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기금측이 제시하는 해소계획의 구체성이 높지 않아 언론진흥기금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기금준치평가보고서」(2022. 5)를 바탕으로 재작성

**수산발전기금 ‘노후소형유조선현대화’**의 경우, 사업효과가 충분하지 않고 예산 집행행률이 저조하여 2024년말 종료예정인 사업의 조기 폐지를 권고하였으나 2023년 계획안에 2022년 계획액 대비 50%를 감액한 11억 2,500만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폐지 미반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금	세부사업명	2022 계획	2023 계획안	증감액	증감률
수산발전기금	노후소형유조선현대화	2,250	1,125	△1,125	△50.0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수산발전기금 ‘비축사업’ 및 ‘우수수산물지원’**의 경우, 기금준치평가(개별사업의 적정성) 결과 사업 축소(감액)에 해당하는 개선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2023년도 계획안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축사업’의 경우, 성과 결과가 2020년 목표(비축 물량)와 2021년 목표(6개 대 중성어종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를 달성하지 못하여 사업축소를 요구하였으나 2022년 대비 130.5%(990억 9천만원) 증액 편성되었다. ‘우수수산물지원’은 최근 3개년 성과 결과(지원업체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액)가 당초 설정된 목표치에서 지속적으로 미흡하고, 실적이 하향추세를 유지하여 사업 축소를 요구받았으나 2022년과 동일한 1,324억 1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개선(사업 축소) 미반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금	세부사업명	2022년 계획	2023년 계획안	증감액	증감률
수산발전기금	비축사업	75,910	175,000	99,090	130.5
	우수수산물지원	132,401	132,401	0	0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이와 같이 기금준치평가(개별사업 적정성) 결과 사업이관, 폐지 또는 축소를 요구받은 사업 중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업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므로, 평가 결과의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5. 복권기금사업평가와 예산안 연계

### 가. 현황

#### (1) 복권기금사업평가 개요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제3항<sup>1)</sup>에 근거하여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평가방법은 계량평가지표와 비계량평가지표에 대해 구분되는데, 계량평가지표(2-1, 3-1)는 달성률을 득점으로 인정한다. 비계량지표는 평가내용(측정기준)별로 할당된 가중치에 따라 제시된 측정기준의 충족도를 기준으로 7등급<sup>2)</sup>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등급은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사업별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평가결과는 복권기금운영계획 수립시 반영되며, 법정배분사업에 대해서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를 법정배분비율 가감조정시 90%<sup>3)</sup>를 반영한다. 공익사업은 ‘매우 우수’, ‘우수’ 등급 사업은 예산 증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액 조정 또는 복권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안태훈 예산분석관(matins10@assembly.go.kr, 6788-4747)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관리 및 평가) ③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사업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이하 “복권기금사업”이라 한다)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2) 1등급(90%이상), 2등급(80~90%미만), 3등급(70~80%미만), 4등급(60~70%미만), 5등급(50~60% 미만), 6등급(40~50%미만), 7등급(40%미만)

3) 나머지 10%는 자금소요 평가 결과를 반영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항목]

항목	평가지표	배점
계획·준비 (2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5
	1-2.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5
	1-3.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적정성	10
집행·관리 (30)	2-1. 당초 계획에 비추어 사업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였는가?	10
	2-2. 예산을 낭비요인 없이 적기에 효율적, 합리적으로 집행하였는가?	10
	2-3. 사업추진체계 및 모니터링체계는 적절하게 가동되었는가?	10
성과·환류 (50)	3-1. 당초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제대로 달성하였는가?	20
	3-2. 사업평가결과 사업이 효과적이며, 수혜자의 만족도는 향상되었는가?	15
	3-3. 사업평가결과와 외부지적사항등을 정리, 분석하고 환류하였는가?	10
	3-4. 복권기금사업을 통해 복권기금에 대한 긍정적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였는가?	5

자료: 재정성과평가센터 홈페이지

([https://www.kipf.re.kr/cpem/cpem\\_info09.do;jsessionid=2AD7C6E7C32DCE86C7DA4454F449CC50](https://www.kipf.re.kr/cpem/cpem_info09.do;jsessionid=2AD7C6E7C32DCE86C7DA4454F449CC50))

**(2) 2022년 복권기금사업사업평가(‘21회계연도 평가) 결과**

2022년 복권기금사업평가는 2021년 복권기금 지원 101개<sup>4)</sup>(법정 71개, 공익 30개) 사업에 대해 이루어졌다. 평가단위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필요시 단위사업 또는 내역사업으로 평가하였다.

평가등급의 분포는 매우 우수(2.0%), 우수(57.4%)와 보통(33.7%) 등급이 93.1%이며, 미흡 이하 등급은 6.9%이다. 2020년에는 매우 미흡이 3개였으나, 2021년에는 매우 미흡이 1개(1.0%)로 감소하였다. 우수(27.0%p)가 큰 폭으로 증가한 대신, 매우 우수(△3.4%p), 보통(△21.7%p)은 감소하였다.

평가등급 ‘미흡’을 받은 중앙부처 소관 사업은 보훈요양원 건립(국가보훈처-보훈기금) 및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여성가족부-양성평등기금)이다.

4) 과학기술진흥기금(여유자금 운용) 등 평가실익이 없는 1개 사업 제외

[2020~2021 복권기금사업 평가 등급 분포]

(단위: 개, (비중 %))

구분	법정배분사업		공익사업		전체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매우 우수(1등급)	4 (6.6)	1 (1.4)	1 (3.2)	1 (3.3)	5 (5.4)	2 (2.0)
우수(2등급)	18 (29.5)	49 (69.0)	10 (32.3)	9 (30.0)	28 (30.4)	58 (57.4)
보통(3등급)	31 (50.8)	16 (22.5)	20 (64.5)	18 (60.0)	51 (55.4)	34 (33.7)
미흡(4등급)	5 (8.2)	4 (5.6)	-	2 (6.7)	5 (5.4)	6 (5.9)
매우 미흡(5등급 이하)	3 (4.9)	1 (1.4)	-	-	3 (3.3)	1 (1.0)
합계	61 (100.0)	71 (100.0)	31 (100.0)	30 (100.0)	92 (100.0)	101 (100.0)

자료: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단, 「2021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 2022.4, p.8.

[미흡 사업]

구분		사업명
미흡 (6개)	법정 배분 사업	① 아동인성학습원 건립(지방자치단체-충남) ② 의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증축(지방자치단체-경북) ③ 산엔청복지관 분관 건립(지방자치단체-경남) ④ 의료시설 증축 및 개보수 지원(보훈복지의료공단)
	공익 사업	① 보훈요양원 건립(국가보훈처-보훈기금) ②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여성가족부-양성평등기금)
매우 미흡 (1개)	법정 배분 사업	①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지방자치단체-전남)
	공익 사업	해당 없음

자료: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단, 「2021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 2022. 4., p.11.

**나. 분석의견: 형식적 예산 감액 지양 필요**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은 예산을 1% 감액하여 성과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예산감액이 어려운 사업일 경우 형식적인 감액보다 성과개선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22년 복권기금사업평가는 중앙부처 사업 중 (여가부)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및 (보건처)보훈요양원건립을 평가등급 ‘미흡’으로 판정하였다. ‘미흡’,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액 조정 또는 복권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미흡 이하 사업 중 전년대비 감액이 곤란한 경우, 성과개선 계획서를 5월말까지 제출하고, 해당 연도 평가시 이행 점검한다.<sup>5)</sup>

(여가부)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2159-431)은 내역사업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가정폭력 예방홍보’로 구성된다. 동 사업의 2023년 예산안은 복권기금평가 결과에 따라 원칙적 감액 조정 대상이므로, 전년대비 1% 감액되었다.

그러나 전년대비 1% 예산삭감은 평가등급 ‘미흡’에 따른 조치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예산감액이 어려운 사업일 경우, 형식적인 감액보다 성과개선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복권기금사업평가 평가등급 ‘미흡’ 판정 사업]

(단위: 백만원, %)

기관명	세부사업	예산			
		2022(A)	2023안(B)	증감	
				B-A	(B-A)/A
국가보훈처	보훈요양원건립	495	6,839	6,344	1,281.6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1,329	1,316	△13	△1.0

자료: 각 부처

5)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단, 「2021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 2022.4., p.37.

## 6. 일자리사업 평가와 예산안 연계

### 가. 현 황

#### (1) 일자리사업 평가 개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는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를 일자리 관점에서 평가해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실시하는 평가제도로,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제1항<sup>1)</sup> 및 「고용보험법」 제11조의2 제1항<sup>2)</sup>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평가 절차를 살펴보면, 전년 10월부터 동년 4월까지 연 1회 실시하며, 고용노동부가 사업유형별 평가지표(체계)를 제시하고, 사업별 성과지표, 만족도 조사, 예산집행률 등의 실적에 대한 점검·분석을 실시한다.

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하지만, 매년 일자리사업 수행 기관 변동으로 대상기관은 유동적이다.

---

임길환 예산분석관(ghlim@assembly.go.kr, 6788-3734)

####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 1의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용비율고용방법 등 제시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예산반영에 관한 의견 제시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8.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 2) 「고용보험법」

제11조의2(보험사업의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험사업을 조정하거나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 방법은 사업별로 각각의 성과지표, 만족도 조사 점수, 예산 집행률을 동일 비중으로 반영하여 성과등급을 도출하는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평가 등급은 상대비교가 불가능한 단독 유형 사업을 제외하고 4단계의 성과등급(우수, 양호, 개선필요, 감액)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기초평가 결과만 대국민 공개를 하고 있으며 사업수행부처에 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 (2) 202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2022년 실시한 일자리사업 평가 대상은 24개 부처 228개 사업으로, 2021년 본 예산 30.5조원을 편성하였고 추경예산(+5.6조원)을 포함하여 34.2조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일자리사업 유형별 집행 현황]

(단위: 억원, 만명)

유형	합계	직접일자리 (인력 수)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본 예산	305,131	31,599 (104.1)	22,648	17,330	76,002	24,071	133,481
추경포함시 예산현액	361,860	42,328 (125.2)	26,232	18,355	98,629	27,704	148,912
집행액	342,296	41,615 (127.5)	24,190	16,028	91,568	27,402	141,494

주: (예산현액) 본예산에서 추경증액, 내역변경, 이월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228개 사업 중 평가대상 207개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32개 사업(19%)에 대하여 감액을 결정하였으며, 11개 사업에 대하여는 단계적 폐지를 판정하였다.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4등급 부여 결과]

(단위: 사업 수)

구분	2022년 성과평가					
	우수	양호	개선	감액	등급 대상	평가 대상
직접일자리	4	13	8	13	38	40
직업훈련	3	22	14	5	44	47
고용서비스	4	25	7	4	40	40
고용장려금	5	11	4	6	26	28
창업지원	3	9	5	4	21	22
합계	19	80	38	32	169	207

자료: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2022. 6)

단계적 폐지 대상 11개 사업은 직접일자리 7개, 고용장려금 4개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지방이양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단계적 폐지대상 사업 현황]

'23년 지방이양 : 경찰청<아동안전지킴이>, '23년부터 민간위탁: 특허청<해외지식재산권보호>
'22년까지 운영 : 행안부<지역방역일자리>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고용부<고령자고용환경개선지원(용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5년까지 운영 : 환경부<스마트담안저면리> <담유지면리다지탈화> 문화재청<매장문화재보호 관리>

자료: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2022. 6)

#### 나. 분석의견: 예산안 연계 강화를 통한 평가 실효성 확보 필요

일자리사업 평가가 매년 방대한 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반면, 평가 결과가 2023년도 예산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나타나고 있어 평가 내실화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 228개 세부사업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30.5조원 수준이다. 이중 일자리사업 평가 대상은 207개 사업으로 2021년 171개 사업보다 36개 사업이 늘어나는 등 매년 평가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은 총 32개 사업으로, 이중 2023년 예산안에 증액 또는 전년 동으로 편성된 사업은 5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평가대상 세부사업 예산이 증액된 사례는 더 많았지만 일자리사업 평가의 경우 세부사업 하위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일자리 관련 사업)별로 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해당 내역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육성'**의 경우, 일자리 창출 수준이 높지 않고 추가적인 성과분석 데이터가 부재하여<sup>3)</sup> 감액 판정을 받았으나,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동으로 편성되었다.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경우, 증가하는 노인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 취지에 비해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반복 참여 제한, 민간일자리 이동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직접일자리 사업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감액 판정을 받았으나,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65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경우, 연례적 집행률 저조에 따라 집행 실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실적 부진의 원인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대상 및 소요예산을 적정 추계하라고 지적하면서 예산 감액이 권고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의 2023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7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3) 여성기업 육성 사업은 창업공간 238개실을 제공하고 있으나 2020년도 고용실적이 305명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창출된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액 미반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육성 (여성창업지원)	3,956	3,956	0	0
	소상공인 창업지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315	312	△3	△1.0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36,571	501,981	6,541	15.0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지원 (직장보육교사 등인건비 지원)	73,440	75,461	2,021	2.8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776	15,572	2,796	21.9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구체적인 감액 사유를 지적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바, 사업 개선을 권고하고 있는 38개 사업에 대해서도 개선 사항의 반영여부를 보다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경우, 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를 통제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재한 바, 동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7.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와 예산안 연계

### 가. 현 황

#### (1)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 개요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3<sup>1)</sup>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과 제고 및 책임성 향상 등을 위해 2019년부터 전 부처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평가 절차를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성과평가 추진계획 수립(전년 12월경) → 평가제도 설명회(1월경) → 전문평가단 중심 정성·정량 평가(2월~5월경) → 관계부처 의견수렴(5월경) → 성과평가보고서 발표(6월경) 순으로 이루어진다.

평가 대상은 중소기업지원사업 중 통합관리시스템<sup>2)</sup>을 통해 지원이력이 관리되는 예산 50억원 이상 세부사업으로, 지원목적·방식·대상 등에 따라 금융, 기술 등 8개 분야로 분류하고, 분야별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

임길환 예산분석관(ghlim@assembly.go.kr, 6788-3734)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평가 및 효율화(이하 “효율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분류, 분석 및 평가기준의 마련
2.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역할 분담 및 연계성 강화
- 2의2.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
3. 효율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
4.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중복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5.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성과분석
6.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7.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를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 방안을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sup>3)</sup>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방안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접수 현황, 지원 이력 등의 자료·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평가 방식은 정책중요도 등 4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정성평가(60점)와, 기초지표, 성장지표 등을 포함하는 정량평가(40점) 점수를 합산해 최종 평가 점수를 산출하고 있다.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 항목]

- (정성평가) 정책중요도(5점), 운영 적절성(10점), 지원성과(25점), 제도개선 노력(20점)
- (정량평가) 기초지표(15점, 생존율) + 성장지표(10점, 매출·고용증가율) + 지원기업 만족도(15점)

평가 등급은 상대평가를 통해 ‘우수’, ‘보통’, ‘개선필요’ 등 3단계 등급을 부여하며, 상대평가 비율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의 등급 기준을 준용한다.

**(2) 2022년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 결과**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대상 사업은 중소기업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 이력이 관리되는 예산 50억원 이상의 세부사업(2021년 기준)으로, 12개 부처, 137개 사업, 23조원 규모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137개 사업 중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25개(18%), 보통은 92개 사업(67%), 개선 필요는 20개 사업(15%)이었다. 평가대상 사업의 분야별 평가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2022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결과]

(단위: 사업 수)

분야(등급)	금융	기술	인력	창업	수출	경영판로	소상공인	인프라	합계
우수	3	7	2	3	3	4	1	2	25
보통	13	24	7	11	10	16	4	7	92
개선필요	2	5	2	3	2	3	1	2	20
합계	18	36	11	17	15	23	6	11	13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방향」(2022. 5.)

나. 분석의견: 예산안 연계를 위한 평가 내실화 필요

중소기업지원 사업 평가 결과가 구체적인 예산 환류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예산의 적정성, 사업간 유사·중복성 및 연계 방안 제시 등 평가의 차별화를 통한 평가 실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 중소기업지원 사업 평가 결과, 지원기업 관점에서 환경변화현장 의견 반영 등이 부족하거나 매출고용 등 경영실적이 저조한 사업으로 ‘개선 필요’ 판정을 받은 사업은 총 20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개선 필요’ 등급을 받은 사업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9개로 가장 많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4개, 문화체육관광부가 3개, 고용노동부가 2개, 해양수산부와 산림청이 각각 1개씩으로 나타났다.

[개선 필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부처	세부사업명	2022 예산	2023 예산안	평가결과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산업융자지원	649,000	449,100	기금기여도 등 목표달성에 노력, 관광시설의 질 평가지표 고려 필요
	영상콘텐츠산업육성	71,420	42,089	매출증가를 개선, 운영규정 개선, 성과목표 명확화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46,072	122,808	사업관리시스템 개선, 성장지표 개선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기술국제협력(R&D)	96,661	106,052	성과파악 곤란, 의견수렴 실적 부족, 중소기업 성장연계 후속 조치 필요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R&D)	1,504	0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방식, 성과지표 등 개선
	드론활용서비스시장창출지원(R&D)	6,850	0	정성적 성과관리 방안 미흡, 성과지표 재설정
	해외플랜트진출확대	8,667	8,538	사업효과성 제고, 매출 및 고용증가율, 만족도 개선 필요
	수산물수매지원(용자)	65,370	115,370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선발기준 제시, 수혜기업 감소 원인 분석 필요 등
산림청	목재자원의고부가가치첨단화 기술개발(R&D)	9,774	8,357	산업화 성과 미흡, 고용성과 저조

(단위: 백만원)

소관 부처	세부사업명	2022 예산	2023 예산안	평가결과
중소벤처 기업부	연수사업	21,852	22,729	사업구조 재편, 목표치 설정 표준화, 체계적 운영관리 필요
	기업인력애로센터활용취업지원	9,003	8,916	사업운영체계 보완 및 성과지표 개선, 사업간 유기적 연계 필요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228,033	252,870	성과지표 개발, 사업화 확대수준 측정, 수요처 구매동의 철회 관리 필요
	창업인프라지원	74,058	9,563	만족도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 필요, 민간 보육기관 대비 방향 설정 필요
	창업저변확대 (창업기업지원서비스바우처)	42,042 (12,134)	22,359 (0)	사업을 확대 개편하거나 타 사업으로 대체하는 방안 검토 필요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88,702	91,084	투입 중심의 성과관리 지양, 결과중심 성과관리 필요
	비대면서비스플랫폼구축	41,239	15,248	비대면 수요가 높은 기업 우선 지원,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과 연계 필요
	소상공인스마트상점기술보급	77,000	104,800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사업 추진, 생산성 제고 등 경쟁력 강화지표 관리 필요
	기술혁신기반조성	17,362	16,288	사후 성과관리분석 체계화, 뿌리기술 전문기업육성 목표 달성 노력 필요
고용 노동부	일터혁신지원	25,720	28,004	매출증가율 등 정량성과 개선 필요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	64,402	69,259	매출증가율, 고용증가율 개선 필요, 지속성장을 위한 후속지원 연계 필요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소기업지원 사업 평가 결과의 ‘개선 필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사업평가와 달리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선 필요’ 등급을 받은 20개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의 전년대비 증감액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 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3<sup>3)</sup>에 따르면, 범부처 중소기업지원 사업을 분류하여 사업간 역할 분담 및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화를 위한 예산 반영 의견을 제시하며, 사업간 중복성 검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 사업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에 동 평가 결과의 ‘개선 필요’ 판정을 받은 사업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강화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거나 사업성과(매출증가율, 고용증가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내용 위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동 평가에서는 부처 간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비교하거나 집행실적이나 사업효과가 미미한 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2022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기금운용평가), 일자리사업평가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미흡’ 또는 ‘개선 필요’ 사업으로 평가 받았으며 지출구조조정은 1% 수준으로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2022년 중소기업지원 사업 평가 대상은 12개 부처 137개 세부사업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23조원 수준이며, 2023년부터 50억원 미만 소액 사업까지 평가대상에 포함시키게 되어 그 대상이 더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가 평가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업간 유사·중복성 검토를 통한 구체적인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평가결과의 내실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평가 및 효율화(이하 “효율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분류, 분석 및 평가기준의 마련
2.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역할 분담 및 연계성 강화
- 2의2.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
3. 효율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
4.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중복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5.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성과분석
6.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7.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 기획재정부

##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2023년 기획재정부 예산안은 34조 9,724억원이며,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안은 1조 6,461억원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이 부적정한 총사업비관리 대상 규모<sup>2)</sup>는 172억원이다.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요구안	정부안
총예산	296,250	309,280	354,686	349,724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	15,133	14,089	16,494	16,461
디브레인 코드상 의무지출 예산	-	-	-	-
사실상 의무지출 예산	-	-	-	-
정보화 예산	575	575	468	456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 예산	153	153	182	172
R&D 평가 대상사업 예산	-	-	-	-
재난안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	-	-	-	-
균형발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	-	-	-	-
복권기금 평가 대상사업 예산	-	-	-	-

자료: 기획재정부

각 성과평가별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평가결과 '미흡'인 세부사업은 4개이다. 동 사업들의 2023년 예산안은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1) "4장 부처별 성과평가 결과 분석"의 부처별 현황 자료(표)는 각 부처에서 관련 예산 및 해당 평가유형별 예산내역 및 증감액 사유로 작성·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2) 기획재정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 2022, p.7.

\* 의무지출, 국정과제,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연부액 계획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한 사업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재정사업자율평가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3,290	3,151	3,061	3,061	재정사업 자율평가 환류계획 반영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특별계정)	25,000	25,000	-	-	재정사업 자율평가 환류계획 반영
경험증진자금 이차보전	648	648	583	583	재정사업 자율평가 환류계획 반영
경험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1,555	1,555	1,050	1,050	재정사업 자율평가 환류계획 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 의견: 연례적 집행률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구조 개선 필요(재정사업자율평가)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은 단순히 성과와 예산 연계만 고려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시행구조를 변경하여 집행 부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경험증진자금지원(3337)은 세부사업 '경험증진자금 이차보전', '경험증진자금사업 진행컨설팅'으로 구성된다. 동 사업은 평가등급 '미흡'을 받아 2022년 예산 대비 약 10%의 지출구조조정을 받았다.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 계획 현황(경험증진자금지원)]

(단위: 백만원, %)

분야	평가사업명 (단위사업)	세부사업명	2022 예산(A)	구조조정 금액(B)	감액 비율 (B/A)
일반 재정	경험증진자금지원	경험증진자금 이차보전	648	△65	10.0
		경험증진자금사업 진행컨설팅	1,555	△160	10.3

자료: 기획재정부, 「2021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022, p.40.

그러나 2023년 경험증진자금사업진행컨설팅(ODA) 예산안은 전년대비 32.5% 감액되었다.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계획		2023안 (B)	증감 (B-A)	(B-A)/A
		당초(A)	수정			
3337 경험증진자금지원	2,102	2,203	2,203	1,633	△570	△25.9
경험증진자금 이차보전(ODA) (3337-301)	-	648	648	583	△65	△10.0
경험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ODA) (3337-641)	2,102	1,555	1,555	1,050	△505	△32.5

자료: 기획재정부

동 사업은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이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도 경험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ODA) 집행률은 10.1% 수준이다.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경험증진자금 이차보전(ODA)(3337-301)								
2019	-	-	-	-	-	-	-	-
2020	2,069	-	2,069	2,069	-	-	-	2,069
2021	648	-	648	648	-	-	-	648
2022	648	-	648	648	-	-	-	-
경험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ODA)(3337-641)								
2019	1,600	-	1,600	161	10.1	10.1	-	303
2020	2,200	-	3,336	1,829	83.1	54.8	-	169
2021	1,800	-	3,138	2,102	116.8	67.0	-	709
2022	1,555	-	1,882	-	-	-	-	-

자료: 기획재정부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ODA) 주요 결산사항을 살펴보면, 추진계획사업 관련 수원국의 사업추진의사 번복, 협의지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들로 인해 예산이 불용되고 있다.

[2019년~2022년 주요 결산사항(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O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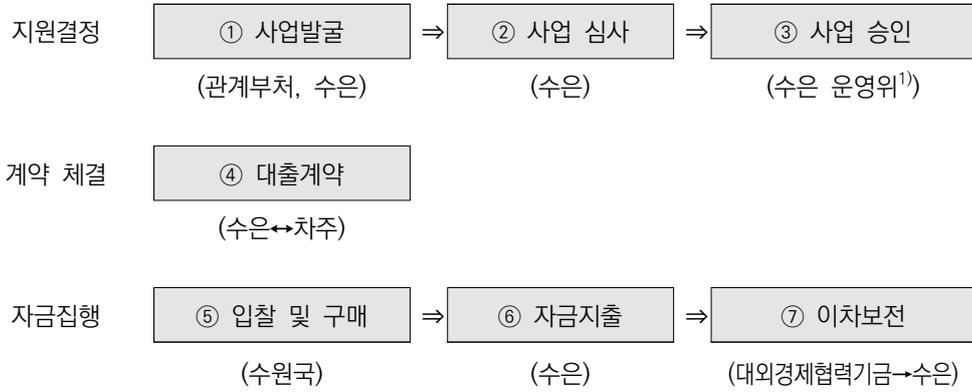
2019	- 현액 대비 10% 집행 - 추진계획사업 관련 수원국의 사업추진의사 번복, 협의지연 등으로 예산 불용
2020	- 현액 대비 54.8% 집행 - 미집행 계약액 1,338백만원 이월 및 낙찰차액 169백만원 불용 처리
2021	- 현액 대비 67.0% 집행 - 미집행 계약액 327백만원 이월 및 코로나 19로 인한 추가 신규사업 발굴 제약으로 일부 예산 불용
2022	-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사업 추진지역 실사 지연 등으로 계획대비 집행실적 부진 - '21년 발주한 용역(2건) 중도금 잔금 전액 연내 집행 및 신규 용역 발주 추진중

자료: 기획재정부

동 사업은 연례적 집행을 부진사업이므로, 단순히 성과와 예산 연계만 고려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ODA)은 아래 [그림]과 같이 사업발굴, 사업심사, 사업승인, 대출계약, 입찰 및 구매, 자금지출이 이루어진 이후에 한국수출입은행에 분기별로 이차보전을 한다. 따라서 동 사업의 예산안을 사업 추진 계획에 근거하여 편성하기보다는 자금지출이 이루어진 이후에 편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업시행구조를 변경한다면, 2023년 예산안은 일부 감액할 수 있으며 낮은 집행을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경험증진자금 이차보전(ODA) 사업 집행절차]



주: 구성 - 수은 은행장(위원장),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 한은 등  
 자료: 기획재정부

## 2. 관세청

###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2023년 관세청 예산안은 6,383억원이며,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안은 1,680억원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이 부적정한 총사업비관리 대상 규모는 207억 1,600만원이다.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요구안	정부안
총예산	6,141	6,116	6,394	6,383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	1,617	1,613	1,691	1,680
디브레인 코드상 의무지출 예산	-	-	-	-
사실상 의무지출 예산	-	-	-	-
정보화 예산	550	550	610	605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 예산	144	144	207	207
R&D 평가 대상사업 예산	44	44	49	49
재난안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	-	-	-	-
균형발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	-	-	-	-
복권기금 평가 대상사업 예산	-	-	-	-

자료: 관세청

각 성과평가별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평가결과 '미흡'인 세부사업은 1개이다. 동 사업의 2023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재정사업자율평가					
FTA및국제협력	7,891	7,891	7,764	7,764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 (미흡) 반영

자료: 관세청

나. 분석 의견: 지출구조조정 규모에서 예산의 자연감소분을 제외할 필요(재정사업지출평가)

지출구조조정은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므로, 성과와 무관한 예산의 자연감소분은 지출구조조정 규모에 제외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FTA 및 국제협력 지원(1531)은 세부사업 'FTA 및 국제협력', 'FTA 원산지 위험관리', '개도국관세행정현대화지원(ODA)', '세관협력기금 출연(ODA)'으로 구성된다. 동 사업은 평가등급 '미흡'을 받아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이다.

그런데 동 사업은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한 사업이므로, FTA 및 국제협력 (1531-300) 예산안만 전년대비 1.6% 감액되었다.

[예산안 총괄]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예산		2023안 (B)	증감	
		본예산(A)	추경		(B-A)	(B-A)/A
1531 FTA 및 국제협력 지원	14,728	17,045	17,045	19,657	2,612	15.3
FTA 및 국제협력 (1531-300)	6,466	7,891	7,891	7,764	△127	△1.6
FTA 원산지위험관리 (1531-301)	537	847	847	847	-	전년동
개도국관세행정현대화 지원(ODA) (1531-302)	4,725	5,307	5,307	8,046	2,739	51.6
세관협력기금 출연 (ODA) (1531-303)	3,000	3,000	3,000	3,000	-	전년동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지출구조조정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평가등급 '보통'을 받은 **밀수단속(1331-300)** 예산을 14.52억원 감액하였다. 그런데 동 사업은 세관에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분석·처리가 가능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역사업 '디지털무역범 죄수사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3년 내역사업 '디지털무역범죄수사지원' 예산안은 2022년 예산 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었다. 즉, 밀수단속(1331-300) 예산 감액은 자연감소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지출구조조정은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성과와 무관한 예산의 자연감소분은 지출구조조정 규모에 제외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관세청은 내역사업 '디지털무역범죄수사지원'의 예산안 금액이 사업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평가등급 '보통'을 받은 밀수단속 예산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기능별 예산안 내역(밀수단속)]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예산		2023안 (B)	증감	
		본예산(A)	추경		(B-A)	(B-A)/A
기능별 분류(합계)	4,033	9,631	9,522	6,022	△3,609	△37.5
· 밀수신고포상금	477	660	660	506	△154	△23.3
· 사건수사비	2,290	2,095	1,986	1,921	△174	△8.3
· 국외수사여비	19	161	161	165	4	2.5
· 밀수단속업무지원	1,095	1,128	1,128	1,161	33	2.9
· 지재권보호활동	99	99	99	99	0	0.0
· 수사장비 도입	-	214	214	214	0	0.0
· 온라인부정수입물품 모니터링	-	990	990	990	0	0.0
· 디지털무역범죄수사지원	-	3,901	3,901	754	△3,147	△80.7
· WCO RILO AP 운영	53	383	383	212	△171	△44.6

자료: 관세청

### 3. 국세청

####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2023년 국세청 예산안은 1조 9,256억원이며,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안은 미확정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이 부적정한 의무지출, 사실상 의무지출<sup>3)</sup>, 총사업비관리 대상 규모<sup>4)</sup>는 각각 60억원, 60억원, 1,193억원이다.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요구안	정부안
총예산	19,330	19,219	20,638	19,256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	미확정	미확정	미확정	미확정
디브레인 코드상 의무지출 예산	60	60	66	61
사실상 의무지출 예산	60	60	66	61
정보화 예산	1,307	1,307	1,306	1,193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 예산	-	-	-	-
R&D 평가 대상사업 예산	-	-	-	-
재난안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	-	-	-	-
균형발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	-	-	-	-
복권기금 평가 대상사업 예산	-	-	-	-

자료: 국세청

각 성과평가별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평가결과 '미흡'인 세부사업은 2개이다. 동 사업들의 2023년 예산안은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3) 기획재정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 2022, p.6.

사실상 의무지출 : 법령 규정 및 국가간 계약 등에 따른 사업 등

4) 기획재정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 2022, p.7.

\* 의무지출, 국정과제,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연부액 계획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이 불가능한 사업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재정사업자율평가					
압류재산공매	5,194	5,194	3,992	3,992	지출구조조정
근로자녀장려세제운영	10,975	10,723	9,402	9,402	지출구조조정

자료: 국세청

나. 분석 의견: 지출구조조정 규모에서 예산의 자연감소분을 제외할 필요(재정사업자율평가)

지출구조조정은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므로, 성과와 무관한 예산의 자연감소분은 지출구조조정 규모에 제외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근로·자녀장려세제운영(3135)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청안내, 지급통지, 홍보 등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평가등급 '미흡'을 받아 지출구조조정을 받았다.

[예산안 총괄]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예산		2023안 (B)	증감	
		본예산(A)	추경		(B-A)	(B-A)/A
근로·자녀장려세제운영 (3135)	12,240	10,975	10,723	9,402	△1,573	△14.3

자료: 국세청

그런데 국세청 「2021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고서에는 동 사업에 대한 평가근거가 누락되어 있으며, 동 사업의 평가등급은 외부위원이 참가하는 자체평가 위원회 평가 결과 '미흡'으로 분류되었다.

[사업별 평가결과(국세청)]

(단위: 점)

연번	예산/기금	평가 사업명	예산(억원)		평가 점수	평가 등급
			2021	2022		
합계			2,167	2,359		
1	일반회계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18	17	83.6	우수
2	일반회계	취업후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92	33	82.0	우수
3	일반회계	국세행정전산화(정보화)	1,003	1,219	81.0	보통
4	일반회계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24	27	79.6	보통
5	일반회계	국세징수활동지원	699	727	79.3	보통
6	일반회계	법무심사지원	105	117	78.3	보통
7	일반회계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25	26	77.3	보통
8	일반회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18	15	72.0	보통
9	일반회계	체납정리지원	57	68	71.0	미흡
10	일반회계	근로자녀장려세제운영	126	110	68.0	미흡

자료: 국세청, 「2021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022, p.5.

평가등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집행률 및 성과목표 달성도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평가등급 ‘보통’을 받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은 집행률 66.1%, 성과목표달성도 34.0%이다. 반면, 평가등급 ‘미흡’을 받은 ‘근로자녀장려세제운영’은 집행률 97.2%, 성과목표달성도 99.8%이다.

[사업별 집행률 및 성과목표 달성도(국세청)]

(단위: %)

연번	예산/기금	평가 사업명	집행률	성과목표달성도	
1	일반회계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170.7	126.1	
2	일반회계	취업후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96.2	100.3	
3	일반회계	국세행정전산화(정보화)	-	97.2	
4	일반회계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100	99.7	
5	일반회계	국세징수활동지원	조사활동지원	86.2	100.1
			부과·징수자료수집비	99.9	
			부과·징수지원	41.1	
6	일반회계	법무심사지원	소송수행비용	99.9	92.4
			확정채무 지급	139.9	
7	일반회계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99.9	104.6	
8	일반회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66.1	34.0	
9	일반회계	체납정리지원	징수위탁수수료	91.3	102.9
			압류재산공매	107.5	94.1
10	일반회계	근로자녀장려세제운영	97.2	99.8	

자료: 국세청,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2022.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세제운영에 대해 평가등급 ‘미흡’을 부여한 사유는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2년 2월 15일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sup>5)</sup>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결정통지서의 모바일 발송이 가능함에 따라, 근로·자녀장려세제운영 예산 중 ‘신청안내문·지급통지서 발송 우편요금’ 71.28억원은 대폭 감액될 수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2022년 ‘신청안내문·지급통지서 발송 우편요금’ 예산은 2021년 71.28억원 대비 14.74억원(△27.2%) 감액된 54.20억원이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②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2. 11., 2022. 2. 15.>

1. 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
2. 신청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기능별 예산안 내역(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예산		2023안 (B)	증감	
		본예산(A)	추경		(B-A)	(B-A)/A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12,240	10,975	10,723	9,402	△1,573	△14.3
일용임금	1,396	1,679	1,679	1,746	67	4.0
인쇄비, 홍보비 등	2,327	2,522	2,270	2,234	△288	△11.4
안내문 발송요금 등	7,128	5,420	5,420	3,946	△1,474	△27.2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339	1,302	1,302	1,426	124	9.5
설문조사	28	30	30	30	0	0.0
간담회	14	14	14	12	△2	△14.3
보전금	8	8	8	8	0	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내문 발송요금 등의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우편봉투구입이 결정통지서의 모바일 발송에 따라 2022년 959만건에서 2023년 338만건으로 축소되었고, 결정통지서 등 제작 비용도 2022년 6.91억원에서 2023년 3.99억원으로 축소되었다.

평가등급 ‘미흡’을 받은 사업은 의무적으로 지출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부처는 예산 축소가 예정된 사업에 평가등급 ‘미흡’을 주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의 자연감소분은 지출구조조정 규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안내문 발송요금 등의 산출내역]

구분	2022	2023안
합계	1,304,755천원	794,000천원
우편봉투구입	959만건×20원=210,980천원	338만건×21원=71,000천원
결정통지서 등 제작	691,475천원	399,000천원
안내창구 개설	149개×3회×900천원=402,300천원	154개×3회×700천원=324,000천원

자료: 국세청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은 18조 7,905억원이며,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안은 3조 552억원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이 부적정한 총사업비관리 대상 규모<sup>6)</sup>는 각각 590이다.

R&D, 재난안전, 균형발전, 복권기금 평가대상 사업 예산은 각각 2조 5,137억원, 1,039억원, 4,048억원, 870억원이다.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요구안	정부안
총예산	185,737	183,764	195,706	187,905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	35,820	35,607	34,623	30,552
디브레인 코드상 의무지출 예산	-	-	-	-
사실상 의무지출 예산	-	-	-	-
정보화 예산	6,186	6,007	5,334	5,008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 예산	796	796	590	590
R&D 평가 대상사업 예산	24,624	24,624	25,283	25,137
재난안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	1,014	982	1,046	1,039
균형발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	4,122	3,917	4,168	4,048
복권기금 평가 대상사업 예산	1,012	1,012	1,006	87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 성과평가별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평가결과 '미흡'인 세부사업은 27개이며, 2023년 예산안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은 23개이며, 증가한 사업은 3개이다. 정부는 성과평가 결과 및 다양한 여건들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6) 기획재정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 2022, p.7.

\* 의무지출, 국정과제,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연부액 계획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한 사업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재정사업자율평가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정보화)	1,408	1,408	1,267	1,267	평가결과 반영
국제IT협력프로젝트운영 (정보화)	778	778	700	700	평가결과 반영
DB산업 육성(정보화)	6,483	6,483	6,001	6,001	평가결과 반영
1인 미디어 콤플렉 조성	5,900	5,900	5,310	5,300	평가결과 반영
10Giga인터넷서비스 촉진사업	-	-	-	-	
지역과학관활성화지원사업	14,015	14,015	12,614	12,614	평가결과 반영
전자문서이용기반조성사업(정 보화)	-	-	-	-	
전파방송관리(정보화)	217	217	675	675	신규 내역사업 추가
전파미래융합양성	778	778	700	700	평가결과 반영
생활, 산업환경의 전자파 안전정보플랫폼구축	600	600	500	408	평가결과 반영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2,054	2,054	1,849	1,849	평가결과 반영
산업생활주파수활용기반구축 (정보화)	5,125	5,125	4,600	4,541	평가결과 반영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적용(정보화)	40,000	40,000	-	-	
통상우편사업	33,778	33,758	29,778	29,778	우편사업운영 사업 관련 우체국콜센터 위탁사업 관련 인건비성 경비(최저임금 상승 반 영) 증액
우표문화사업	5,990	5,990	5,400	5,400	
우편사업운영	37,906	37,402	38,324	38,324	
우체국소포사업	34,090	33,985	34,090	34,090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재난안전사업 평가					
우체국보수(내진보강)	2,742	2,742	2,467	2,467	평가결과 반영
균형발전사업 평가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 지조성(R&D)	9,565	9,565	6,670	6,670	평가결과 반영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투 자지원	-	-	-	-	
5G기반조선해양스마트통신플 랫폼및융합서비스개발(R&D)	2,900	2,900	2,600	2,600	평가결과 반영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실증 (R&D)	30,712	30,712	50,200	50,200	건설공사 본격 추진에 따라, 건설공정률 달성 에 필요한 예산 반영
보조사업연장평가					
산업생활주파수활용기반구축 (정보화)	3,000	3,000	2,500	2,500	연장평가 결과 반영
전파미래융합장감양성	778	778	700	700	연장평가 결과 반영
정보통신시험인증허브기반구 축(정보화)	175	175	150	150	연장평가 결과 반영
지역SW산업진흥지원 (정보화, 제주)	209	209	146	146	연장평가 결과 반영
지역SW산업진흥지원 (정보화, 지역지원)	2,502	2,502	1,752	1,752	연장평가 결과 반영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분석 의견

(1) 재난안전 관련 내역(내내역)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변경할 필요(재난안전사업 평가)

예산 비중이 낮은 내역사업으로 인해 세부사업이 재난안전사업으로 분류되어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난안전 관련 내역(내내역)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체국보수(5143-417)는 노후우체국 대수선, 내진성능 보강, 유해 석면자재 해체, 임대 우체국사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평가등급 ‘미흡’을 받았다.

평가대상은 세부사업 ‘우체국보수’ 전체가 아니라, 내내역사업 ‘내진보강’에 한정된다. 세부사업 ‘우체국보수’ 2023년 예산안은 204.9억원이며, 내내역사업 ‘내진보강’ 예산안은 24.67억원이다. 내내역사업 ‘내진보강’ 예산안은 전년대비 10%가 감액되었다.

예산 비중이 8.09% 수준인 내내역사업으로 인해 세부사업이 재난안전사업으로 분류되어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내내역사업 ‘건물내진성능보강’는 세부사업 ‘우체국보수’ 분리되어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예산		2023안 (B)	증감	
		본예산(A)	추경		(B-A)	(B-A)/A
우체국보수	43,353	36,590	36,590	30,490	△6,100	△16.7
법적의무사항	3,097	3,248	3,248	3,248	0	0.0
건물내진성능보강	2,653	2,742	2,742	2,467	△275	△1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 R&D 상위평가의 관대화 경향(R&D평가)

R&D평가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최종 미흡 판정 사업과 상위평가의 부적절 판정 사업 수가 줄어들고 있어 평가의 관대화 경향이 우려된다.

R&D평가는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집행 부처의 자율성은 확대하면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1년도 평가부터는 집행부처가 자율적으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상위평가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을 경우 소관부처가 점수·등급을 스스로 조정하는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sup>7)</sup>

따라서 상위평가에서는 평가등급의 조정을 하지 않는 대신에 자체평가의 적절성 여부만을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등급도 기존 5단계(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에서 3단계(우수/보통/미흡)로 간소화하였다. 다만, 부처 자율성 강화에 따라 평가의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는 미흡 등급 사업의 수를 우수 등급 사업의 30% 이상이 되도록 자체평가지침을 강화한 바 있다.<sup>8)</sup>

최근 5년간 R&D 중간평가에서 미흡 등급 판정을 받은 사업의 수를 살펴보면, 상위평가에서 평가 등급을 조정했던 2020년 이전에 비해 2021년부터 미흡 판정 사업의 수가 각각 0개, 1개로 나타나 상당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상위평가에서 평가등급 조정을 하지 않고 적절성 여부만을 판단하면서 2021년도부터 도입된 부적절 사업의 수도 2021년 9개에서 2022년 4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반면에 2022년 평가에서 보통 등급 판정 사업은 전체의 78%가 넘는 104개 사업으로 나타나 평가결과가 보통 등급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미흡 등급의 사업 수를 우수 등급 사업의 30% 이상이 되도록 평가지침을 개정하였으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2022. 6) 참조.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지침」(2022. 1) 참조.

9) 부적절 사업의 경우, 2021년 9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부처 재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이며, 2022년은 4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부처 재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가 등급을 미흡으로 하향해야 하는 대상 사업은 2021년 5개, 2022년 2개 사업에 불과하다.

[2018~2022년 R&D평가(중간평가) 최종 평가 등급 현황]

(단위: 개, %)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부적절		합계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2018	27	27.3	69	59.7	3	3.0	-	-	99	100.0
2019	35	38.3	48	52.5	8	9.2	-	-	91	100.0
2020	27	38.0	38	53.5	6	8.5	-	-	71	100.0
2021	25	31.6	45	57.0	0	0.0	9	11.4	79	100.0
2022	24	18.0	104	78.2	1	0.8	4	3.0	133	100.0

주: 2018~2020년 미흡 등급은 매우미흡 등급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R&D평가는 집행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미흡·부적절 판정 사업의 수는 줄어드는 반면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미흡등급 사업의 연동 비율은 준수되지 않고 있어, 당초 제도 개선 취지와 달리 온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대부분의 재정사업 성과평가가 평가 등급의 상대 비율을 할당하여 평가의 관대화를 방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5. 농림축산식품부

###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은 17조 2,785억원이며,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안은 9조 4,025억원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이 부적정한 총사업비관리 대상 규모<sup>10)</sup>는 2,030억원이다.

R&D, 재난안전, 균형발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은 각각 394억원, 2조 7,513억원, 51억원이다.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요구안	정부안
총예산	168,767	168,957	179,452	172,785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	92,660	94,962	93,763	94,025
디브레인 코드상 의무지출 예산	-	-	-	-
사실상 의무지출 예산	-	-	-	-
정보화 예산	511	511	555	547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 예산	2,131	1,983	2,030	2,030
R&D 평가 대상사업 예산	394	394	485	394
재난안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	27,522	26,754	30,316	27,513
균형발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	50	50	60	5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성과평가별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평가결과 '미흡'인 세부사업은 26개이며, 2023년 예산안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은 18개이며, 증가한 사업은 5개이다. 정부는 성과평가 결과 및 다양한 여건들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10) 기획재정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 2022, p.7.

\* 의무지출, 국정과제,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연부액 계획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한 사업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재정사업자율평가					
농기자재수출활성화사업	2,009	2,009	1,808	1,808	22년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에 따른 23예산 10% 감축
사료산업종합지원(용자)	64,749	64,749	64,749	64,749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상승이 예상되어 올해와 동일 수준으로 예산 편성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용자)	355,000	355,000	355,000	355,000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상승이 예상되어 올해와 동일 수준으로 예산 편성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161,800	213,800	144,633	144,633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으로 인한 삭감(△10.6%)
축산자조금	23,400	23,400	22,230	22,230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2023년 예산 5% 감축
축산물수급관리	86,378	84,078	92,004	86,541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에 따라 10% 삭감하였으나 계란공판장 활성화를 위한 자금 편성으로 증액
축산물수급관리(용자)	30,000	10,000	23,190	23,190	사업 집행률 등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
축산물유통및소비촉진제고	2,850	2,850	1,272	1,272	흑염소 브랜드 육성사업 폐지('22년 1,500백만원)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	12,473	12,473	11,526	11,373	KTTP(문체부) 관련 사업 폐지, 단년도 연구용역 사업 종료, 내역 사업 간 조정 등에 따른 예산 증감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용자)	9,400	9,400	8,860	8,460	사업 집행부진에 따른 감액
푸드서비스선진화	5,035	5,035	4,168	4,168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미흡)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계획 반영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1,095	1,095	980	980	전체적인 예산 감액 조정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0.5% 감액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축사시설현대화(융자)	113,434	113,567	116,802	98,727	사업 집행률 등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
축사시설현대화	55,349	57,382	49,798	49,798	사업 집행률 등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
피해보전직불	20,000	20,000	18,000	18,000	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결 과(감축) 반영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융자)	2,646	2,646	-	-	사업 집행률 등을 감안하여 이차보전으로 전환
재난안전사업 평가					
재보험금	100,000	100,000	70,000	70,000	
보조사업연장평가					
농업협상대응	1,812	1,812	1,058	1,058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754백만원)' 사업 '농업농 촌교육훈련지원' 사업으로 이 관('23~)
농기계임대	26,000	26,000	34,000	23,400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에 따 라 '23년 예산 감축 반영(△ 26억원, △10%) 및 성과지표 변경(발농업기계 보유대수)
스마트팜패키지수출활성화	791	791	840	707	22년 대비 10.6% 감축,
종자산업기반구축	6,489	6,489	5,000	5,000	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 과 반영
귀농귀촌활성화지원	23,615	23,615	24,395	21,254	예산안을 전년대비 10% 감 액하고, 유사한 내역사업(3 개)을 통합
피해보전직불	20,000	20,000	20,000	18,000	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결 과(감축) 반영
취약농가인력지원	1,463	1,463	1,317	1,171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반영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1,050	1,050	420	420	자치단체의 사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소수 조정(기존 5개소 → 3)
가축사체처리지원	7,725	4,195	6,250	4,855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감 축) 등 반영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사업관리비	11,471	11,471	11,411	11,465	지자체행정경비중전산입력보 조원인건비상승액(9260원/ 일->9620)반영
기능성식품산업육성	3,305	3,305	3,788	3,788	기능성원료은행 건축비 등 연차소요 반영
전통발효식품육성	11,911	11,911	17,046	17,046	세부사업 내(김치원료공급단 지 발효식초산업플랫폼 구축 등) 연차 사업비 증액
푸드서비스선진화	5,035	5,035	4,168	4,168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감 축) 반영
축산물HACCP지원	1,037	1,037	813	813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반영
국가인증농식품지원	7,222	7,222	7,020	6,506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감 축) 반영
과수생산유통지원	24,987	24,987	24,882	24,882	감축(76) '22단년도사업(정보화전략 계획수립) 종료
원예시설현대화	25,947	25,947	13,356	13,356	사업비 10%감축 및 사업개 편에 따른 내역 이관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26,044	19,244	21,115	21,115	공영도매시장시설 현대화 공 정률과 점검, 관계기관 협의 (기재부·지자체) 등을 반영하 여 총사업비 조정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4,800	4,800	-	-	23년 사업종료
과수무병묘목생산공급지원	2,450	2,450	2,450	2,205	- '22년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반영
축산자조금	23,400	23,400	22,230	22,230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반영
가축개량지원	52,498	52,498	52,974	52,428	지역단위개량지원 사업 감 축, 가공유용 젖소품종 유전 자원(수정란) 도입 증액
말산업육성지원	21,754	21,754	22,256	19,605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반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나. 분석 의견

### (1) 성과미흡 대책 마련 필요(재정사업자율평가)

예산 집행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낮다면, 성과관리 개선과 함께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농기자재산업육성(2260)은 세부사업 농기자재수출활성화 및 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로 구성된다. 농기자재수출활성화는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국 현지시장 분석정보, 수출전략 정보 등 구축·제공 및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MAPs)을 운영하고,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수출준비 및 해외마케팅활동 수행을 위해 품목별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홍보자료 제작, 해외 박람회 참가 등 마켓테스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평가등급 ‘미흡’을 받아, 지출구조조정을 받았다.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예산		2023안 (B)	증감	
		본예산(A)	추경		(B-A)	(B-A)/A
2260 농기자재산업육성	2,233	2,009	2,009	101,808	99,799	4967.6
농기자재수출활성화 (2260-375)	2,233	2,009	2,009	1,808	△201	△10.0
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 급안정지원 (2260-377)	-	-	-	100,000	100,000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은 성과목표 달성도가 배점 대비 27.0%, 사업성과의 우수성이 배점 대비 25.0% 수준으로 평가되어 평가등급 ‘미흡’을 받았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농기자재산업육성)]

(단위: 점, %)

평가 지표	사업의적 정성	집행률 제고 노력	성과 목표 달성도	사업 성과의 우수성	제도 개선 노력	감점	가점	합계
배점(A)	10	30	40	10	10	-	-	100
점수(B)	9	26	10.8	2.5	8.67	0	0	57.0
B/A	90.0	86.7	27.0	25.0	86.7	-	-	57.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022, pp.657~662.

동 사업의 성과지표 및 달성도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수혜기업 수출실적 증대(%)’가 전년대비 △22%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대면영업 애로 등으로 수출실적 부진 및 목표치 미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9~2021회계연도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달성도]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18	2019	2020	2021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수혜기업 수출실적 증대(%)	0.7	전체 지원기업 금년 수출액-전년 수출액/전년 수출액 *100	목표	신규	신규	5	3
			실적	신규	신규	2.5	△22
			달성률 (%)	-	-	50.0	0.0
㉡수출정보서비스 만족도(점)	0.3	협회 및 수출기업 담당자 100명 대상 설문조사	목표	신규	70	85	87
			실적	신규	80.1	81.3	87.3
			달성률 (%)	-	114.4	95.6	100.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022, p.660.

농림축산식품부는 COVID19에 의해 성과가 저조하다는 입장이지만, 동 사업의 실적집행률은 90% 대를 유지하고 있다. 예산 집행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낮다면, 성과관리 개선과 함께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평가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면서 타 내역을 과도하게 증액(보조사업 연장평가)

2022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감축’ 판정을 받은 사업 중 평가 결과를 예산안에 감액 반영하는 대신에 타 내역사업을 감액 규모 이상으로 증액하는 등 평가결과의 예산 환류를 우회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의 경우, 일정수준(10% 이내)예산 감축을 권고 받은 “친환경생산자유통조식품육성(16억원)”과 “비상품화농산물자원화센터지원(30억원)” 사업을 2023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대신에 타 내역사업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사업을 114억 9,400만원 증액하는 등 전체 세부사업 예산을 40억원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의 당초 평가 결과에서는 감축대상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3년간 단계적 감축(10% 이내)을 제안하였으나, 농식품부는 해당 내역사업을 모두 종료시키는 대신에 감액 범위(46억원)보다 2배 이상 상회하는 예산을 타 내역사업에 편성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전통발효식품육성’의 경우, 내내역 사업인 “전통발효식품육성플랫폼 구축” 사업(2022년 450백만원) 종료에 따른 예산 감축을 권고 받아 해당 내역을 감액하였으나, 유사한 형태의 내내역 사업인 “발효식품산업플랫폼 구축”(2023년도 1,450백만원)에 10억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타 내역사업인 ‘김치산업육성’ 사업을 45억 7,000만원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6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sup>11)</sup>

이와 같이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감축 대상인 사업에 대하여 내역사업간 예산 조정을 통해 실제 세부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통한 예산 감축 효과를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1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증액된 내역의 대부분이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연차사업으로 연차별 소요분의 반영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2022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감축' 대상 사업 중 과도한 증액 사업 현황]

(단위: 억원)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예산		연장평가 결과
		2022	2023안	
농식품부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318	358	'친환경생산자유통조식육성' (16억원) 및 '비상품화농산물자원화센터지원' (30억원)은 2023년~2025년 동안 일정수준 감축 필요
농식품부	전통발효식품육성	119	170	2023년 이후 내내역 사업 중 '전통발효식품육성플랫폼 구축' 사업 (2022년도 예산 450백만원)은 2023년 이후 폐지(일정수준감축)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2022)를 바탕으로 재작성

## 6. 해양수산부

###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2023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은 1조 605억원이며,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사업 예산안은 미확정이다.

R&D, 재난안전, 균형발전 평가대상 사업 예산은 각각 370억원, 1조 208억원, 29억원이다.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요구안	정부안
총예산	10,661	10,622	10,765	10,605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	-	-	-	-
디브레인 코드상 의무지출 예산	-	-	-	-
사실상 의무지출 예산	-	-	-	-
정보화 예산	-	-	-	-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 예산	-	-	-	-
R&D 평가 대상사업 예산	659	658	390	370
재난안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	9,974	9,935	10,348	10,208
균형발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	29	29	29	29

자료: 해양수산부

각 성과평가별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평가결과 '미흡'인 세부사업은 46개이며, 2023년 예산안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은 28개이며, 증가한 사업은 18개이다. 정부는 성과평가 결과 및 다양한 여건들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재정사업자율평가					
재해안전항만구축	144,699	124,799	90,549	90,549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반영 등
태풍피해복구	28,502	23,402	3,213	3,213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반영 등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 건립	11,812	1,012	5,715	5,715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반영 등
항만지하시설물정보구축(정 보화)	387	387	387	387	-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정 보화)	513	513	461	430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반영 등
수산물자조금지원	3,615	3,615	3,165	3,165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반영(감축)
부산북항 재개발	81,887	62,587	33,195	33,195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반영 등
기타항만 재개발	12,767	12,747	8,297	7,997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반영 등
수산물측	3,531	3,531	3,531	3,531	해당없음 (성과관리 개선대상)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259	259	333	333	양식관리실태조사 26백만 감액('22예산의 10%) (신규) 100백만원 증액
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	9,265	9,265	8,839	8,839	집행 부진사업 예산 감축
극지정책및극지활동역량강화	1,575	1,575	1,536	1,497	지출구조조정
해양영토관리역량강화	2,049	2,021	3,049	3,049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관리 예 산 반영
해양조사정보(정보화)	2,605	2,605	2,605	2,396	기능개발대상 및 전산장비 도 입 감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
자율관리어업육성	6,972	-	6,275	6,275	평가('22) 미흡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
수협지도경제사업 활성화	4,552	4,552	3,834	3,634	내역사업 1개 종료(완료)
국가어항(제주)	6,940	6,940	10,240	10,240	연차소요 예산 및 신규설계 반영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해상교통안전시스템 운영	1,726	1,726	2,329	2,329	AIS 운영국-국정자원 간 비상 회선망 구축 운영
여객터미널 운영	7,094	7,094	7,247	7,247	인건비 증액
항만보안시설 확충	7,429	7,417	7,490	7,490	의무지출 사업으로서 전년 수 준 유지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62,197	34,197	32,197	31,099	21~'22년 집행수준 및 보조금 신청 경유 사용량 추이 반영
재난안전사업 평가					
일반항	87,981	87,981	106,905	108,505	연차소요 및 적정 집행가능 사업비 반영 등
항만시설유지보수(총액)	19,035	19,035	17,131	17,131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반영 등
보조사업연장평가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20,631	20,631	18,735	18,568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코로나19 한시적 지원 감액
천일염포장재지원 산지종합처리장설비지원	4,285	4,285	4,200	4,200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반영
해기사글로벌역량강화	464	464	180	180	(해사영어 사업) 22년 종료 등
수산ICT 융합 지원사업	720	720	640	640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른 감축
연근해어선감척	120,446	120,446	134,078	134,078	전년대비 탄소중립, 어촌소멸 위기, CPTPP 가입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감척사 업 예산 증감
전기추진기보급 양식장태양광발전설비지원	24,758	24,758	25,138	22,229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반영(감축)
수산물자조금지원	3,516	3,516	3,165	3,165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반영(감축)
수산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21,828	42,879	63,028	63,028	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 출 결정(23. 상)으로 인해 상생 할인지원사업 예산 증액
대량생산기술개발	4,410	4,410	10,519	10,519	질병 임상연구 시설 구축을 위 한 공사비 반영(9,529백만원)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유통단계위생안전체계구축	2,300	2,300	9,618	9,618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 연 차소요 반영, 수산물 도매시장 냉동냉장창고 구축(가락, 대구 북부) 반영 등
제주항	5,353	5,353	2,500	2,500	보조사업 연장 평가 결과 반 영 등
내수면 인공산란장조성 내수면스마트양식장시범단 지조성 국가어도종합관리체계구축 (뱀장어도개발-모니터링)	18,799	18,799	17,859	14,084	지적된 인공산란장조성사업 감액 편성 등
수산물해외시장개척 등 17개	40,980	40,980	41,522	40,062	관련성이 높은 세부사업으로 일부내역사업을 이관하여, 사업규모감축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65,881	65,881	66,513	66,513	내역사업 "수산자원증대" 사업 중 내내역사업인 "연안바다목 장" 일몰에 따른 사업예산 감축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4,552	4,552	3,834	3,634	내역사업 1개 종료(완료)
어촌산업융복합지원, 어촌 관광활성화	10,381	10,381	9,608	9,064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반영 (감축)
제주일반항건설	12,914	12,914	13,510	11,623	보조사업 연장 평가 결과 반 영 등
해양관광인프라조성사업, 해양관광콘텐츠개발 지원, 해양레저스포츠활성화	58,802	48,642	57,431	56,931	(증감사유) 내역사업 추진경과 에 따른 해양관광인프라 예산 등 감축('22년 51,940백만원 ->'23년 49,269백만원)
화순항	9,935	9,935	7,875	7,875	보조사업 연장 평가 결과 반 영 등
일자리사업평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35,654	35,654	36,300	36,300	'바다환경지킴이'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11억원 감액(전년대비 10%) 어구부표보증금제 시행소요예 산반영 23억 증액 등으로 인 해 해당 세부사업 정부안이전 년대비 증액 편성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	1,150	1,150	1,440	1,310	일자리 평가 내역사업 2개 중 '청년해기인력기반 강화'* 사업 감액, 나머지 사업은 양호 * 상기 내역사업 예산 감액 ( '22년 400 → '23년 360백 만원, 10% 감액)신규내역사 업인 '선원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10백만원 증액 으로 인해 해당 세부사업 정 부안이 전년대비 증액 편성
스마트항만 전문인력양성지원	320	320	296	296	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지 원 내역사업인 교육훈련장비 임대료는 교육지원 사업의 공 익성 등을 감안하여 임대료 인하(180→81백만원) 교육훈련 장비 임대료 국비 25%지원('22년 45→'23년 21백만원) 교육훈련장비 임대료인하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24백만원 예산 감액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수산물수매지원(옹자)	65,370	85,370	115,370	115,370	수산물 물가안정 등 지원을 위해 500억원 증액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 의견: 사업 개선 권고의 미반영(기금준치(개별사업의 적정성)평가)

기금준치평가(개별사업 적정성) 결과 사업폐지, 축소 등을 권고 받았으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평가 후속조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산발전기금 ‘노후소형유조선현대화’의 경우, 사업효과가 충분하지 않고 예산 집행행률이 저조하여 2024년말 종료예정인 사업의 조기 폐지를 권고하였으나 2023년 계획안에 2022년 계획액 대비 50%를 감액한 11억 2,500만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폐지 미반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금	세부사업명	2022 계획	2023 계획안	증감액	증감률
수산발전기금	노후소형유조선현대화	2,250	1,125	△1,125	△50.0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수산발전기금 ‘비축사업’ 및 ‘우수수산물지원’의 경우, 기금준치평가(개별사업의 적정성) 결과 사업 축소(감액)에 해당하는 개선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2023년도 계획안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축사업’의 경우, 성과 결과가 2020년 목표(비축 물량)와 2021년 목표(6개 대중성어종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를 달성하지 못하여 사업축소를 요구하였으나 2022년 대비 130.5%(990억 9천만원) 증액 편성되었다.

‘우수수산물지원’은 최근 3개년 성과 결과(지원업체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액)가 당초 설정된 목표치에서 지속적으로 미흡하고, 실적이 하향추세를 유지하여 사업 축소를 요구받았으나 2022년과 동일한 1,324억 1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개선(사업 축소) 미반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금	세부사업명	2022 계획	2023 계획안	증감액	증감률
수산발전기금	비축사업	75,910	175,000	99,090	130.5
	우수수산물지원	132,401	132,401	0	0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이와 같이 기금존치평가(개별사업 적정성) 결과 사업이관, 폐지 또는 축소를 요구받은 사업 중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업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므로, 평가 결과의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7. 중소벤처기업부

###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은 13조 5,619억원이며,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안은 12조 2,925억원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이 부적정한 의무지출, 사실상 의무지출<sup>12)</sup> 및 총사업비관리 대상 규모<sup>13)</sup>는 각각 4,915억원, 4,915억원, 13억원이다.

R&D, 재난안전, 균형발전 평가대상 사업 예산은 각각 847억원, 139억원, 3,499억원이다.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요구안	정부안
총예산	188,412	600,510	149,929	135,619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	152,494	588,048	137,410	122,925
디브레인 코드상 의무지출 예산	26,352	77,852	4,915	4,915
사실상 의무지출 예산	26,352	77,852	4,915	4,915
정보화 예산	682	682	862	601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 예산	12	12	13	13
R&D 평가 대상사업 예산	872	872	847	847
재난안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	226	226	139	139
균형발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	4,892	4,732	3,782	3,49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2) 기획재정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 2022, p.6.

사실상 의무지출 : 법령 규정 및 국가간 계약 등에 따른 사업 등

13) 기획재정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 2022, p.7.

\* 의무지출, 국정과제,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연부액 계획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한 사업

각 성과평가별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평가결과 '미흡'인 세부사업은 32개이며, 2023년 예산안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은 25개이며, 증가한 사업은 7개이다. 정부는 성과평가 결과 및 다양한 여건들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재정사업자율평가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정보화)	6,573	6,573	4,828	4,828	지출구조조정
마케팅지원사업	26,458	26,458	24,248	24,248	지출구조조정
공공구매제도운영	7,967	7,967	8,177	7,728	지출구조조정
글로벌협력기반구축	1,864	1,864	1,864	1,845	지출구조조정
온라인수출플랫폼(정보화)	3,684	3,684	3,649	3,449	지출구조조정
중소기업정보제공	1,967	1,967	1,948	1,948	지출구조조정
기업인력애로센터활용 취업 지원	9,003	9,003	8,916	8,916	지출구조조정
소상공인지원(융자)	420000	350820	300000	300000	지출구조조정
균형발전사업 평가					
산학협력거점형 플랫폼사업(R&D)	5,625	2,620	-	-	사업종료
보조사업연장평가					
창업인프라지원(제주)	887	887	137	137	23년 균특지역지원계정에 서 균특지역자율계정으로 변경
지역기반로컬크리에이터활 성화	6,903	6,903	5,444	5,444	로컬크리에이터지원 물량 축소를 통한 감액
장애인기업육성	12,875	12,875	10,347	10,347	전년대비 △ 2,528 감액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	61,805	61,805	55,805	55,805	지원기업 수 축소
중소기업 협동조합육성	17,269	17,269	17,231	16,531	역량강화 교육과정 개편 및 공동사업 컨설팅 지원 조합 수 조정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벤처기업경쟁력강화	7,122	7,122	8,147	6,796	벤처확인기관의 수수료 예산감소, 소셜벤처활성화 예산 감소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1,591	1,591	1,351	1,351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사 업비 감액(△240)
소상공인성장지원	146,278	<del>354,738</del>	141,654	141,654	(감축)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소규모 감 축
소상공인지원인프라	31,445	31,445	58,308	26,247	한시적 사업 예산 감액 및 사업 조정에 따른 감액
시장경영혁신지원	430,243	430,243	383,207	355,148	사업이관으로 인한 감액 등 (주차환경개선(△ 39,744), 상권활성화(△ 25,803))
일자리사업평가					
소상공인창업지원	315	315	312	312	전년동일 수준 예산 반영
산학협력인력양성	34,500	34,438	30,750	30,750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반 영 및 지원규모축소
여성기업육성	3,956	3,956	9,705	9,705	정책환경 변화를 감안하 여 증액, 여성기업 인력지 원 내역사업 내 신규사업 (미래여성인재육성) 반영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연수사업	21,852	21,852	24,765	22,729	연수원 안전사고 예방, 시 설 보수 증액 및 스마트 혁신러닝플랫폼 구축 신 규반영
기업인력애로센터활용 취업지원	9,003	9,003	8,916	8,916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감액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228,033	222,871	252,870	252,870	민간주도 투자연계형 R&D 확대에 따른 증액
창업인프라지원	74,058	61,058	10,563	9,563	국정과제 수행 등을 위한 예산 조정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창업저변확대 (창업기업지원서비스바우처)	42,042 (12,134)	42,042 (12,134)	23,808 (-)	22,359 (-)	창업기업지원서비스바우 처 사업 종료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88,702	88,647	91,084	91,084	물류지원예산 및 수출지원 센터 운영예산 증액
비대면서비스플랫폼구축	41,239	41,239	21,239	15,248	지원기업 축소에 따른 감액
소상공인스마트상점기술보급	77,000	96,250	286,264	104,800	소상공인의 서비스·경영혁 신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기술 보급 확대
기술혁신기반조성	17,420	17,362	18,334	16,288	내역사업 이관 감액 및 기 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신 규 사업 반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나. 분석 의견

### (1) 평가 결과 대비 지출구조조정 반영액 미흡(기금운용(사업운영부문)평가)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의 지출구조조정 반영액이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평가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경우, 2021회계연도 평가에서 4개 사업이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기업인력애로센터 운영’, ‘온라인수출지원(정보화)’, ‘중소기업정보제공’, ‘해외산업협력지원’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4개 사업은 모두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되어 2023년도 예산안에 감액 반영되었으나, ‘온라인수출지원(정보화)’ 사업(6.4% 증)을 제외하고는 감액 규모가 1% 수준으로 지출구조조정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 ‘미흡’ 사업의 예산안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계획	2023 계획안	증감액	증감률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9,003	8,916	△87	△1.0
온라인수출지원(정보화)	3,684	3,449	△235	△6.4
중소기업정보제공사업	1,967	1,948	△19	△1.0
해외산업협력지원	1,864	1,845	△19	△1.0

자료: 중소기업부 제출자료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큰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2022년 9,003백만원) 사업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만 3억원 감액하고 그 밖에 내역은 증액 또는 전년 동으로 편성하여 8,700만원을 감액하는데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정보제공사업’의 경우, 지출구조조정 사유로 타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역할 분담, 사업 성과지표 개선 등 전반적인 사업성과의 제고를 주문하고 있는 반면, 지출구조조정 계획에는 예산의 1% 삭감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산업협력지원’의 경우에도, 2021년 결산 국회 지적사항으로 감점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환류조치가 소극적이라는 평가에 따라 제도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예산 18억 6,400만원 중 1,900만원을 감액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체 예산의 1%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 과연 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를 통한 제도 개선의 실익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2) 평가 결과의 예산안 연계 미흡(일자리사업평가)

**평가 결과가 2023년도 예산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나타나고 있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육성’의 경우, 일자리 창출 수준이 높지 않고 추가적인 성과분석 데이터가 부재하여<sup>14)</sup> 감액 판정을 받았으나,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동으로 편성되었다.

‘소상공인창업지원’의 경우에도, 타 창업지원 사업에 비해 지속고용사업장비율과 고용창출기업 비율이 저조하며, 지원 이후 생존율과 휴·폐업자의 고의실패 사유 파악 등 사후관리 모니터링도 미흡하여 감액 판정을 받았으나, 전년과 대등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감액 미반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022 예산	2023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육성	3,956	3,956	0	0
	소상공인 창업지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315	312	△3	1.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4) 여성기업 육성 사업은 창업공간 238개 실을 제공하고 있으나 2020년도 고용실적이 305명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창출된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8. 국토교통부

###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20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55조 8,885억원이며,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안은 미확정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이 부적정한 의무지출, 사실상 의무지출<sup>15)</sup> 및 총사업비관리 대상 규모<sup>16)</sup>는 각각 4조 7,086억원, 5조 8,880억원, 7조 2,596억원이다.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요구안	정부안
총예산	600,682	585,099	584,307	558,885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	386,693	377,616	평가대상 미확정	평가대상 미확정
디브레인 코드상 의무지출 예산	41,500	41,501	47,634	47,086
사실상 의무지출 예산	52,587	52,406	61,645	58,880
정보화 예산	1,227	1,227	1,264	1,094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 예산	94,303	90,038	83,630	72,596
R&D 평가 대상사업 예산	87,693	87,693	평가대상 미확정	평가대상 미확정
재난안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	44,780	44,780	평가대상 미확정	평가대상 미확정

자료: 국토교통부

각 성과평가별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평가결과 '미흡'인 세부사업은 50개이며, 2023년 예산안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은 31개이며, 증가한 사업은 19개이다. 정부는 성과평가 결과 및 다양한 여건들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15) 기획재정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 2022, p.6.

사실상 의무지출 : 법령 규정 및 국가간 계약 등에 따른 사업 등

16) 기획재정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 2022, p.7.

\* 의무지출, 국정과제,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연부액 계획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이 불가능한 사업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재정사업자율평가					
신촌-회촌구국대도건설	6,573	6,573	1,600	1,600	연차별 투자배분에 따른 예산편성
중산간도로(와산-선흥) 선형개량사업	3,000	3,000	3,800	3,800	연차별 투자배분에 따른 예산편성
광령-도평 우회도로건설	986	986	16,829	16,829	연차별 투자배분에 따른 예산편성
제주구국도유지관리	31,903	31,903	31,273	31,273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적기에 보수하여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해 위해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2.0% 감액)
건축정책종합연구	300	300	300	300	
건축문화진흥	6,620	6,620	5,920	4,820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
도시건축박물관운영	1,311	1,311	7,323	7,323	연차별 박물관자료 확보 목표에 따라목표 수량이 확대되어 이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및 기타 제반 경비 증가
노후산단재생지원(용자)	60,000	60,000	75,000	75,000	기승인 사업장 용자 수요 반영
도시재생씨앗용자	85,612	85,612	81,900	59,928	불용 최소화를 위해 과거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물량 반영
가로주택정비사업	267,500	267,500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통합
자율주택정비사업	50,000	50,000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통합
도로병목지점개선사업	151,542	151,542	190,580	136,388	보상 및 집행률 등 사업추진 현황을 고려한 실질행 소요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통합공공임대지원용자	965,615	965,615	1,209,263	1,190,088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 지원단가 상향 등으로 증액 편성
철도기본계획수립	10,150	10,150	7,030	7,030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반영
철도산업발전지원	6,178	6,178	5,560	5,560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반영
철도핵심인력양성	1,830	1,830	1,700	1,647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반영
다가구매입임대출자	3,346,700	3,346,700	3,050,050	2,889,300	신규 공급대책 등에 따라 감액 편성
전세매입임대 경상보조출자	117,215	117,215	130,360	123,700	전세임대 재계약 수요물량 증가 등으로 인한 증액 편성
국민임대출자	340,161	240,161	219,221	219,221	재정사업 평가결과, 지자체, LH 수요 감소 등으로 감액 편성
영구임대출자	306,426	246,426	179,683	179,683	재정사업 평가결과, 지자체, LH 수요 감소 등으로 감액 편성
행복주택출자	1,095,258	1,035,258	684,607	684,607	재정사업 평가결과, 지자체, LH 수요 감소 등으로 감액 편성
임대주택리츠출자	335,610	335,610	355,600	422,110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 및 목표물량 확대 등으로 증액 편성
통합공공임대출자	857,477	857,477	1,091,271	1,070,374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 지원단가 상향 등으로 증액 편성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480,557	480,557	242,000	204,577	공기확보물량 및 입주자 대기현황 등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
국민임대주택지원용자	751,719	691,719	300,114	300,114	재정사업 평가결과, 지자체, LH 수요 감소 등으로 감액 편성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무안국제공항활주로연장	17,600	17,600	9,500	9,500	사업 진행상황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소요예산 반영
신안산선복선전철	230,103	230,103	243,506	230,103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별내선복선전철	146,500	146,500	79,328	79,328	23년 준공사업 (잔여예산 전액 반영)
도봉산-옥정복선전철	42,000	42,000	49,100	49,100	공사 본격 추진
옥정-포천철도건설사업	2,000	2,000	4,500	4,500	기본및실시시설계 추진
부전-마산광역철도	3,000	3,000	1,000	-	사전절차 미완료로 정부안 미편성
태화강-송정광역철도	2,100	2,100	-	2,000	교특->균특 회계이관
울릉도소형공항건설	114,000	114,000	108,000	85,474	건설사업 연차별 투자금 액 배분 기준 등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적정 소요예산 반영
흑산도소형공항건설	8,100	8,100	7,100	7,100	집행가능한 적정소요예산 반영
제주제2공항건설	42,500	42,500	28,300	17,286	전략환경 등 관계기관협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적정 소요예산 반영
새만금신공항건설	20,000	20,000	13,500	13,500	전략환경 등 관계기관협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적정 소요예산 반영
재난안전사업 평가					
주택성능보강	1,000	1,000	-	-	법정 시한 종료
철도교통관제시설 운영위탁	41,380	41,380	47,617	42,114	인건비 처우개선분 1.7%(+511백만원) 및 주 민세(+223백만원) 반영
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206,466	206,466	216,466	260,722	고속철도시설개량 증가물량 반영 등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53,402	53,402	110,397	74,854	노후시설 개선 시설물 물 량 반영 등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보조사업연장평가					
개발제한구역관리	161,341	161,341	161,341	154,841	일정수준감축
건축문화진흥	6,620	6,620	5,920	4,820	사업수요 감소에 따른 지원대상을 축소하고, 지원단가를 과거 사업종료시 집행율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등 일정수준 예산을 감축
광역BIS지원	2,268	2,268	2,268	2,000	광역단체 지원 및 구축 물량 조정
광역버스공공성 강화지원	37,835	37,835	64,187	58,092	경기도 일반광역버스 이관 등 준공영제 사업규모 확대, 광역버스 입석해소를 위한 증차지원 사업 규모 확대
물류산업지원	4,999	4,999	5,389	3,149	일정수준 감축
버스공영차고지지원	22,000	22,000	23,100	19,800	코로나19로 인한 실집행률 저조하여 전년대비 삭감
스마트시티기반구축	5,840	5,840	5,300	5,300	23년말 현 사업계약 종료에 따라 사업방식 변경으로 제도개선
철도핵심인력양성	1,830	1,830	1,700	1,647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반영
첨단도로교통체계	53,432	53,432	563,000	503,549	연장평가 결과 반영 (4.1% 감)
택시산업지원	5,353	5,353	5,953	4,833	23년예산안에대하여 재정당국에서전년도예산대비 9.7%감액조치

자료: 국토교통부

나. 분석 의견: 성과평가와 예산연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재정사업자율평가)

국토교통부는 지출구조조정 목표액이 △4,401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893억 원 증액하였으므로, 기획재정부는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따라 평가등급 ‘미흡’ 사업에 대하여 지출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에 따라 산출된 국토교통부의 지출구조조정 목표액은 △4,401억원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평가등급 ‘미흡’ 사업들의 예산을 893억원 증액하는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지출구조조정 총괄]

(단위: 백만원)

분야	평가 사업명	'22년 예산	지출구조조정계획	
			감액	예산 변동 내역 (증액 및 감액)
지출구조조정 목표		44,006,655	△440,067	목표금액
지출구조조정 계획		4,816,586	89,263	
일반 재정	도시경관및건축문화품격향상	8,231	6,519	
	광역철도건설지원(교특)	425,703	483,739	
	신공항건설(교특)	184,600	△40,086	
	일반공항건설	17,600	△8,100	
	제주구국도유지관리	31,903	△630	
	제주구국도건설	10,559	△1,055	
	도로병목지점 개선	151,542	△15,154	
	민자유치사업	833,439	2,998	
	철도정책지원	18,158	△1,816	
	도시기능증진지원	463,112	△6,780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제주)	0	0	타 사업으로 통합
주택 기금	통합공공임대지원용자	965,615	0	
	행복주택용자	1,618,814	△81,014	
	임대주택지원	6,879,404	△174,186	
	국민임대주택지원용자	751,719	△75,172	

자료: 국토교통부, 「2021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022, pp.103~106.을 바탕으로 제작성

국토교통부는 소관 사업들이 대부분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 등으로 지출구조조정

이 곤란한 사업들로 구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모든 부처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에 따라 성과평가와 예산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도 이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sup>17)</sup>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 상황이 특수하다면, 기획재정부는 부득이하게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7)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하는 순증감액 기준은 893억 증액이나, 단위사업내에 주요세부사업(22개)은 10%내외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총 4,625억 감액조정

## 9. 교육부

###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2023년 교육부 예산안은 101조 8,443억원이며,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안은 5조 163억원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이 부적정한 의무지출, 사실상 의무지출<sup>18)</sup> 및 총사업비관리 대상 규모<sup>19)</sup>는 각각 86조 7,293억원, 2조 2,796억원, 908억원이다.

R&D, 재난안전, 균형발전, 복권기금 평가 대상사업 예산은 각각 1,288억원, 2,238억원, 1조 8,664억원, 1,154억원이다.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요구안	정부안
총예산	896,252	1,004,963	1,050,243	1,018,443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	51,127	49,530	56,229	50,163
디브레인 코드상 의무지출 예산	745,130	854,984	882,926	867,293
사실상 의무지출 예산	22,212	22,195	23,723	22,796
정보화 예산	924	924	939	872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 예산	905	725	1,022	908
R&D 평가 대상사업 예산	1,241	1,241	1,288	1,288
재난안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	2,507	2,855	2,238	2,238
균형발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	12,647	12,647	23,437	18,664
복권기금 평가 대상사업 예산	1,061	1,061	1,154	1,154

자료: 교육부

복권기금의 경우 기재부 소관으로 총예산에 미포함

18) 기획재정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 2022, p.6.

사실상 의무지출 : 법령 규정 및 국가간 계약 등에 따른 사업 등

19) 기획재정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 2022, p.7.

\* 의무지출, 국정과제,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연부액 계획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한 사업

각 성과평가별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평가결과 '미흡'인 세부사업은 30개이며, 2023년 예산안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은 14개이며, 증가한 사업은 8개이다. 정부는 성과평가 결과 및 다양한 여건들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재정사업자율평가					
[300]고객지원 (사립학교연금지급)	2,136	2,136	2,068	2,068	지출구조조정
[300]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14,616	14,616	20,597	20,597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사업
[500]특수교육 정보화 지원(정보화)	1,268	1,268	1,271	1,269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사업
[650]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수입대체경비)	694	694	745	701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사업
[300]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21,000	21,000	-	-	지출구조조정
[301]대학교육프로그램 평 가인증 지원	2,250	2,250	2,132	2,025	지출구조조정
[306]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11,933	11,933	11,325	11,325	지출구조조정
[308]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1,201	1,201	1,141	1,141	지출구조조정
[311]대학진로탐색 학점제 지원	1,200	1,200	1,900	1,050	지출구조조정
[315]대학 내 양성평등 확 산 및 성희롱 성폭력 근절 지원	391	391	493	491	지출구조조정
[317]대학 온라인강의 지원	6,200	6,200	6,150	5,580	지출구조조정
[319]대학평생교육원 강좌개설 지원	830	830	-	-	지출구조조정
[320]사학혁신 지원사업	5,059	5,059	4,704	3,099	지출구조조정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321]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2,900	2,900	3,265	2,900	지출구조조정
[301]서울회관재건축 (사립학교연금기금)	40,636	40,636	77,434	77,434	연도별 지출소요가 확정된 총사업비 관리사업
[300]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155,500	127,500	146,857	127,500	지출구조조정
[301]중앙취업지원 센터 운영 지원	2,200	2,200	2,200	2,200	지출구조조정
[302]현장실습 기업 현장교육 지원	20,500	14,500	14,500	14,500	지출구조조정
[304]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1,750	1,750	1,750	1,750	지출구조조정
[300]사립학교 교육환경개 선 자금용자 (사학진흥기금)(용자)	100,722	100,722	88,522	88,522	지출구조조정
[301]행복기숙사지원사업 (사학진흥기금)(용자)	83,728	83,728	70,733	70,733	지출구조조정
[300]교육정책이해도제고	2,241	2,241	2,491	2,405	삭감시 사업 추진이 어려 운 세부사업 포함
[301]교육행정감사지원	1,119	1,119	1,295	1,147	삭감시 사업 추진이 어려 운 세부사업 포함
[306]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323	323	337	323	삭감시 사업 추진이 어려 운 세부사업 포함
[307]학술원 국제학술 교류 및 학술진흥지원	730	730	709	709	삭감시 사업 추진이 어려 운 세부사업 포함
[313]사회정책 조정역량 강화	800	800	1,100	1,100	삭감시 사업 추진이 어려 운 세부사업 포함
균형발전사업 평가					
학교기업지원사업	6,672	6,672	6,672	6,672	증감없음
보조사업연장평가					
대학교구조개혁 지원	4,750	4,750	4,500	3,845	감축 (23년 이후, 높은수준)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	400	400	400	400	22년 신규사업
이러닝세계화(ODA)	2,995	2,995	2,901	2,730	2022년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일정수준)반영

자료: 교육부

## 나. 분석 의견

### (1) 사업추진 방식 변경에 의한 집행률 제고 필요(재정사업자율평가)

고졸취업활성화지원은 취업한 학생에게 바로 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취업자수 변동에 따라 집행률이 달라지게 되므로, 성과와 예산 연계만 고려하기 보다 사업시행구조를 변경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졸취업활성화지원(4606)는 세부사업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고졸 취업희망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 사업',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사업'으로 구성된다.

동 사업은 '집행률 제고 노력' 30점 만점에 12점을 받아 총점 80점으로 평가등급 '미흡'을 받아, 2023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7.8% 감액된 1,502억원으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취업한 학생에게 바로 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취업자수 변동에 따라 집행률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의무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을 반납해야 한다.

따라서 의무근무기간 종료 후 차년도에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예산 불용 및 장려금 반납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2023년 예산안은 일부 감액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안 총괄]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예산		2023안 (B)	증감	
		본예산(A)	추경		(B-A)	(B-A)/A
4606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199,298	182,733	148,733	150,215	△32,518	△17.8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4606-300)	166,900	155,500	127,500	127,500	△28,000	△18.0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4606-301)	2,200	2,200	2,200	2,200	-	-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 지원(4606-302)	20,500	20,500	14,500	14,500	△6,000	△29.3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4606-304)	1,750	1,750	1,750	1,750	-	-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4606-306)	-	2,783	2,783	4,265	1,482	53.3
고졸취업희망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 (4606-307)	6,000	-	-	-	-	-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4606-308)	1,948	-	-	-	-	-

자료: 교육부

(2) COVID19 영향에 의한 집행률 부진(재정사업자율평가)

COVID19에 의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집행률로만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육부는 집행률 보다는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중심으로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2861)은 사학진흥기금사업으로 세부사업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사학진흥기금)(융자)', '행복기숙사지원사업(사학진흥기금)(융자)',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융자)'로 구성된다.

[계획안 총괄]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계획		2023안 (B)	증감 (B-A)	(B-A)/A
		당초(A)	수정			
2861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	117,547	184,450	184,450	159,255	△25,195	△13.7
사립학교교육환경개선 자금용자(용자) (2861-300)	81,528	100,722	100,722	88,522	△12,200	△12.1
행복기숙사지원사업(용 자)(2861-301)	35,679	83,728	83,728	70,733	△12,995	△15.5
사립대학시간강사처우개 선(용자(2861-302))	340	-	-	-	-	-

자료: 경찰청

동 사업은 ‘집행률 제고 노력’ 30점 만점에 12점을 받아 총점 83점으로 평가등급 ‘미흡’을 받았다. 교육부는 집행률이 저소한 사유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학기관 재정이 악화되어 ①교육환경 개선 투자 여력 저하로 배정포기교가 발생, ②사립학교들의 비대면 교육방식으로의 전환 검토로 인해, 기숙사 건립을 전면 보류 등의 사유로 사업 수요가 급감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sup>20)</sup>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 집행률]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집행률	98.3	100.0	95.4	51.1

자료: 교육부, 「2021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022, p.125.

아래 [표]와 같이, 교육부는 ‘집행률 제고 노력’ 평가기준을 집행률 및 실집행률로 설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집행률 제고 노력’이 아닌 집행률만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OVID19에 의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집행률로만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부는 집행률 보다는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중심으로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 교육부, 「2021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022, p.125.

[부처별 '집행률 제고 노력' 평가 기준]

구분	평가 지표 및 기준										
교육부 (배점 30)	<input type="checkbox"/>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을 확인(17~30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배점</th> <th style="width: 50%;">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예(30점)</td> <td>'21년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100% 이상 집행된 경우</td> </tr> <tr> <td>상당한 정도(27~23점)</td> <td>'21년 집행률 90%(실집행 80%) 이상인 경우</td> </tr> <tr> <td>어느 정도(17~13점)</td> <td>'21년 집행률 75%(실집행 65~80%) 이상인 경우</td> </tr> <tr> <td>아니오(12~3점)</td> <td>'21년 집행률 75%(실집행 65%) 미만인 경우</td> </tr> </tbody> </table>	배점	기준	예(30점)	'21년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100% 이상 집행된 경우	상당한 정도(27~23점)	'21년 집행률 90%(실집행 80%) 이상인 경우	어느 정도(17~13점)	'21년 집행률 75%(실집행 65~80%) 이상인 경우	아니오(12~3점)	'21년 집행률 75%(실집행 65%) 미만인 경우
	배점	기준									
	예(30점)	'21년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100% 이상 집행된 경우									
	상당한 정도(27~23점)	'21년 집행률 90%(실집행 80%) 이상인 경우									
어느 정도(17~13점)	'21년 집행률 75%(실집행 65~80%) 이상인 경우										
아니오(12~3점)	'21년 집행률 75%(실집행 65%) 미만인 경우										
기획재정부 (배점 30)	<input type="checkbox"/>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 조직개편, 환율변동, 사업방식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실적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li> <li>* 지자체 자본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 집행률로 평가</li> </ul> <input type="checkbox"/> 가점 및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례적 이불용 사업인 경우 감점(△5)</li> <li>* 집행률이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3년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인 경우</li> </ul> ※ 이외 분기별 집행계획 준수 등 가감점 항목은 부처별 자체 수립·활용 가능										

자료: 각 부처 「2021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 10. 문화체육관광부

###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은 6조 7,077억원이며,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안은 5조 7,933억원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이 부적정한 의무지출 및 총사업비관리 대상 규모<sup>21)</sup>는 각각 61억원, 2,270억원이다.

R&D, 재난안전, 균형발전, 복권기금 평가 대상사업 예산은 각각 342억원, 129억원, 944억원, 3,208억원이다.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요구안	정부안
총예산	73,969	74,571	75,468	67,077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	61,703	62,339	65,683	57,933
디브레인 코드상 의무지출 예산	57	57	65	61
사실상 의무지출 예산	-	-	-	-
정보화 예산	756	754	900	770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 예산	2,637	2,106	2,449	2,270
R&D 평가 대상사업 예산	336	336	342	342
재난안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	128	128	159	129
균형발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	740	740	1,075	944
복권기금 평가 대상사업 예산	3,058	3,245	3,208	3,20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1) 기획재정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 2022, p.7.

\* 의무지출, 국정과제,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연부액 계획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한 사업

각 성과평가별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평가결과 '미흡'인 세부사업은 73개이며, 2023년 예산안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은 42개이며, 증가한 사업은 26개이다. 정부는 성과평가 결과 및 다양한 여건들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58,598	56,368	79,920	79,920	공무직 인건비 이관, 상설전 시설 안전시설 강화 예산 등 반영
국립지방박물관 운영	72,627	70,793	71,407	57,959	공무직 인건비 이관, 지방박 물관 전시실 안전시설 강화 예산 등 반영
박물관문화재단지원	4,278	4,278	5,860	3,850	일부 사업예산 감액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	7,736	1,533	11,613	11,613	총사업비 계획에 기초한 예산 반영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6,255	6,255	3,323	3,323	총사업비 계획에 기초한 예산 반영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건립	9,673	9,673	9,586	9,586	총사업비 계획에 기초한 예산 반영
국립부여박물관 백제 국보관 건립	543	543	2,330	2,330	총사업비 계획에 기초한 예산 반영
국립대구박물관 복식문화관 건립	0	0	440	440	총사업비 계획에 기초한 예산 반영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 지원	300	300	3,616	3,616	총사업비 계획에 기초한 예산 반영
국립나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지원	3,135	3,135	15,743	4,723	총사업비 계획에 기초한 예산 반영
박물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정보화)	1,774	1,774	2,921	1,982	공무직 인건비 이관, 노후장 비 교체비 등
박물관미술관진흥지원	22,944	22,924	20,416	17,060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 구조조정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자율)	0	0	19,954	19,954	일반회계 내내역사업에서 균 특회계로 사업 이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제주)	0	0	811	811	일반회계 내내역사업에서 균 특회계로 사업 이관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세종)	0	0	540	540	일반회계 내내역사업에서 균 특회계로 사업 이관
문화중심도시조성 및 운영	15,499	15,483	10,459	7,853	문화전당주변도로사업 종료, 문화중심도시육성펀드 감액
문화중심도시육성 (지자체)	44,443	44,443	43,527	43,527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공사 비 등 감액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62,524	61,156	67,889	64,505	아시아문화전당재단 지원사업 확대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558	468	461	461	평가결과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아시아문화역량강화지원사 업(ODA)	800	800	1,600	1,600	수원국(라오스, 키르키스스 탄)지원범위 확대
옛 전남도청 복원	8,718	8,588	15,626	15,583	총사업비 계획에 기초한 예산 반영
아시아문화포털구축 (정보화)	1,080	1,080	1,242	1,080	-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39,206	39,078	48,221	48,221	강사 퇴직금 지급, 학습장 시 설 및 공연장 환경개선 등
해외예술계인력양성(ODA)	1,000	1,000	1,061	1,061	한국어 향상 및 우수장학금, 졸업작품 지원금 신설 등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	1,137	1,137	1,957	1,325	SW 구입수량 현실화, 학사행 정시스템 웹표준 준수 등
국립국악원 운영	44,911	44,132	56,513	56,135	공무직 인건비 이관, 고효율 에너지 무대조명 구매 등 반 영
국립지방국악원 운영	21,118	20,950	20,518	16,704	평가 결과에 따른 지출구조조 정 등
부산국악원 교육체험관 건립	7,957	7,957	1,500	1,500	총사업비 계획에 기초한 예산 반영
국악원정보시스템 환경구축(정보화)	2,048	1,948	2,030	1,912	공무직 인건비 이관
미디어산업기반구축	2,215	2,205	2,106	1,916	평가결과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32,800	32,800	32,800	27,860	평가결과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지역신문발전지원	8,264	8,264	8,625	8,251	평가결과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관광산업 융차지원(융자)	649,000	549,000	526,600	449,100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미흡) 에 따라 지출구조조정 반영
관광산업 융차지원 (신용보증기관 출연)	10,000	10,000	10,000	10,000	-
국제체육교류 지원	18,429	18,429	14,614	13,655	국제대회 참가 수요 감소에 따른 감액
도핑방지활동지원	9,251	9,251	10,477	10,071	도핑검사법 신규 도입에 따른 증액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18,500	18,500	34,360	34,360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한 증액
태권도 진흥	16,441	16,441	17,166	16,097	일부 내내역 사업 종료 및 축 소 운영 등
태권도진흥재단 운영 (보조) 지원	18,636	18,636	19,116	19,1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근거, 태권도원 에너지저장장치 설 치에 따른 증액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	7,444	7,444	7,868	7,377	일부 내내역 사업축소 운영
전국(소년)체전지원	31,950	31,950	27,040	27,040	평가결과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재난안전사업 평가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1,358	1,358	1,957	1,358	증감없음
보조사업연장평가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4264-300)	6,145	6,145	5,669	5,465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내역 사업의 '23년 예산의 일정수 준 감축 등
관광활성화기반구축 (4462-300)	14,181	14,181	14,681	13,611	예산감축(관광두레, 630백만 원 감)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5163-300)	204,038	204,038	175,046	168,373	'23년 예산 정부안 감축 반영
영화제작지원 (1261-300)	10,642	10,642	14,396	14,396	감축 지적사업 폐지 완료, 감 축 지적사업의 증액
예술창작지원 (1761-300)	4,000	4,000	3,450	3,450	'22년 대비 '23년 정부안 550백만원 감축(△13.7%)
종교문화활동지원 (1131-300)	23,396	23,347	22,058	21,605	'23년 예산편성시 반영 23,396백만원('22) → 21,605백만원('23)(△1,791 백만원, △7.7%)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국학진흥정책기반조성 (1533-301)	18,687	18,687	17,753	16,818	(감축) '22년 대비 '23년 정부안 10% 감축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 (5161-301)	132,807	132,807	140,712	139,148	'24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자체 경비부담 비율 상향 검토 중
예술인력육성 (1761-301)	1,584	1,584	1,426	1,426	'22년 대비 '23년 정부안 158백만원 감축(△10%)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1131-301)	8,717	8,717	6,160	5,584	'23년 예산편성 시 반영
동학농민혁명정신선양 (1533-302)	6,009	6,009	5,637	4,656	(감축) 3개 내역사업 이행 완료
한스타일육성지원 (4362-302)	1,300	0	0	0	평가결과 반영하여 '한식당 한국적 이미지 강화' 내역사업 폐지
실감형콘텐츠산업육성 (1232-303)	500	500	-	-	지적받은 내역사업 '정읍사 공원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23년 예산 삭감
전통생활문화진흥 (1533-303)	2,289	2,289	1,675	1,675	(감축) 전통문화 인성교육 (△409백만원) 등
해외공공도서관조성(ODA) (2131-303)	1,754	1,754	2,034	780	23년 예산(정부안) 감축 반영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4264-304)	4,164	4,164	5,248	3,747	(감축) '22년 사업성과지표 개선 및 '23년 예산 감액 (해당 내역사업(축제 경쟁력 강화) 전년대비 1,114백만원 감액)
전통스토리계승및활용 (1533-304)	15,008	15,008	13,507	13,507	(일정수준 감축) 지적된 내역사업(이야기할머니 인력양성 및 활동지원 '22년 15,008백만원 > '23안 13,507백만원(△1,501백만원) 감축목표 달성)
양성평등문화확산 (문체부) (7132-305)	100	100	90	90	감축 평가 해당사업인 성희롱 성폭력 예방 행동강령 개발 사업의 10% 감축
예술의산업화추진 (1633-306)	34,456	34,456	34,196	30,654	22년 예산 대비 '23년 예산 조정안 기준 3,085백만원 (11.0%)감축 편성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전통문화창업 및 융합활성화 (1533-306)	500	500	400	400	(감축) 전통문화 전문인력양 성, '22년 대비 '23년 정부 안 20%감축
관광산업인재발굴및전문역 량강화 (4462-307)	2,763	2,763	2,625	2,625	예산 감축 (138백만원 감)
문화예술해외교류 (4362-307)	747	747	747	500	평가 결과에 따라 내역사업 기 준 33%(△247백만원) 감축
국내관광역량강화 (4264-309)	16,767	16,767	18,017	16,917	(감축) 감축대상 내역사업(근 로자 휴가지원) 2023년 정부 안 10% 감축
관광자원기반조성 (4161-311)	30,086	30,086	37,588	37,588	(지역관광자원개발)'22년7개 소→'23년4개소지원으로축소 반영. 다만, '23년착공및준공공 사비등사업의연속성등을고려 하여소액증액반영(262백만원 증)
개도국스포츠발전지원 (5461-312)	7,444	7,444	7,868	7,377	정부안 감축 미반영
공예관광산업육성 (4362-312)	5,528	5,528	5,478	4,975	23년 예산(정부안) 감축 반영
예술의전당리모델링 (1632-318)	6,676	6,676	4,748	4,748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 완료
스포츠윤리센터운영 (5261-321)	6,185	6,185	6,590	6,479	'23년 비목전환 (민간경상보조-)민간위탁사업)
일자리사업평가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이 야기할머니 인력양성및활동지원)	15,008	15,008	14,258	13,507	(감액) 일자리사업 평가등급 반영에 따른 일부 감액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관광산업융자지원	649,000	549,000	526,000	449,100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미흡)에 따라 지출구조조정 반영
영상콘텐츠산업육성	71,420	90,570	42,089	42,089	코로나19 관련 한시 지원사 업 종료에 따른 감액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46,071	57,055	122,808	122,808	사업 확대 추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 의견

(1) 재난안전 관련 내역(내내역)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변경할 필요(재난안전사업평가)

일부 세부사업이 예산 비중이 낮은 내역사업으로 인해 재난안전사업으로 분류되어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난안전 관련 내역(내내역)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sup>22)</sup>(4462-307)는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동 사업은 내역사업 ‘유원시설 안전 관리’를 포함하고 있어 재난안전사업평가를 받았으며, 평가등급 ‘미흡’을 판정 받았다. 그런데 내역사업 ‘유원시설 안전 관리’의 2023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동일하게 편성되었다.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예산		2023안 (B)	증감	
		본예산(A)	추경		(B-A)	(B-A)/A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19,950	19,981	19,981	17,443	△2,538	△12.7
유원시설 안전 관리	9,823 (859)	1,358	1,358	1,358	0	0

주: ( )는 실집행액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 ‘유원시설 안전관리’는 유원시설 안전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점검 및 시설 관리자 및 공무원 대상 안전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 동 내역사업은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와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내역사업 ‘유원시설 안전관리’ 예산안은 13.58억원이므로, 세부사업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예산안 174.43억원 대비 7.78% 수준이다.

22)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 보고서에는 세부사업명을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및 단체지원’으로 표기하고 있다.

예산 비중이 7.78% 수준인 내역사업으로 인해 세부사업이 재난안전사업으로 분류되어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내역사업 '유원시설 안전관리'는 세부사업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분리되어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평가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면서 타 내역을 과도하게 증액(보조사업 연장평가)**

2022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감축' 판정을 받은 사업 중 평가 결과를 예산안에 감액 반영하는 대신에 타 내역사업을 감액 규모 이상으로 증액하는 등 평가결과의 예산 환류를 우회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제작지원'의 경우, 정부지원의 당위성이 낮아 2024년부터 폐지하도록 권고한 "장편 극영화 촬영 공간 지원" 예산(10억원)을 1년 앞당겨 전액 감액 하였으나, 가장 비중이 큰 내역사업인 '독립영화예술 제작지원'을 약 37억원 증액 편성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의 경우, 종료 예정된 사업을 종료함으로써 해당 내역사업 축소 및 사업비를 감축하고, 기존 계속 사업 이외에 신규 사업은 제한적으로 추진하라고 권고 받은 반면, 2022년 종료된 "전통사찰 추가지원" 내역사업을 폐지하는 대신에 기존 내역사업(전통종교사찰 보존) 예산을 73억원 이상 증액 편성하였다.

[2022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감축' 대상 사업 중 과도한 증액 사업 현황]  
(단위: 억원)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예산		연장평가 결과
		2022	2023안	
문체부	영화제작지원	106	144	'장편 극영화 촬영공간 지원' 사업은 2024년부터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에 따라 기존 예산액만큼 예산액 감축 필요(일정수준 감축)
문체부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280	322	종료예정된 사업을 예정대로 종료함으로써 해당 내역사업 축소와 사업비 감축 필요(일정수준 감축)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2022)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의 경우, 집행률 저조에 따라 높은 수준

(10% 이상)의 예산 감축을 권고한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2022년 26,067백만원)에 대하여 권고 수준에서 미달하는 5.9%(1,550백만원)를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생활문화진흥'**의 경우, 내역사업 조정, 성과지표 개선, 실집행을 부진 등의 사유로 향후 3년간 높은 수준(10% 이상)의 감축을 권고 받았으나,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비용이 신규 편성(58억원)된 것을 제외하더라도 실제로는 전년 예산의 3% 수준(2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감축' 대상 사업 중 감액 규모 미흡 사업 현황]

(단위: 억원)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예산		연장평가 결과
		2022	2023안	
문체부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	1,329	1,391	'스포츠클럽' 내역사업의 경우 3년간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예산 삭감이 불가피(높은 수준의 감축)
문체부	전통생활문화진흥	61	117	실집행을 부진 등의 사유로 내역사업 '전통문화인성교육'(4.1억원), '남북한 전통문화교류'(0.3억원) 폐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7억원) 2025년 종료, '풍석학술진흥연구'(6억원), 2025년말까지 단계적 폐지, '전통놀이 문화 조성·확산'(10.8억원), '세시풍속 맥잇기'(1.7억원)은 향후 3년간 높은 수준의 감축 필요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2022)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감축 대상인 사업에 대하여 내역사업간 예산 조정을 통해 실제 세부사업 예산을 증액하거나 권고 수준에 미달하는 감액을 반영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통한 예산 감축 효과를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 11. 문화재청

###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2023년 문화재청 예산안은 1조 2,935억원이며,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안은 7,914억원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이 부적정한 총사업비 관리 대상 규모<sup>23)</sup>는 233억원이다.

재난안전, 복권기금 평가 대상사업 예산은 각각 3억원, 1,584억원이다.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요구안	정부안
총예산	12,015	11,839	13,717	12,935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	7,699	7,680	8,440	7,914
디브레인 코드상 의무지출 예산	-	-	-	-
사실상 의무지출 예산	-	-	-	-
정보화 예산	12	12	10	10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 예산	77	77	233	233
재난안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	3	3	3	3
복권기금 평가 대상사업 예산	1,407	1,407	1,584	1,584

자료: 문화재청

각 성과평가별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평가결과 '미흡'인 세부사업은 18개이다. 2023년 예산안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은 11개이며, 증가한 사업은 4개이다. 정부는 성과평가 결과 및 다양한 여건들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3) 기획재정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 2022, p.7.

\* 의무지출, 국정과제,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연부액 계획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한 사업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재정사업자율평가					
사적관리	1,198	1,188	1,412	1,167	
고도 보존 및 육성	20,028	20,028	17,355	17,355	
문화재수리기술진흥	13,558	13,558	27,522	25,881	
칠백의총시설관리운영	5,271	5,271	2,632	2,632	
현충사유적관리	4,161	4,161	5,471	5,471	
만인의총시설관리운영	7,659	5,159	4,107	4,052	집행부진에 따른 사업기간 조정 및 감액(△3,607) * 구조조정 목표액 달성 위해 계획 대비 추가 감액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운영	9,014	9,014	9,536	9,033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 건립	879	879	-	-	
매장문화재보존	2,713	2,703	9,491	9,491	
문화재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 ('22년 세부사업명 변경: 매장 문화재보호 및 관리지원)	10,110	10,110	9,410	9,214	집행부진에 따른 감액(△896) * 최저임금 연동에 따른 감액 규모 조정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2,727	2,727	2,336	2,336	
문화재긴급보수사업	4,121	4,121	3,921	3,710	
국내외 문화재 긴급 매입 및 관리지원	4,500	4,500	4,000	4,000	집행부진에 따른 감액(△500)
보조사업연장평가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7,225	7,225	7,681	6,737	(증감사유)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에 따른 감축(사업방식개선) 성과지표 개발(연말부터시행예정)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	404,000	391,500	343,400	343,400	(증감사유) 22년 대비 15% 감축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보조)	30,094	30,094	28,094	-	(증감사유)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보조) 세부사업이 문 화재보수정비 세부사업으로 이관되어 순감 (사업방식개선) 문화재보수정 비세부사업으로 통합관리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44,114	44,114	36,573	36,573	(증감사유) 세계유산보존관리 지원 사업 52.5억,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 28.4억 예산 감축 (사업방식개선) 국고보조사업 실집행률 개선방안마련중, 성 과지표추가검토중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	3,064	3,064	2,784	2,784	(증감사유) 유네스코아태무형 유산센터운영 2.8억 예산 감축 (사업방식개선) 성과가 불투명 한 사업 (도서발간) 감축 및 성과지표 추가검토중
문화재긴급보수사업	4,106	4,106	3,906	3,695	(증감사유) 예산 실집행률 제 고를 위하여 당해연도 집행가 능한 적정규모로 조정

자료: 문화재청

나. 분석 의견: 재정사업자율평가 보고서 작성 부적정(재정사업자율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은 차년도 예산삭감 계획 작성시 순감액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내 변동내역(증액, 감액)을 모두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은 증액이 불가피한 세부사업 '매장문화재보존'의 변동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감액 가능한 세부사업만 기재하여 순감액 규모를 확대하였다.

매장문화재 보존관리(2332)는 세부사업 '매장문화재보존', '매장문화재보호및관리 지원',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로 구성된다. 동 사업은 평가등급 '미흡'을 받았으나, 2023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35.3% 증액되어 편성되었다. 문화재청은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세부사업 '매장문화재보존'의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예산안 총괄]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예산		2023안 (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2332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10,232	15,550	15,540	21,041	5,491	35.3
매장문화재보존 (2332-301)	1,029	2,713	2,703	9,491	6,778	249.8
매장문화재보호 및관리 지원 (2332-302)	6,603	10,110	10,110	9,214	△896	△8.9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2332-304)	2,600	2,727	2,727	2,336	△391	△14.3

자료: 문화재청

재정사업자율평가 지침은 지출구조조정계획에 지출구조조정목표 달성을 위한 차년도 예산삭감 계획('22년 대비 '23년 계획) 작성시 순감액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내 변동내역(증액, 감액)을 모두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24)</sup> 그런데 문화재청은 증액이 불가피한 세부사업 '매장문화재보존'의 변동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감액 가능한

24) 기획재정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 2022, p.22.

세부사업만 기재하였다. 이는 재정사업자율평가 보고서 작성 부적정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

[지출구조조정 총괄]

(단위: 백만원)

분야	평가사업명	평가 결과	세부사업명	2022 예산	지출구조조정계획	
					감액	예산 변동 내역 (증액 및 감액)
일반 재정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미흡	문화재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 ('22년세부사업명변경 :매장문화재보호 및 관리지원)	10,110	1,000	집행부진에 따른 감액(△1,000)

자료: 문화재청, 「2021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022, p85..

## 12. 기상청

###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2023년 기상청 예산안은 1,825억원이며,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안은 850억원이다. R&D, 재난안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은 각각 98억원, 877억원이다.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요구안	정부안
총예산	1,823	1,819	2,099	1,825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	869	867	923	850
디브레인 코드상 의무지출 예산	-	-	-	-
사실상 의무지출 예산	-	-	-	-
정보화 예산	611	611	636	589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 예산	-	-	-	-
R&D 평가 대상사업 예산	101	101	98	98
재난안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	854	853	1078	877

자료: 기상청

각 성과평가별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평가결과 '미흡'인 세부사업은 4개이며, 2023년 예산안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은 3개이다.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재정사업자율평가					
기후과학 국제협력 역량 강화 사업	1,543	1,525	1,296	1,296	지출구조조정 반영
기후변화 감시·서비스 체 계 구축 및 운영	2,156	2,156	2,041	2,010	지출구조조정 반영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재난안전사업 평가					
수치예보시스템 개선 (정보화)	-	-	-	-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으로 통합
일자리사업평가					
기상산업활성화 (기상기업지원)	1,000	1,000	1,000	900	-

자료: 기상청

#### 나. 분석 의견: 지출구조조정 규모에서 예산의 자연감소분을 제외할 필요(재정사업자 율평가)

지출구조조정은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므로, 성과와 무관한 예산의 자연감소분은 지출구조조정 규모에 제외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1331)는 세부사업 기후변화 감시·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장기예보 선진 서비스 체계 구축, 지역 기후정보 생산 및 활용, 기후과학 국제협력 역량 강화으로 구성된다.

동 사업은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반도 기후변화감시망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통한 과학적이고 신뢰도 높은 고품질 기후변화감시 자료 생산하여 국내외(WMO세계자료센터, 기후정보포털)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은 평가등급 '미흡'을 받아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이다. 따라서 세부사업 '기후과학 국제협력 역량 강화' 예산안은 전년대비 △16.0% 감소하였고, '기후변화 감시·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은 △6.8% 감소하였다.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예산		2023안 (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1331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	6,794	8,590	8,536	8,104	△486	△5.7
기후변화 감시·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1331-301)	1,704	2,156	2,156	2,010	△146	△6.8
장기예보 선진 서비스 체계 구축 (1331-302)	1,720	1,838	1,838	1,842	4	0.2
지역 기후정보 생산 및 활용 (1331-303)	2,091	3,053	3,017	2,956	△97	△3.2
기후과학 국제협력 역량 강화 (1331-307)	1,278	1,543	1,525	1,296	△247	△16.0

자료: 기상청

‘기후과학 국제협력 역량 강화’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용역비(210-14), 국제부담금(340-02)이 각각 1.5억원, 1.0억원 감액되었다. 그런데 일반용역비(210-14) 감액분은 IPCC 보고서 국문 번역비이다. 기상청은 2023년 IPCC 보고서 국문 번역물량이 많지 않아 동 예산을 일반수용비(210-01)에 반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제부담금(340-02)은 IPCC 제6차 평가주기가 만료됨에 따라 감액되었다.

평가등급 ‘미흡’을 받은 사업은 의무적으로 지출구조조정을 해야 하며, 지출구조조정은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과와 무관한 예산의 자연감소분은 지출구조조정 규모에 제외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능비목별 예산안 내역]

사업명	2021 결산	2022 예산		2023안 (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278	1,543	1,525	1,296	△247	△16.0
· IPCC 등 기후과학 국제적 대응을 위한 국 내외 협력 강화	631	896	878	749	△147	△16.4
· 상용임금(110-03)	67	76	76	77	1	1.3
· 일반수용비(210-01)	47	49	49	53	4	8.2
· 임차료(210-07)	6	5	5	5	0	0.0
·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0	0.0
· 일반용역비(210-14)	244	455	437	305	△150	△33.0
· 국내여비(220-01)	0	1	1	1	0	0.0
· 국외업무여비(220-02)	0	39	39	36	△3	△7.7
· 사업추진비(240-01)	2	3	3	3	0	0.0
· 일반연구비(260-01)	97	100	100	100	0	0.0
· 고용부담금(320-09)	14	14	14	15	1	7.1
· 국제부담금(340-02)	153	153	153	153	0	0.0
· IPCC 의장국 역할강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여	647	647	647	547	△100	△15.5
· 국제부담금(340-02)	647	647	647	547	△100	△15.5

자료: 기상청

### 13. 고용노동부

####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34조 9,924억원이며,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안은 3,986억원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이 부적정한 의무지출, 사실상 의무지출<sup>25)</sup> 및 총사업비관리 대상 규모<sup>26)</sup>는 각각 22조 1,350억원, 3조 9,699억원, 1,224억원이다.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요구안	정부안
총예산	365,084	360,615	360,766	349,924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	8,031	8,031	4,384	3,986
디브레인 코드상 의무지출 예산	217,329	213,797	221,571	221,350
사실상 의무지출 예산	53,937	53,914	42,262	39,699
정보화 예산	1,465	1,465	1,213	1,133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 예산	603	603	1,224	1,224
재난안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	10,491	10,491	11,775	11,535
균형발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	2,320	2,320	2,509	2,509
복권기금 평가 대상사업 예산	1,619	1,619	665	655

자료: 고용노동부

각 성과평가별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평가결과 '미흡'인 세부사업은 25개이다. 2023년 예산안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은 18개이며, 증가한 사업은 7개이다. 정부는 성과평가 결과 및 다양한 여건들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5) 기획재정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 2022, p.6.

사실상 의무지출 : 법령 규정 및 국가간 계약 등에 따른 사업 등

26) 기획재정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 2022, p.7.

\* 의무지출, 국정과제,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연부액 계획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한 사업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재정사업자율평가					
산재근로자요양관리	9,644	9,664	9,181	9,181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에 따른 5% 일괄 감액
신용보증대위변제	28,343	28,343	35,520	33,550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용자사업규모 확대 및 경 제여건악화에따른연체증 가
고용장려금융자	5,455	5,455	4,860	18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따라 내역 사업인 '고령자고용환경개 선용자' 사업 종료
고용유지지원금	598,058	598,058	226,958	197,374	코로나19 위기에서 회복 전환됨에 따라 그간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축소
건설근로자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11,629	11,629	10,500	10,500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 으로 10% 감액
세대간상생고용지원	1,333	1,333	381	381	지원대상 감소
자영업자실업급여	8,869	8,869	12,813	11,222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의 무지출 사업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29,131	29,131	26,218	25,696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감축)에 따른 감액
고용동향조사분석	6,822	6,822	5,939	5,939	고용동향분석사업효율화
진폐위로금지급	88,106	88,106	87,717	86,415	5개년 평균수급자수 및 단가 반영에 의한 감액
건강진단	1,589	1,589	1,510	1,510	5개년 평균수급자수 및 단가 반영에 의한 감액
건강진단지원금	1,260	1,260	1,207	1,207	5개년 평균수급자수 및 단가 반영에 의한 감액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 급여	12,776	12,776	15,572	15,572	최근 3년간 월평균 지원 인원 감소추이를 반영하 여 적정인원 추산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보조사업연장평가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29,131	29,131	26,218	25,696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감축)에 따른 감액
중장년층취업지원	3,667	3,667	3,581	3,522	내역사업중 '고령자인재은행' 사업만 감축의견
사회적기업육성(제주)	5,133	5,133	4,937	4,937	
일자리사업평가					
건설근로자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8,229	8,229	7,100	7,100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반영하여 감액
중장년층취업지원	3,667	3,667	3,581	3,522	사업추진실적 부진 등으로 3년간 감축
취약계층취업촉진	340	-	274	274	'22년 예산액 대비 19.4% 감액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995,210	995,210	300,266	229,358	사업 신규신청 종료 ( '21.5월)에 따른 지속 지원 인원 감소
고용장려금(용자)	5,414	5,414	4,842	0	재정지원일자리 평가 등 을 반영
직장어린이집지원	73,440	-	75,461	75,461	지원대상 증감 추이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인건비 지원단가 상승 요인 등을 반영하여 편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776	-	15,572	15,572	최근 3년간 월평균 지원 인원 감소 추이를 반영하여 편성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일터혁신지원	25,720	-	28,544	28,004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일하는 방식 혁신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컨설팅 물량 확대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지원	64,402	64,402	75,039	69,259	국민의 의견(국민참여예산) 반영

자료: 고용노동부

## 나. 분석 의견

### (1) COVID19에 의한 집행률 저조(재정사업자율평가)

COVID19에 의한 집행률 저조가 필연적인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집행률로만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는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도 충분히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용동향조사분석(1040)은 세부사업 고용동향조사분석(1040-300)으로 구성되며, 고용동향조사, 장기인력수급전망, 고용동향분석, 빅데이터센터 구축, 고령자고용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신규패널 구축을 실시하였으나, 조사기간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가피하게 조사 연장을 하게 되어 용역계약 집행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평가등급 ‘미흡’을 받았다.

[기능별 예산안 내역(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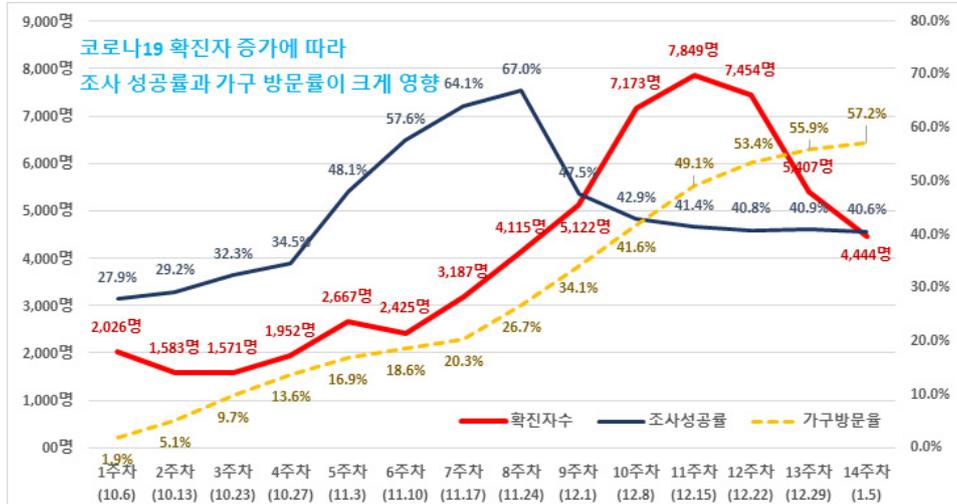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예산		2023안 (B)	증감	
		본예산(A)	추경		(B-A)	(B-A)/A
기능별 분류(합계)	6,632 [5,495]	6,822	6,822	5,939	△883	△12.9
· 고용동향조사	3,107 [2,502]	3,682	3,682	2,963	△719	△19.5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1,081 [1,080]	958	958	959	1	0.1
· 고용동향분석	405 [403]	407	407	366	△41	△10.1
· 빅데이터센터 구축	1,739 [1,210]	1,395	1,395	1,001	△394	△28.2
· 고령자 고용정책 연구	300 [300]	380	380	650	270	71.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아래 [그림]과 같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조사성공률과 가구방문률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COVID19에 의한 집행률 저조로 평가등급 ‘미흡’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른 조사성공률]



자료: 고용노동부, 「2021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022, p.156.

아래 [표]와 같이 타 부처와 달리, 고용노동부는 ‘집행률 제고 노력’ 평가기준을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로 설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집행률 제고 노력’이 아닌 집행률만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OVID19에 의한 집행률 저조가 필연적인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집행률로만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집행률 보다는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중심으로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처별 '집행률 제고 노력' 평가 기준]

구분	평가 지표 및 기준															
고용노동부 (배점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li> </ul>															
기획재정부 (배점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 조직개편, 환율변동, 사업방식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실적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li> <li>* 지자체 자본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 집행률로 평가</li> </ul> </li> <li>□ 가점 및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례적 이불용 사업인 경우 감점(△5)</li> <li>* 집행률이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3년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인 경우</li> <li>※ 이외 분기별 집행계획 준수 등 가감점 항목은 부처별 자체 수립·활용 가능</li> </ul> </li> </ul>															
국방부 (배점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 확인</li> </ul>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width: 80%;"> <thead> <tr> <th colspan="5">〈배점 방법〉</th> </tr> <tr> <th>기준</th> <th>“예”</th> <th>“상당한 정도”</th> <th>“어느 정도”</th> <th>“아니요”</th> </tr> </thead> <tbody> <tr> <td>배점</td> <td>30</td> <td>27~23</td> <td>22~18</td> <td>17~13</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예(30점)”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3년간('19, '20, '21년) 예산집행률이 100%인 경우 등</li> <li>나. “상당한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 3년 평균 집행률이 95% 이상 ~ 100% 미만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li> <li>다.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 3년간 평균 집행률이 70~95%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li> <li>라. “아니요”에 해당하는 경우 : 집행률 부진에 대한 개선 노력이 없거나, 전년 대비 집행률이 연속적으로 하락하여 '21년 집행률이 70% 미만인 경우 등</li> </ul>	〈배점 방법〉					기준	“예”	“상당한 정도”	“어느 정도”	“아니요”	배점	30	27~23	22~18	17~13
〈배점 방법〉																
기준	“예”	“상당한 정도”	“어느 정도”	“아니요”												
배점	30	27~23	22~18	17~13												
국세청 (배점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집행률 정량평가(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5%이상 (5)                      95% ~ 80% (4)                      80% 미만 (3)</li> </ul> </li> <li>4) 집행 노력도 정성평가(15)</li> <li>5) 집행률이 연속적으로 3년간 집행률 70% 미만(△5)</li> </ul>															

자료: 각 부처 「2021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2) 평가결과와 예산안 연계 미흡(일자리사업평가)

평가 결과가 2023년도 예산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나타나고 있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지원’의 경우, 사업전체의 고용유지율과 기업생존율 등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사업의 고용유지율이 매우 낮은 점이 지적되어 감액을 권고 받았으나, 전년대비 20억 2,100만원 증액편성되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경우, 연례적 집행률 저조에 따라 집행 실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실적 부진의 원인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대상 및 소요예산을 적정 추계하라고 지적하면서 예산 감액이 권고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의 2023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7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 미반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022 예산	2023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지원 (직장보육교사 등인건비 지원)	73,440	75,461	2,021	2.8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776	15,572	2,796	21.9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14. 여성가족부

###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2023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1조 5,130억원이며,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안은 4,808억원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이 부적정한 의무지출 및 총사업비관리 대상 규모<sup>27)</sup>는 각각 4,975억원, 43억원이다.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요구안	정부안
총예산	14,289	14,284	15,343	15,130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	5,039	5,037	4,952	4,808
디브레인 코드상 의무지출 예산	4,230	4,230	4,976	4,975
사실상 의무지출 예산	-	-	-	-
정보화 예산	185	185	182	137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 예산	187	187	95	43
재난안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	921	924	1,026	955
균형발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	494	494	155	155
복권기금 평가 대상사업 예산	7,333	7,333	8,225	8,208

자료: 여성가족부

각 성과평가별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평가결과 '미흡'인 세부사업은 15개이다. 2023년 예산안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은 12개이며, 증가한 사업은 3개이다. 정부는 성과평가 결과 및 다양한 여건들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7) 기획재정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 2022, p.7.

\* 의무지출, 국정과제,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연부액 계획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한 사업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b>재정사업자율평가</b>					
청소년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7,762	7,751	8,506	7,606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 감소 등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875	875	350	0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등에 따른 감액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899	899	770	362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및 사업 조정에 따른 일부 감액
성인지정책분석평가운영	4,498	4,498	4,410	4,407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른 감액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2,341	2,341	916	784	법정실태조사 완료에 따른 감액 및 지출구조조정 감액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14,846	14,846	14,449	14,233	국제행사 격년 진행에 따른 감액 등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250	250	762	524	피해예방 및 구조·지원 체계 구축, 지역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인신매매방지법시행('23.1.1.)
<b>복권기금사업 평가</b>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1,329	1,329	1,316	1,316	복권기금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감액
<b>보조사업연장평가</b>					
국제개발협력(ODA)	142	142	127	127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방식 비대면 전환 등 반영
양성평등문화확산	80	80	60	60	대외협력강화 예산 감축
여성인재양성 및 사회참여확대	450	450	450	400	여성역량 강화사업 운영 사업 종료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2,655	2,655	2,702	2,702	최저임금 인상분 및 인건비처우 개선을 반영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340	340	302	302	가족 소통 참여 사업 감액
아이돌봄 지원	50,053	50,053	46,969	46,969	아이돌보미 교육비 감소 등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	2,007	2,007	2,013	2,013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에 따른 운영비 증액

자료: 여성가족부

나. 분석 의견: 형식적 예산 감액 지양 필요(복권기금사업평가)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은 예산을 1% 감액하여 성과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예산감액이 어려운 사업일 경우 형식적인 감액보다 성과개선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22년 복권기금사업평가는 중앙부처 사업 중 (여가부)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및 (보훈처)보훈요양원건립을 평가등급 ‘미흡’으로 판정하였다. ‘미흡’,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액 조정 또는 복권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미흡 이하 사업 중 전년대비 감액이 곤란한 경우, 성과개선 계획서를 5월말까지 제출하고, 해당 연도 평가시 이행 점검한다.<sup>28)</sup>

(여가부)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2159-431)은 내역사업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가정폭력 예방홍보’로 구성된다. 동 사업의 2023년 예산안은 복권기금평가 결과에 따라 원칙적 감액 조정 대상이므로, 전년대비 1% 감액되었다.

그러나 전년대비 1% 예산삭감은 평가등급 ‘미흡’에 따른 조치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예산감액이 어려운 사업일 경우, 형식적인 감액보다 성과개선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복권기금사업평가 평가등급 ‘미흡’ 판정 사업]

(단위: 백만원, %)

기관명	세부사업	예산			
		2022(A)	2023안(B)	증감	
				B-A	(B-A)/A
국가보훈처	보훈요양원건립	495	6,839	6,344	1,281.6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1,329	1,316	△13	△1.0

자료: 각 부처

28)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단, 「2021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 2022.4., p.37.

## 15. 국방부

###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2023년 국방부 예산안은 40조 1,090억원이며,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안은 17조 1,072억원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이 부적정한 의무지출, 사실상 의무지출<sup>29)</sup> 및 총사업비관리 대상 규모<sup>30)</sup>는 각각 1조 6,313억원, 8조 9,441억원, 5,062억원이다.

재난안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은 346억원이다.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요구안	정부안
총예산	379,195	369,677	413,999	401,090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	160,927	153,804	178,008	171,072
디브레인 코드상 의무지출 예산	17,576	15,608	16,475	16,313
사실상 의무지출 예산	84,087	81,225	92,287	89,441
정보화 예산	7,329	7,329	8,540	7,348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 예산	4,841	3,860	5,630	5,062
재난안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	338	338	340	346

자료: 국방부

각 성과평가별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평가결과 '미흡'인 세부사업은 28개이며, 2023년 예산안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은 12개이며, 증가한 사업은 16개이다. 정부는 성과평가 결과 및 다양한 여건들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9) 기획재정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 2022, p.6.

사실상 의무지출 : 법령 규정 및 국가간 계약 등에 따른 사업 등

30) 기획재정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 2022, p.7.

\* 의무지출, 국정과제,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연부액 계획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이 불가능한 사업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재정사업자율평가					
수송활동	134,674	117,174	121,207	121,207	집행부진에 따른 감액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	52,900	52,900	73,612	47,610	집행률 고려하여 감액
주거지원보증금반환금	126,323	126,323	123,200	120,000	집행률 고려하여 감액
학자금대부	26,466	26,466	22,498	21,984	집행률 고려하여 감액
병양성교육	4,331	4,331	4,049	4,046	집행률 고려 감액
간부양성교육	41,898	41,898	41,618	41,076	집행률 고려 감액
급식지원	12,401	1,158	15,134	14,704	급식비 단가인상(11,000→ 13,000원)
전투장구지원	26,257	26,257	23,038	51,170	전투장구류 부족분 확보 및 노후량 교체
동원훈련	39,668	17,808	70,633	49,873	보상비 단가인상(62,000→ 82,000원)
일반훈련	52,010	18,870	56,845	56,828	중식비 단가인상 (7,000→8,000원)
예비전력운영지원	73,283	71,938	61,973	61,041	과학화예비군훈련장 장비 도 입 시기 조정
광주기지영외탄약고	22,373	22,373	1,166	773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 정해 진 사업으로 연차별 필수소요 반영 필요
행정지원기타	91,167	91,167	93,284	72,484	부대이전 완료 후 세입대상부 지에 대한 토양오염정화 및 시설물철거 등 필수 소요
부대개편 5차	271,302	271,302	118,604	98,059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 정해 진 사업으로 연차별 필수소요 반영 필요
1군지사이전	78,368	78,368	92,680	92,680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으로 연차별 필수소요 반 영 필요
부대개편 3차 사업	2,075	2,075	-	-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으로 연차별 필수소요 반 영 필요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부서관학교훈련장 이전	-	-	2,417	28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으로 연차별 필수소요 반영 필요
1급양대 이전	5,526	5,526	8,374	8,374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으로 연차별 필수소요 반영 필요
부대개편 4차 사업	32,364	32,364	57,705	48,463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으로 연차별 필수소요 반영 필요
101정보통신단 이전	525	525	18,219	18,219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으로 연차별 필수소요 반영 필요
60사단 160/162연대	1,229	1,229	3,735	387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으로 연차별 필수소요 반영 필요
해병1사단1전차대대	-	-	1,466	1,466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으로 연차별 필수소요 반영 필요
부대개편 6차사업	31,057	31,057	218,779	136,214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으로 연차별 필수소요 반영 필요
부대개편 7차사업	11,819	11,819	50,513	42,108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으로 연차별 필수소요 반영 필요
군사안보지원학교	518	518	1,273	1,273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으로 연차별 필수소요 반영 필요
350군사안보지원부대	102	102	518	454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으로 연차별 필수소요 반영 필요
해병대제1군수대대	380	380	931	931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으로 연차별 필수소요 반영 필요
부대개편 8차사업	-	-	9,504	9,208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으로 연차별 필수소요 반영 필요

자료: 국방부

나. 분석 의견: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 지출구조조정(재정사업자율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은 총사업비 대상 사업을 지출구조조정 부적정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예산을 포함한 지출구조조정은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군시설이전사업(4131)은 세부사업 광주기지영외탄약고, 행정지원기타, 부대개편 5차 등 1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동 사업은 집행률이 낮아 평가등급 ‘미흡’을 받았다.

[지출구조조정 계획 현황(군시설이전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 현액(A)	결산 (B)	집행률 (B/A)
2019	331,603	129,686	0	461,289	382,255	82.9
2020	298,195	64,396	△442	362,150	295,428	81.6
2021	526,631	45,558	△3,889	568,301	370,614	65.2

자료: 국방부, 「2021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022, p.85.

국방부는 재정사업자율평가에 따라 광주기지영외탄약고, 행정지원기타, 부대개편 5차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였다.

[지출구조조정 계획 현황(군시설이전사업)]

(단위: 백만원, %)

분야	평가사업명 (단위사업)	세부사업명	2022 예산(A)	구조조정 <sup>1)</sup> 금액(B)	감액 비율 (B/A)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군시설 이전사업	광주기지영외탄약고	22,373	△15,603	△69.7
		행정지원기타	91,167	△4,600	△5.05
		부대개편 5차	271,302	△90,961	△33.5
		합계	384,842	△95,561	△24.8

자료: 국방부, 「2021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022, p.91.

그런데 광주기지영외탄약고 및 부대개편 5차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지출구조정의 필요성이 미흡한 사업이다.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은 총사업비 대상 사업을 지출구조조정 부적정 의심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sup>31)</sup> 따라서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예산을 포함한 지출구조조정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1) 기획재정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 2022, p.7.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예산		2023안 (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4131 군시설 이전사업	370,614	548,805	548,805	531,121	△17,684	△3.2
1군지사이전 (4131-307)	38,797	78,368	78,368	92,680	14,312	18.3
광주기지영외 탄약고이전 (4131-341)	11,848	22,373	22,373	773	△21,600	△96.5
행정지원 및 기타 (4131-390)	51,950	91,167	91,167	72,484	△18,683	△20.5
부대개편 3차 사업 (4131-472)	85,438	2,075	2,075	-	△2,075	△100
부사관학교훈련장 이전 (4131-473)	34	-	-	28	28	순증
1급양대 이전 (4131-475)	5,196	5,526	5,526	8,374	2,848	51.5
부대개편 4차 사업 (4131-476)	113,332	32,364	32,364	48,463	16,099	49.7
부대개편 5차사업 (131-477)	40,845	271,302	271,302	98,059	△173,243	△63.9
101정보통신단 이전 (4131-478)	1,434	525	525	18,219	17,694	3,370.3
60사단160/ 162연대(4131-479)	646	1,229	1,229	387	△842	△68.5
해병1사단1전차대대 (4131-480)	-	-	-	1,466	1,466	순증
부대개편 6차사업 (4131-481)	8,436	31,057	31,057	136,214	105,157	338.6
부대개편 7차사업 (4131-482)	-	11,819	11,819	42,108	30,289	256.3
군사안보지원학교 (4131-485)	-	518	518	1,273	755	145.8
350군사안보 지원부대(4131-486)	-	102	102	454	352	345.1
해병대제1군수대대 (4131-488)	-	380	380	931	551	145
부대개편 8차사업 (4131-489)	-	-	-	9,208	9,208	순증

자료: 국방부

## 16. 행정안전부

###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2023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80조 724억원이며,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안은 7,622억원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이 부적정한 의무지출 및 총사업비관리 대상 규모<sup>32)</sup>는 각각 24억원, 778억원이다.

R&D, 재난안전, 균형발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은 각각 86억원, 9,998억원, 499억원이다.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요구안	정부안
총예산	706,649	826,685	831,199	800,724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	11,974	11,973	9,202	7,622
디브레인 코드상 의무지출 예산	28	28	24	24
사실상 의무지출 예산	-	-	-	-
정보화 예산	3,666	3,664	3,634	2,671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 예산	973	973	797	778
R&D 평가 대상사업 예산	109	109	86	86
재난안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	9,366	9,356	10,341	9,998
균형발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	2,346	2,346	499	499

자료: 행정안전부

각 성과평가별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평가결과 '미흡'인 세부사업은 27개이다. 2023년 예산안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은 21개이며, 증가한 사업은 5개이다 정부는 성과평가 결과 및 다양한 여건들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32) 기획재정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1회계연도 평가)」, 2022, p.7.

\* 의무지출, 국정과제,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연부액 계획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이 불가능한 사업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재정사업자율평가					
공무원퇴근버스운행	5,768	5,768	4,907	4,907	세종청사 퇴근버스 및 전세객차(KTX) 운행 중단에 따른 감액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1,145	1,128	1,145	1,097	재정사업자율평가"미흡" 결과에 따라 감액
과거사관련사업지원	9,159	9,159	13,683	13,683	4.3사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제주4·3위원회 확대 운영 및 민주화기념공원 민간위탁 전환으로 인건비 증액
제주4.3평화재단지원	7,620	7,620	9,790	9,790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총사업비 대상사업) 2차년도 추진 및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2차년도 추진에 따른 증액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단위위령시설조성	14,408	14,408	6,140	6,140	22년도 토지보상금 집행으로 23년도 공사비, 감리비만 요구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2,594	12,594	12,511	12,511	'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상승('22년 7,915백만원 → '23년 8,293백만원)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530	503	478	478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축소와 취소에 따라 집행률 미진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으로 감액
이북5도청사시설개보수	647	647	581	581	
이북도민관련단체 및 행사지원	1,062	1,049	1,009	1,009	
자치분권위원회 운영	3,233	3,149	2,910	2,585	위원회 예산 감액 등
주민등록변경 위원회 운영	467	450	537	537	온라인 신청서비스 도입을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에 따른 증액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지원	3,457	3,428	1,302	0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22.8.31.)에 따라 세부사업 폐지되어, 계속사업 및 관련 예산 이관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 체경비	7,238	6,930	7,238	7,238	수입대체경비는 기재부검토의 견에 따라 지출구조조정 예외가 됨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구축	3,020	3,020	3,080	0	외국인 관련 주요 부처 및 타 부서 사업과 정책 연계 필요성 으로 인한 감액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4,186	4,186	4,186	4,075	평가결과에 따라 2.7% 감액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 원및운영	6,592	6,592	6,930	6,930	코로나상황 완화로 유해봉환 사 업 정상화 및 국고보조사업연장 평가 결과에 따라 재단, 역사관 사업비 증액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 원 및 운영(보상금)	2,817	2,817	2,394	2,394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
재난안전사업 평가					
중앙안전상황실운영	2,245	2,245	2,108	2,108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2,426	2,370	2,183	2,183	재난안전사업평가 미흡
균형발전사업 평가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세종)(제주)(지원)	178,864	178,864	0	0	지방 이양
보조사업연장평가					
기록관리정책및교육	2,352	2,246	3,002	3,002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및 운영 지원은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22 년: 140백 → 23년: 126백)
생활공감정책추진	154	154	139	139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8,438	8,438	6,202	6,202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
접경권발전지원	55,380	55,380	49,796	49,796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
일자리사업평가					
지역방역일자리사업	17,301	17,301	0	0	
공공빅데이터청년인턴십	7,222	7,222	3,091	0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평가의 견(감액) 반영
기록물정리사업	3,500	3,500	3,500	3,325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평가의 견(감액) 반영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 의견: 인건비·운영비성 경비예산 사업은 지출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 필요  
(재난안전사업평가)**

**균형발전사업평가제도에서는 인건비·운영비성 경비예산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균형발전사업평가는 법정경비, 인건비·운영비성 경비, 20억원 미만의 소액사업 등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재난안전사업평가는 일부 인건비·운영비성 경비 예산 사업도 재난안전사업 평가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sup>33)</sup>

**중앙안전상황실운영(7037-300)**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 수행하는 사업이다.

2023년 중앙안전상황실운영 예산안은 재난안전평가에서 평가등급 ‘미흡’을 받아 전년대비 △6.1% 감액되었다. 예산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년 대비 △13.3%(0.79억원),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14.3%(0.01억원) 감액되었다. 반면, 일반수용비는 전년대비 0.13억원(27.7%) 증액되었다.

---

33) 행정안전부는 예산과목 구성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격과 성과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안전상황실운영’은 재난정보 수집·전파, 재난상황 관리 및 지휘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이므로 사업 목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보았으며,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은 대규모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간 통합연계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므로 사업 계획이 적절한지, 사업 관리는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목별 예산안 내역(중앙안전상황실운영)]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예산액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수정		B-A	B-A/A
비목별 분류(합계)	2,245	2,245	2,108	△137	△6.1
· 일반수용비(210-01)	47	47	60	13	27.7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448	1,448	1,388	△60	△4.1
· 특근매식비(210-05)	30	30	24	△6	△20.0
· 임차료(210-07)	0	0	6	6	순증
· 시설장비유지비(210-09)	593	593	514	△79	△13.3
· 관리용역비(210-15)	0	0	0	0	0.0
· 국내여비(220-01)	7	7	6	△1	△14.3
· 사업추진비(240-01)	11	11	10	△1	△9.1
· 공사비(420-03)	0	17	0	0	0.0
· 자산취득비(430-01)	92	92	100	8	8.7

자료: 행정안전부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2733-303)**은 내역사업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및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보조)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은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훈련인 안전한국훈련, 수시훈련 및 정책사업인 어린이재난안전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보조)는 안전한국훈련 준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상보조금은 재난훈련과 관련된 자문비 등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비성 경비이다.

2023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예산안은 재난안전평가에서 평가등급 '미흡'을 받아 전년대비 △10% 감액되었다. 예산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전년대비 △18.6%(2.43억원), 일반수용비는 전년대비 △8.1%(6.9억원) 감액되었다. 반면, 포상금은 전년대비 0.7억원(85.4%) 증액되었다.

[비목별 예산안 내역(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예산액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수정		B-A	B-A/A
비목별 분류(합계)	2,426	2,370	2,183	△243	△10.0
· 일반수용비(210-01)	856	806	787	△69	△8.1
· 공공요금 및 제세(220-01)	1	1	1	0	0.0
· 특근매식비(210-05)	8	8	7	△1	△12.5
· 임차료(210-07)	19	19	19	0	0.0
· 국내여비(220-01)	100	95	99	△1	△1.0
· 사업추진비(240-01)	17	16	17	0	0.0
· 일반연구비(260-01)	40	40	40	0	0.0
· 포상금(310-03)	82	82	152	70	85.4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303	1,303	1,061	△242	△18.6

자료: 행정안전부

위 사업들이 평가등급 ‘미흡’은 받은 사유는 ‘사회적 혁신’ 및 ‘재해저감 효과’가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중앙안전상황실운영 및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등에서 ‘사회적 혁신’ 및 ‘재해저감 효과’ 성과를 높일 수도 있겠지만, 평가실효성 측면에서 인건비·운영비성 경비예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보다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성과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개선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7. 경찰청

###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2023년 경찰청 예산안은 12조 4,383억원이며,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안은 1조 593억원이다. 재난안전평가 대상사업 예산안은 1,835억원이다.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요구안	정부안
총예산	122,852	122,566	128,733	124,383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예산	11,122	10,392	10,760	10,593
디브레인 코드상 의무지출 예산	0	0	0	0
사실상 의무지출 예산	0	0	0	0
정보화 예산	675	675	629	626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 예산	59	0	0	0
재난안전 평가 대상사업 예산	1,775	1,766	1,846	1,835

자료: 경찰청

각 성과평가별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평가결과 '미흡'인 세부사업은 4개이며, 4개 사업의 2023년 예산안은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정부는 성과평가 결과 및 다양한 여건들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평가등급 '미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평가 결과가 '미흡'인 세부사업	예산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전년대비증감사유
	2022		2023안		
	본예산	추경	부처 요구안	정부안	
재정사업자율평가					
교통행정전산화(정보화)	1,564	1,564	1,407	1,258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으로 감액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 (정보화)	65,932	65,912	61,421	61,283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으로 감액
경찰대학운영	19,446	19,254	11,300	11,300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으로 감액
재난안전사업 평가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6,624	6,511	6,750	6,137	

자료: 경찰청

나. 분석 의견: 평가등급 판정과 무관한 내역사업 예산 지출구조조정(재정사업자율평가)

교통행정전산화는 전산장애로 평가등급 '미흡'을 받았으나, 시스템 장애 관련 내역 사업에 대한 예산은 증가하고 시스템 장애와 무관한 '교통전산시스템 고도화' 및 '상용 SW 도입'에 대한 예산이 구조조정되었으므로, 평가등급이 낮은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교통행정전산화(1332)는 세부사업 '교통행정전산화(1332-511)'로 구성된다. 동 사업은 교통경찰 전산시스템을 개발 및 유지하는 사업이며,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성능관리 미흡에 따라 장애 발생시간 지연으로 성과목표치 69분을 초과한 95분의 장애 발생 등에 따라 평가등급 '미흡'을 받았다.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교통행정전산화)]

(단위: %)

성과지표	구분	2019	2020	2021	2022
교통전산시스템 운영 안정도(분) (정보화) (하향지표)	목표	91	73	69	63
	실적	40	65	95	-
	달성도	156	111	62.3	-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반영률 (%)(정보화)	목표	70	70	70	71
	실적	64.7	78.7	71.2	-
	달성도	92.4	112.41	101.7	-

자료: 경찰청,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2022.3, p.271.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교통전산시스템 고도화’ 및 ‘상용 SW 도입’ 예산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지출구조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시스템 장애 관련 내역사업에 대한 예산은 증가하고, 시스템 장애와 무관한 ‘교통전산시스템 고도화’ 및 ‘상용SW 도입’에 대한 예산이 구조조정되었다.

시스템 장애발생에 의해 평가등급이 낮아졌으나,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위해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을 감액한다면 시스템 장애발생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성과등급이 낮은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능별 예산안 내역(교통행정전산화)]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예산		2023안 (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743	1,564	1,564	1,258	△306	△19.6
· 전산시스템 고도화		352	352	96	△256	△72.7
· 전산시스템 보강	123	440	440	568	128	29.1
· 상용SW 도입	225	216	216	30	△186	△86.1
·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330	494	494	501	7	1.4
· 공공요금	26	27	27	27	0	0.0
· 기타운영비	40	35	35	36	1	2.9

자료: 경찰청



###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I

---

발간일 2022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http://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ISBN 979-11-6799-107-2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http://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60-001420-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